

별책부록 (1-2)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연구자 : 강문수(부연구위원)

Kang, Mun-Soo

2008. 10. 31.

## 일 러 두 기

본 부록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II)」의 별책으로 구성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서”편의 부록이다. 이 부록에는 현행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13개 시행령·시행규칙상 개별기준을 변경신고의무위반 등 15개 유사 의무위반행위 (변경신고, 준수사항위반, 지정·허가·등록기준 위반, 등록후 영영미개시 또는 영영실적이 없는 경우, 명의대여, 일괄하도급,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지정·허가·등록 결격사유, 금지행위위반, 기록보존의무 위반, 포괄금지조항, 관리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로 분류하여 종합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될 행정처분기준 정비에 대한 중요한 입법적 자료로서, 그리고 실무상 집행공무원의 재량행사에 있어 지침서로서 활용되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유사 의무위반행위별 분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기준의 상이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 유사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자 간의 형평성의 유지 및 관련 법령간 체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유사 의무위반행위별 공통의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의 특수성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에서는 15개 유사 의무위반사유별로 현행 법령상 행정제재처분기준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 목 차

일 러 두 기 .....	3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	7
1. 변경신고 .....	7
2. 준수사항 위반 .....	83
3. 개선명령 .....	528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경우 .....	658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	797
(법 률) .....	888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	971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	1014
8. 명의대여 .....	1070
9. 일괄 하도급 .....	1096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	1103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	1136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	1187
13. 허가·지정·등록 결격사유 .....	1281
14. 금지행위 위반 .....	1326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	1408
16. 포괄 금지 조항 .....	1431
17. 관리기준 위반 .....	1432
18. 표시기준 위반 .....	1572

19. 위반행위 반복시 .....	1610
20.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	1650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1708

##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8.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③비파괴검사를 실시	법 제17조 제1항제8호	업무 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는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4.15>)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83조제2호	영업정지 6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4개월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2.법 제4조제3항에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제 4 조 (도선사면허) ③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면허취소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3.법 제5조제4호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한 때 제 5 조 (면허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도선사면허를 한다. 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법 제9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p>5.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한 때</p> <p>제 4 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등) ①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법 제19조제1항제5호	사업 정지 60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p>2. 법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7 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1. 복합물류터미널이 해당 지역 운송망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p> <p>2. 부지 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p>	법 제17조제1항제3호	1차: 사 업정지 60일 2차: 등 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것</p> <p>가. 주차장</p> <p>나. 화물취급장</p> <p>다. 창고 또는 배송센터</p> <p>4.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p>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p> <p>제 9 조 (공사시행의 인가)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p>	법 제17조제1항제5호	사업 정지 40일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우에는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1. 허가	나.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2 호	사업 정지 30일	사업 정지 90일	허가 취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6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때(업무 대행의 지정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 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4	다.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미달 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요 건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제22조 (수로도서지의 판매 및 대행업자의 지정 등) ③대행업 자는 판매망·기술인력·설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22조의3제1항 제3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지정 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4	라. 대행업자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 한 때를 제외한다.  제22조의2 (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법인의 경		법 제22조의3제1항 제4호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우 그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5.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ol> <p>제22조의3 (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은 때</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li> <li>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li> <li>4. 대행업자가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다.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게 된 때를 제외한다.	법 제30조제1항 제5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 별표4	나.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14조 제2항제2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규칙 별표9	다. 『수상레저안전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38조 제2항제3호	경고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 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등록위반	법 제36조 제1항	(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때	사업정 지3월	유료:등 록취소 무료:사 업정지6 월	
			(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소개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때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1월	유료:등 록취소 무료:사 업정지 6월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때	경 고	사업정 지1월	사업정 지2월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겸업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 정지 1월	등록 취소	
		(마)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 정지 1월	등록 취소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때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등록 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0)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8)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신고(등록)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9.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경 고	사업 정지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1.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3을 위반한 때	○실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를 국외공급연예인으로 선발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 취소	
		○실연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 취소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국외공급대상연예인으로 선발한 때		사업정지 3월	허가 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 취소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허가 취소			
		(나)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경 고	허가 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허가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다.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행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0. 안전·보건진단기관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행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1. 산업안전·위생지도사	가. 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등록취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승인)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가 폐업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22조·제40조, 『의료기기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규칙 제26조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5.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소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작업소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는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분리 또는 구획대상제제 또는 제형별 작업소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때		당해 제제 또는 제형	당해 제제 또는 제형	당해 제제 또는 제형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제조품 목 허 가취소		
			해당품 목 업 무정지 1개월	해당품 목 업 무정지 3개월	해당품 목 허 가취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자의 시설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영업소, 창고 또는 시험실이 없는 때  나. 창고에 당해 의약품등의 취급에 필	법 제42조제3항, 시설기준령 제15조	전품목 수입금 지 3개월	전품목 수입금 지 2년		
				전품목	전품목	전품목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요한 보관시설이 없는 때		수입 금지 1개월	수입 금지 3개월	수입 금지 6개월	
		다. 해당품목의 시험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품목 수입 금지 1개월	전품목 수입 금지 3개월	전품목 수입 금지 6개월	
		라.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15조에 위반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7. 유독가스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없을 때(제조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제제의 제조시설에만 해당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정 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8.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이 없을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9. 원료, 제품 및 자재 보관소가 위생적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10조 및	경 고	제조 정지 15일	제조 정지 1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2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0. 시험시설 및 기구가 없어 품질검사가 곤란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11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1. 작업실에 작업대를 두지 아니한 때. 다만, 자동시설인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2. 작업소의 출입구 및 창이 밀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 니하거나, 원료의 청량, 동물용의약품의 조제·충전 및 마개를 막거나 밀봉하는 작업실(무균제제 및 생물학적제제는 제외한다) 이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6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3. 건조설비의 가열장치가 자동온도조절이 기능이 없거나 가 동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4. 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가루가 날리는 제제 를 취급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5. 무균제제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7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6.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8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7. 각 제제 또는 제형별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8.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45조, 시설기준령 제3조 및 제16조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9. 제조일지 및 시험대장이 없거나 비치기간 동안 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 규칙 제13조	경 고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1. 주사제용 유리용기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해당품 목 제	해당 품목	해당 품목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조정지 15일	제조 정지 1개월	제조 정지 6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2. 이물시험, 진공도시험, 멸균도시험, 피로젠시험, 확인시험 또는 순도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3. 허가성분 외의 성분이 검출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4.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법 제62조	경 고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5.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30 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해당 품목 제조	해 당품목 제조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지 15일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6.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7. 동물용 의약품등의 유효성분합 량이 다음 각 목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다음의 어는 하나 에 해당하 는 때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CFU/kg(ℓ) 초과 10 <sup>2</sup> CFU/kg(ℓ) 이하 부족한 때	해당 품목 제조 정지 7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 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부족한 때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④ 그-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 밖에 동 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물 용 의 국가검정기준을 따른다)에 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p> <p>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유효성분(원물질에서 변형된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된 것에 한함)의 함량기준이 일정 범위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이하 과량인 경우</p>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p>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sup>2</sup>CFU/kg(ℓ) 초과 10<sup>3</sup>CFU/kg(ℓ) 이하 부족한 때</p> <p>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부족한 때</p> <p>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35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p>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가검정기준에 따른다)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3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p> <p>유효성분(원물질에서 변형된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된 것에 한함)의 함량이 일정 범위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과량인 경우</p>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p>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math>10^3</math>CFU/kg(<math>\ell</math>)초과 부족인 때</p> <p>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40퍼센트 초과 부족인 때</p> <p>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부족하거나 50퍼센트 초과 과량인 때</p>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④ 그 밖에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품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가검정기준을 따른다)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부족하거나 50퍼센트 초과 과량인 때 유효성분(원물질에서 변형된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된 것에 한함)의 함량이 일정 범위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부족하거나 40퍼센트 초과 과량인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8. 확인시험에 유효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독성분이 검출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9. 납·비소 등 중금속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해당 품목 제조 정지	해당 품목 허가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개월	6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40. 병원성미생물(대장균·녹농균·병원성 포도상구균·사상균·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41. 용점, 비중, 산도 또는 알코올수 등이 기준치에 부적합하거나 함습도 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42. 그 밖에 품목허가 내용 중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의료기기법』 제24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43.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자 및 수리업자가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의료기기법』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까지, 규칙	당해품 목업무 정지 1 개월	당해 업무 정지 3개월	당해 업무 정지 6개월	
		제13조의2제2항	당해	당해	당해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없는 때	및 제22조	품목 업무 정지 15일	품목 업무 정지 1개월	품목 업무 정지 3개월	
		다. 수입업체의 영업소 또는 보관소가 없는 때		전품목 수입 금지 3개월	허가 취소		
		라. 수입업체의 보관소에 당해 의료기기의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		해당품 목 수 입금지 3개월	해당품 목 수 입금지 6개월		
		마. 수리업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기준을 위반한 때		전수리 업무 정지 2개월	전수리 업무 정지 5개월		
		바. 그 밖의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당해 품목 업무 정지	당해 품목 업무 정지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5일	1개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5.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닻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한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비치한 때	법 제1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6.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역·출역 또는 어업활동중임을 표시하는 표시기를 게양하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게양한 때  第8條 (시험·연구등을 위한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등의 승인) ①外國人은 排他的經濟水域에서 試驗·研究 또는 教育實習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目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마다 農林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1.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 2. 漁業에 관련된 探索·集魚 3. 漁獲物의  보관·貯藏·加工 4. 獲物 또는 그 製品의 運搬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承認證의 교부 및 비치, 승인사항의 標識에 관하여는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는 “승인”으로, “許可證”은 “承認證”으로, “許可事項”은 “승인사항”으로 본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承認證交付·승인사항 및 標識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p>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第11條 (肥料生産業의 登錄&lt;개정 1999. 3.31&gt;)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p>	(1) 생산시설 미달	<p>법 제20조제1항제6호</p>	등록 취소		
		(2) 공동시설 미달	<p>법 제20조제1항제6호</p>	경고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3.3.19, 2007.8.3&gt;</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錄에 필요한 施設 기타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규모이하의 副産物肥料의 生産業의  경우를  제외한다.</p>					
<p>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p>	<p>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법 제23조제2호 및 제5호</p>	<p>영업의 전부정지 1월</p>	<p>등록 취소</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p>	<p>라. 종·묘생산업자가 종·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법 제16조 제1항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접순(?筍)·껌꽃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p>	<p>법 제16조제3항제4 호</p>	<p>영업 정지 1년</p>	<p>등록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다. 등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30일	등록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13. 동물병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3조제4호	경고	시설보완시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12월	제3차 처분은 시설보완보고일로부터 적용한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가.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법 제9조의2	6개월	1년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第12條 (人蔘類製造業 및 人蔘留製品類製造의 신고 등<개정 2001.1.26>) ①人蔘類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管轄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	법 제16조 제1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또는 영업폐쇄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만, 人蔘耕作자가 자기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한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2008.2.29&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紅蔘 또는 太極蔘의 製造業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施設基準을 갖추어야 한다.</p>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다. 자본금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	경고	영업	영업	영업	영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개정 2007.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3호		정지 10일	정지 20일	정지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5조제2항제3 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자. 법 제2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②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법 제35조제2항제3 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7.1.19, 2008.2.29&gt;</p> <p>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p>	<p>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lt;개정 2007.1.19&gt;)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07.1.19&gt;</p>	<p>법 제35조제2항제4호</p>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7.1.19, 2008.2.29&gt;</p> <p>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9, 2008.2.29&gt;</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19, 2008.2.29&gt;</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p>아.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p> <p>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p> <p>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법 제67조제2항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폐쇄 등록 취소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2)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2.29&gt;</p> <p>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 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2.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 5 조 (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법 제35조	폐쇄 조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3.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 5 조 (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법 제32조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10.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자격 정지	면허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개월	3개월	6개월	
	11.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3개월
	1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제2항	자격 정지 1개월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3	1. 법 제8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관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승인)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2.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가 폐업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22조·제40조, 『의료기기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 규칙 제26조	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5.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소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작업소 또는 시험실이 없거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는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업무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분리 또는 구획대상제체 또는 제형별 작업소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당해 제체	당해 제체	당해 제체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있지 아니한 때		또는 제형 업무 정지 1개월	또는 제형 업무 정지 3개월	또는 제형 제조품 목 허 가취소	
		다.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 한 시설 및 기구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때		해당품 목 업 무정지 1개월	해당품 목 업 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라. 작업소의 환경관리를 위한 공기조 화장치가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마. 동물용의약품등의 종류,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없는 때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바.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 12조에 위반한 때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자 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영업소, 창고 또는 시험실이 없는 때	법 제42조제3항, 시설기준령 제15조	전품목 수입 금지	전품목 수입 금지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개월	2년		
	나. 창고에 당해 의약품등의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이 없는 때		전품목 수입 금지	전품목 수입 금지	전품목 수입 금지	
	다. 해당품목의 시험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때		1개월	3개월	6개월	
			전품목 수입 금지	전품목 수입 금지	전품목 수입 금지	
	라.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15조에 위반한 때		1개월	3개월	6개월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7. 유독가스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없을 때(제조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제제의 제조시설에만 해당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18.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등에 필요한 용수시설이 없을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19. 원료, 제품 및 자재 보관소가 위생적이고 품질에 영향을 미	법 제31조,	경 고	제조	제조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규칙 별표3	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	시설기준령 제10조 및 제12조		정지 15일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0. 시험시설 및 기구가 없어 품질검사가 곤란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11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1. 작업실에 작업대를 두지 아니한 때. 다만, 자동시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2. 작업소의 출입구 및 창이 밀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원료의 청량, 동물용의약품의 조제·충전 및 마개를 막거나 밀봉하는 작업실(무균제제 및 생물학적제제는 제외한다)이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6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3. 건조설비의 가열장치가 자동온도조절이 기능이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5조 및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4. 가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때(가루가 날리는 제제를 취급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경 고	제조 정지	제조 정지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5조 및 제12조		7일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5. 무균제제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7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6.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8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7. 각 제제 또는 제형별 제조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 시설기준령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8.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45조, 시설기준령 제3조 및 제16조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29. 제조일지 및 시험대장이 없거나 비치기간 동안 비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 규칙 제13조	경 고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31. 주사제용 유리용기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해당	해당	해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규칙 별표3			품목 제조 정지 15일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2. 이물시험, 진공도시험, 멸균도시험, 파이로젠시험, 확인시험 또는 순도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3. 허가성분 외의 성분이 검출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4.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법 제62조	경 고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5.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30 퍼센트 미만 부족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조 정지 15일	제조 정지 1개월	제조 정지 3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6. 실용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7. 동물용 의약품등의 유효성분함 량이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 는 때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CFU/kg(ℓ) 초과 10 <sup>2</sup> CFU/kg(ℓ) 이하 부족한 때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 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부족한 때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④ 그-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 밖에 동 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7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국가검정기준을 따른다)에 비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					
		물 용 의약품 또는 동물 용 의 약외품	유효성분(원물질에서 변형된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된 것에 한함)의 함량기준이 일정 범위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이하 과량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 <sup>2</sup> CFU/kg(ℓ) 초과 10 <sup>3</sup> CFU/kg(ℓ) 이하 부족인 때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부족인 때					
			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35퍼센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p> <p>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가검정기준에 따른다)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3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과량인 때</p> <p>유효성분(원물질에서 변형된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된 것에 한함)의 함량이 일정 범위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하여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 부족하거나 2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과량인 경우</p>					
		<p>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p> <p>① 생균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10<sup>3</sup>CFU/kg(ℓ)초과 부족한 때</p> <p>② 사료첨가제중 비타민제 또는 미량광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40퍼센트 초과 부족한 때</p> <p>③ 항생물질제제에 있어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p>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부족하거나 50퍼센트 초과 과량인 때 ④ 그 유효성분의 함량이 표시량(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가검정기준을 따른다)에 비하여 30퍼센트 초과 부족하거나 50퍼센트 초과 과량인 때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유효성분(원물질에서 변형된 물질이 유효성분으로 설정된 것에 한함)의 함량이 일정 범위로 표시된 경우 허용범위에 비하여 20퍼센트 초과 부족하거나 40퍼센트 초과 과량인 경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8. 확인시험에 유효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거나 유독성분이 검출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39. 납·비소 등 중금속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해당 품목 제조	해당 품목 허가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40. 병원성미생물(대장균·녹농균·병원성 포도상구균·사상균·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41. 용점, 비중, 산도 또는 알코올수 등이 기준치에 부적합하거나 함습도 시험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42. 그 밖에 품목허가 내용 중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부적합한 때	법 제62조, 「의료기기법」 제24조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 별표3	43.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자 및 수리업자가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가. 해당품목의 제조, 수입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중 전부 또는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의료기기법」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까지, 규칙	당해품 목업무 정지 1 개월	당해 업무 정지 3개월	당해 업무 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없는 때	제13조의2제2항 및 제22조	당해 품목 업무 정지 15일	당해 품목 업무 정지 1개월	당해 품목 업무 정지 3개월	
	다. 수입업체의 영업소 또는 보관소가 없는 때		전품목 수입 금지 3개월	허가 취소		
	라. 수입업체의 보관소에 당해 의료기기의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		해당품 목 수 입금지 3개월	해당품 목 수 입금지 6개월		
	마. 수리업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기준을 위반한 때		전수리 업무 정지 2개월	전수리 업무 정지 5개월		
	바. 그 밖의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당해 품목 업무	당해 품목 업무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지 15일	정지 1개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5.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닻이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한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비치한 때	법 제1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6.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역·출역 또는 어업활동중임을 표시하는 표시기를 게양하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게양한 때  第8條 (시험·연구등을 위한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등의 승인) ①外國人은 排他的經濟水域에서 試驗·研究 또는 教育實習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目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마다 農林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1. 水産動植物의 捕獲·採取 2. 漁業에 관련된 探索·集魚 3. 漁獲物의  보관·貯藏·加工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4. 獲物 또는 그 製品의 運搬</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承認證의 교부 및 비치, 승인사항의 標識에 관하여는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는 “승인”으로, “許可證”은 “承認證”으로, “許可事項”은 “승인사항”으로 본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承認證交付·승인사항 및 標識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p>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第11條 (肥料生産業의 登錄&lt;개정 1999. 3.31&gt;)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p>	(1) 생산시설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2) 공통시설 미달	법 제20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3.3.19, 2007.8.3&gt;</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肥料生産業의 登録에  필요한 施設 기타 登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규모이하의 副産物肥料의 生産業의  경우를  제외한다.</p>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3.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3조제2호 및 제5호	영업의 전부정 지 1월	등록 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7	<p>라. 종·묘생산업자가 종·묘생산업의 등록을 한 후 법 제16조 제1항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접순(?筍)·귀꽃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p>	법 제16조제3항제4 호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다. 등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영업정지30일	등록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13. 동물병원이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3조제4호	경고	시설보완시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12월	제3차 처분은 시설보완보고일로부터 적용한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가.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법 제9조의2	6개월	1년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第12條 (人蔘類製造業 및 人蔘留製品類製造의 신고 등<개정 2001.1.26>) ①人蔘類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管轄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법 제16조 제1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또는 영업폐쇄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人蔘耕作者가 자기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한 紅蔘·太極蔘 또는 白蔘을 輸出 또는 都賣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1.1.26, 2003.12.11, 2007.7.13, 2008.2.29&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紅蔘 또는 太極蔘의 製造業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施設基準을 갖추어야 한다.</p>						
어장관리법시행규칙 별표0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다. 자본금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등록 취소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90일	영업 정지 18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p>1.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 5 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p> <p>제 7 조 (보호시설의 설치)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직종)과 수(수) 및 인가기준(인가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p> <p>제 8 조의3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③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p>	법 제12조제1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 취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p>1. 법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 6 조 (지원시설의 설치)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p>	법 제20조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때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20조제1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9조제1호	경 고	업무 정지 1월	상담소 폐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9조제1호	경 고	경 고	보호 시설 폐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때  제 6 조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법 제16조 제1항제1호	형식 승인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2.29&gt;</p> <p>1. 계량기의 제작업</p> <p>2. 계량기의 수리업</p> <p>3.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이하 “계량증명업”이라 한다)</p>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다.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30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p>다.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p> <p>제 4 조 (산업표준심의회) ① 지식경제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p>	1) 제4조제3호에 따른 지방사무소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2) 제4조제4호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3) 제4조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다. &lt;개정 2008.2.29&gt;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li>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li>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5. 제23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li> </ol>			3개월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2)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제 5 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석유제품중 운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과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3조제1항제2 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법	사업	사업	등록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정지 3월	정지 6월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2)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한 때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3조제3항제2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3)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석유제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3조제3항제3호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第17條 (石炭加工業의 登錄등) ①石炭加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12.31, 2007.4.27&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石炭加工業者는 그 登錄事項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12.31, 2008.2.29&gt;</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또는 영업 정지 15일		
<p>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2의5</p>	<p>(2) 법 제4조제2항(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p> <p>제 4 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①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안전부품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부품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p>	<p>법 제7조제2호</p>	<p>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1월</p>	<p>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3월</p>	<p>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6월</p>	<p>안전 인증 취소</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사무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미달기준이 경미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보완명령			
			(2) 기준면적의 5분의 1이하 부족의 경우					
			(3) 기준면적의 5분의 1초과 3분의 1이하 부족의 경우					
			(4) 기준면적의 3분의 1초과 부족의 경우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修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資本金(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및 補修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기준자본금의 3분의 1미만 부족의 경우		등록취소			
			(2) 기준자본금의 3분의 1이상 부족의 경우					
	다. 보수	(1) 경미한 미달로 보수업을 영		보완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설비 가 등록 기준 에 미달 되 는 경 우	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준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이하부족의 경우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3) 기준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이하 부족의 경우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4) 기준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 초과 부족의 경우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라. 기술 인력 이 1인 부 족 한 경 우	(1) 등 록 기 준 중 기 술 인 력 이 1인 부 족 한 경 우	①부족기간이 1월이하의 경우		보완명령			
		②부족기간이 1월초과 3월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③부족기간이 3월초과 6월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④부족기간이 6월초과 1년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⑤부족기간이 1년초과의 경우		등록취소			
	(2)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2인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3)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3인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p>5. 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제 5 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p> <p>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안전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증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p>	법 제5조의 2제5호	인증 업무 일부 정지 1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p>나.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 3 조 (사업의 허가 등)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 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p>	법 제9조 제1항제4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결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p> <p>③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신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⑤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⑥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⑦허가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⑧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제 4 조 (허가의 기준)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li> <li>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li> <li>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li> <li>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li> <li>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li> <li>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li> <li>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li> </ol> </li> </ol>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p> <p>6.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p> <p>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제 6 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2.29&gt;</p> <p>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면 허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p>						
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염전에서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법 제23조제3호	허가 취소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 체염의 제조	법 제23조제3호	시정 명령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월	3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2 호 및 동조제3항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을 받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 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등록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4.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 3 조 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 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 제4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전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5. 법 제141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 선 기타 필요한 명령에 따 르지 아니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11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5 일 이하	15일 초과 ~ 1월 이하	15일 초과 ~ 1월 이하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운영 정지	운영 정지	운영 정지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11호	7일이 하 운 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 7 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②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부존량 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인 이상 다. 화학분야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법 제7조 제3항 제3호	등록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esolve Solid)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마. 보유 기술인력이 법 제 3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기준에 미달인 경우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호	등록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 ①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	(1)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2) 위 (1)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마지막 날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3. 제조소 또는 제조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법 제45조	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4. 제조시설·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법 제45조 (법 제43조)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경고	허가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경고	허가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법		영업	영업	허가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32조제1항제9호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2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라)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2조제1항제9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마)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2조제1항제9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8)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가) 시설이 미달된 때	제25조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2) 1)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제25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나) 장비·기술능력·자본금·사업장부지의 규모 등의 기준에 미달된 때	제25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 법 제21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	영업	영업	영업	허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3	제21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 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6 호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취소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4.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2월	등록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법 제38조	사용 중지 명령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법 제38조	폐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 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p> <p>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p> <p>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6)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66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66조	지정 취소			
	제64조 ④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그 밖에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검사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66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검사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66조	지정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4) 법 제68조제4항 및 이 규칙 제99조에 따른 기술인력에 미달		법 제69조	업무	지정	-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규칙 별표36	하는 경우  제68조 ④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99조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28과 같다.	제3호	정지 1개월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36	5) 법 제68조제4항 및 이 규칙 제99조에 따른 시설·장비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3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9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전 혀 없는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 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 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6)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48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5항제2호	경고	경고	지정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 규칙 별표21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 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5항제2호	지정 취소			
소음·진동규제법 시행 규칙 별표21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부족한 경우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 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법 제45조 제5항제2호	경고	경고	지정 취소	
소음·진동규제법 시행 규칙 별표21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구비하여야 할 검사장 및 시설·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	법 제45조 제5항제2호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나) 법 제34조제1항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22	5)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나) 1월 이상 실험실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다)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라)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마)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법 제64조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부족한 경우		10일	20일	1개월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사) 저장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아) 처리시설이 등록기준에 위반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자) 그 밖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64조 제3항제2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0일
악취방지법 시행 규칙 별표7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에 미달한 경우	(가)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9조	지정 취소			
		(나)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법 제19조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지정 취소
		(다)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9조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19조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마.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개선 명령	등록 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1) 법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요건이 등록 또는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다) 그 밖에 시설·장비 등이 노후화 또는 미달되거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 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		법 제34조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6)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마) 갖추어야 할 실험실(사무실을 포함한다)이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바) 갖추어야 할 실험실(사무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6 제2항제1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4)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가)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등록 취소				
	(다) 갖추어야 할 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갖추어야 할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등록 취소				
	(마) 갖추어야 할 사무실이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등록 취소				
	(바) 갖추어야 할 사무실면적이 부족한 경우		법 제23조의10 제2항제1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1)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경우	법 제27조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1)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장비가 미달된 경우	법 제27조제6호	경고	영업	영업	영업	영업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다) 기술능력이 미달된 경우	법 제27조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 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사무실이나 차고가 없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 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다)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 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 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 2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나)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 2호	경고	영업 정지1 개월	영업 정지3 개월	등록 취소
		다) 갖추어 두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	법	경고	영업	영업	등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설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54조제1항제1 2호		정지1 개월	정지3 개월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자. 관리대행기관이 보 유하여야 할 기술능 력·시설 또는 장비가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1)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 력이 부족하게 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2) 지정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 력이 전혀 없게 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3)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 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4) 시료채취 또는 운반용 차량이 없게 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4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5) 실험실 면적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6) 실험실이 전혀 없는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 규칙 별표2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가 갖 추어야 하는 기술능 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 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 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 호	등록 취소			
		(다)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 호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장비로 환경현황을 조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경고	경고	업무 정지15 일	업무 정지 1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 취소			
		(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다) 기술능력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 취소			
		(라) 기술능력에 속하는 실험기기가 부족한 경우(수질분야에 한한다) 법 제18조제5항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경우	(가) 해당지역에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		사용 중지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第3號 各目的 法律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申告를 하여야 하는 排出施設로서 許可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排出施設	(나) 해당지역에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지정 취소			
		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지정 취소			
		라) 시설 및 장비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가) 기술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칙 별표10	갖추어야 하는 기술 능력·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다)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 (소음·진동 분야는 실험기기가 없는 경 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1항	등록 취소			
		라)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 야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1항	등록 취소			
		마)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1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바)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 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사)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아) 등록된 차량의 구비요건이 미비한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1항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14.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탈퇴	법 제42조제4항	영업	영업	영업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물 시행령 별표 1	등에 조건을 부과한 자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도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④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정지 1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판매원 수첩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사격및사격장단속법	1.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제10조 (완성검사 등) ①사격장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제1항	허가취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 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임원개입에 필요한 3월 이상의	제21조 (행정처분)	허가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여유를 주어야 한다.</p> <p>제 6 조 (허가의 제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p> <p>2.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p> <p>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다. 정신병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p> <p>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p> <p>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아. 임원중 가목 내지 사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p>고등교육법</p>	<p>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p>	<p>제62조 (학교등의 폐쇄) 제2항</p>	<p>시설 폐쇄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있다. &lt;개정 1999.8.31, 2001.1.29, 2008.2.29&gt;</p> <p>제 4 조 (학교의 설립등) ②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lt;개정 2001.1.29, 2008.2.29&gt;</p> <p>제24조 (분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lt;개정 2001.1.29, 2008.2.29&gt;</p>		
기상법	<p>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제4호	등록 취소, 3월 이내 사업 정지 명령
기상법	<p>③기상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31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3인 이상과 환경부령</p>	제31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3항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이 정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상근자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배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것 3. 비영리법인일 것 4.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초·중등교육법	②관할청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 4 조 (학교의 설립등)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분교)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65조 (학교등의 폐쇄) 제2항	시설 폐쇄 명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	제17조 (행정처분) 제1항 제2호, 제3호	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 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여야 한다.</p> <p>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 6 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 8 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07.12.21]</p>		
<p>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p>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 2008.3.21&gt;</p> <p>3.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p>	<p>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제1항 제3호</p>	<p>평가인증 취소</p>
<p>물류정책기본법</p>	<p><b>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b></p>	<p>제39조 제2호</p>	<p>인증취소</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8조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②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할 것</p> <p>2.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것</p>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p><b>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b></p> <p>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법인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에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p> <p>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p>	제33조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법	<p><b>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결과 당해 시설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설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b></p>	제81조 제2호	설치허가 취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당해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설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판매장·제조장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제조업 또는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판매·제조 또는 경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제22조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 8 조의2 (행위의 제한) ①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원상회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경제자유구역 안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일 것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허가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허가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퇴출업종등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9조 (고시)	영업정지, 시설의 폐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제4조 (금융거래제한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금지에 관한 법률	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제4조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취소
관세법	③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의 취소, 6월의 범위 안에서의 업무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등록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18, 2006.3.24&gt;</p> <p>1. 제175조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p> <p>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에 설치·운영할 수 없다.</p> <p>1. 미성년자</p> <p>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p>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p> <p>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관세법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2. 사망한 때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등록취소
관세법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관세법	<p>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p> <p>1. 미성년자</p> <p>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p>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특허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p> <p>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p>		
	<p>②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lt;개정 2006.3.24&gt;</p> <p>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p> <p>1. 미성년자</p> <p>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p>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중</p>	<p>제204조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등)</p>	<p>6월의 영업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p> <p>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p>		
관세법	<p>1.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p> <p>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p> <p>1. 미성년자</p> <p>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p>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체제)	등록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p> <p>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p>		
관세법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6월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관세사법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 5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제8조 (등록의 취소)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될 수 없다.&lt;개정 1997.12.13, 2000.1.7, 2000.12.29, 2007.7.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li> <li>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li> <li>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li> <li>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ol>		
관세사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li> </ol>		등록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7조의3 (사원 등) ①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관세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원이 아닌 자</li> <li>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li> <li>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li> </ol> <p>④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p> <p>제17조의4 (자본금 등) ①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p>		
관세사법	2.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통관취급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②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 것 3. 그 밖에 통관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것		
관세사법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④제7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등록 취소 또는 1년 영업정지
관세사법	6. 제1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⑥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려는 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등록 취소 또는 1년 영업정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54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록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9 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p> <p>3. 이사 및 감사가 각각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4.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p>		
<p>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p>	<p>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p> <p>3. 제4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p> <p>2.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p>	<p>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p>	<p>등록취소 및 6월 영업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상일 것</p> <p>3. 임원은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p> <p>4. 상근하는 임·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p>		
<p>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	<p>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대부업자가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제 4 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lt;개정 2005.3.31, 2005.5.31&gt;</p> <p>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p>	<p>영업정지 및 등록취소</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가. 이 법</p> <p>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p> <p>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p> <p>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p>		
<p>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	<p>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7.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p>	<p>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p>	<p>등록의 취소</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	<p>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5.1.27&gt;</p>	<p>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p>	<p>명령, 취소, 변경, 중지, 원상회복</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상호저축은행법	<p>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1.3.28, 2008.2.29&gt;</p> <p>2.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p>	제24조 (행정처분)	6월 영업정지 및 취소
신용협동조합법	<p>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p>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6월 이내 업무정지 및 취소
신용협동조합법	<p>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p>	제85조	6월 이내 업무정지 및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신전문금융업법	②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4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등록 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	②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14조의4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p> <p>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lt;개정 2005.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이 법에 의하여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li> <li>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li> </ol>	<p>(등록의 취소 등)</p>	
<p>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p>	<p>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li> </ol>	<p>제38조의2 (자산유동화계획 의 등록취소)</p>	<p>취소</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6 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lt;개정 2000.1.21&gt;)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8.3, 2008.2.29&gt;</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p> <p>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경우</p> <p>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업자에 유동화자산을 신탁한 경우</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등(나목의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반환받은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p> <p>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p> <p>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거나 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해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삼자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지한 경우		
국유재산법	①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제2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취소 및 철회
주세법	①관할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보유하거나 판매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제48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영업정지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주세법	<p>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p> <p>제 6 조 (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주세법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4.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p> <p>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05.3.31&gt;</p> <p>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p> <p>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p> <p>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p> <p>7.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p> <p>8. 면허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p> <p>9.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공인노무사법	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수)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3 (노무법인의 사원)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제7조의6 (노무법인 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항 제2호	지정 취소 1년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위탁훈련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각각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06.12.21, 2007.1.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li> <li>2.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li> <li>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다만, 당해 훈련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것</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시설에서 3월</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외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내용, 지정의 세부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능력개발훈련</li> <li>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li> <li>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li> </ol>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2항	시정명령 설립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2.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p> <p>2. 당해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항</p>	<p>시정명령 승인취소</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것</p> <p>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p> <p>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p>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p>①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29&gt;</p> <p>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p> <p>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p> <p>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p> <p>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p> <p>4.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p> <p>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p>	<p>제18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1항 제3호</p>	<p>등록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자</p> <p>제14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8.3, 2008.3.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li> <li>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li> <li>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li> <li>4. 삭제 &lt;2007.8.3&gt;</li> <li>5.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li> <li>6.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li> <li>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li> </ol> <p>[시행일:2009.2.4] 제14조제1호,제14조제4호</p>		
기능대학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lt;개정 2001.1.29,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li> </ol>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설립인가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 3 조 (기능대학의 설립) ④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p>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p> <p>제 8 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p> <p>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p> <p>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p> <p>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p>	제18조 (인증의 취소) 제1항 제2호	인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상일 것</p> <p>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p> <p>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p> <p>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p> <p>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p>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p>	제15조 (안전관리자등)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6월 이내 업무 정지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p>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p>	제34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안전인증 취소 6개월 이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명령 개선명령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p>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노동부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 7 조(작업환경 측정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p>	제7조의2(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	지정 취소 6월 이내 업무 정지 명령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p>①노동부장관은 과건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과건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3.21&gt;</p> <p>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9조 (허가의 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과건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p>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허가 취소 6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과건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과건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선법	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  제 4 조 (도선사면허) ③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2호	취소
사료관리법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 8 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산지관리법</p>	<p>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p>	<p>제20조 제2호</p>	<p>허가 취소</p>
<p>산지관리법</p>	<p>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6.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p>	<p>제20조 제6호</p>	<p>허가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p> <p>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p> <p>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p> <p>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p> <p>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p> <p>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p> <p>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9. 가축의 방목</p> <p>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p> <p>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p> <p>12. 물건의 적치</p> <p>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lt;개정 2007.1.26&gt;)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p>	제31조 제8호	허가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항만법	<p>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p>	제36조 제2호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b>2. 제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b></p> <p>제34조 (예선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행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8.3,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선은 자가소유예선(자기명의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가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적합할 것</li> <li>2. 예선추진기형은 전(전)방향추진기형일 것</li> <li>3. 예선에 소화설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li> <li>4. 등록 당시 당해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항만법	<p>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제36조 제3호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b>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b></p> <p>제3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류)·발전용석탄의 화주(화주)</li> <li>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li> <li>3. 조선사업자</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li> </ol>		
항만법	<p>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2.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b></p> <p>제 9 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p>	제63조 제2호	<p>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변경 또는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처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②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2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b>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b></p>	<p>제35조 제2항 제3호</p>	<p>영업정지·등록취소·영업폐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①시장·군수·구청장은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b>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b></p> <p>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p>	<p>제36조 제1항 제1호</p>	<p>과징금 부과</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p> <p>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제38조 제3항 제1호</p>	<p>게임물·광고·선전물의 수거·폐기·삭제</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p> <p>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p> <p>제21조 (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p>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p>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제13조 제1호	허가취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제1항	지정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④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제26조 제1항 제2호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사회복지사업법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40조제1항 제1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사회복지사업법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제34조 (시설의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제40조제1항 제4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1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3 조 (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p>	<p>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10조 (입양기관) ⑤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1999.1.21, 2008.2.29&gt;</p>	<p>제19조 제1항 제1호</p>	<p>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p>
<p>전염병예방법</p>	<p>2.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p>	<p>제40조의 8 제1항 제2호</p>	<p>영업정지6월 또는 영업장 폐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05.7.13, 2008.2.29>		
화장품법	<p>1.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p> <p>제 3 조 (제조업의 신고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7.10.17&gt;</p> <p>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p> <p>4. 이 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p> <p>5.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p>	제20조 제1항 제1호	영업장 폐쇄 또는 업무정지1년
도선법	<p>2.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도선대상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때</p> <p>제4조 (도선사면허)</p> <p>③도선사면허의 기준과 종별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9조 제2호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사료관리법	<p>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4.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제 8 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25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산지관리법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	제20조 제2호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p>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6.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p>	제20조 제6호	허가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li> <li>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li> <li>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li> <li>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li> <li>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p> <p>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9. 가축의 방목</p> <p>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p> <p>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p> <p>12. 물건의 적치</p> <p>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산지관리법</p>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lt;개정 2007.1.26&gt;)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p>	<p>제31조 제8호</p>	<p>허가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항만법	<p>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b>2. 제3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b></p> <p>제34조 (예선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행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8.3, 2008.2.29&gt;</p>	제36조 제2호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예선은 자가소유예선(자기명의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또는 자가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전)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등록 당시 당해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선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b>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b>  제3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류)·발전용석탄의 화주(화주)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제36조 제3호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조선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항만법	<p>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2.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b></p> <p>제 9 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63조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승인취소·변경 또는 항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처분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②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2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p>		
한부모가족지원법	<p><b>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b></p> <p>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 폐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p><b>2. 제19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b></p>	제21조 제1항 제2호	인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법률	제19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⑧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b>3. 제19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b> 제19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⑧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제1항 제2호	그 <u>지정을 취소</u> 하거나 <u>6개월 이내</u> 의 기간을 정하여 <u>업무의 정지</u> 또는 <u>제한</u> 을 명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b>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때</b> 제20조 (검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제3호	그 <u>지정을 취소</u> 하거나 <u>1년 이내</u>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u>업무의 전부</u> 또는 <u>일부</u>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광업법	<b>2.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b> 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	제57조 제2호	조광권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lt;개정 2008.2.29&gt;                      ②광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p>		
변리사법	<p><b>3. 제6조의4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제6조의7, 제11조 또는 제6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b></p> <p>제 6 조의4 (구성원등) ②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6 조의5 (법인의 사무소등) ①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인이상의 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구성원과 그 소속변리사는 소속법인의 사무소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0.1.28]</p> <p>제 6 조의6 (업무집행방법) ①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p>	제6조의 8 제3호	인가취소 (취소할 수 있다. 단, 필수적 청문 사항)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p> <p>③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p> <p>제 6 조의7 (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p> <p>②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 또는 소속변리사이었던 자는 당해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법인이 수입 또는 수입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1.28]</p> <p>제11조 (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 및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제 6 조의10 (준용규정) ①제6조의2제2항·제7조·제7조의2·제</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8조 및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은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②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8]</p> <p>제 6 조의2 (사무소 설치) ②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7 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p> <p>제 7 조의2 (비변리사와의 제휴금지) 변리사는 제5조·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 또는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lt;개정 2004.12.31&gt;</p> <p>제 8 조의2 (품위유지 및 성실·공정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8 조의3 (명의대여등의 금지) ①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변리사는 쟁송중인 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0.1.28]</p> <p>제 8 조의4 (사무직원) 변리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p> <p>[본조신설 2000.1.28]</p>		
산업발전법	<b>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b>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p><b>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b></p> <p>제32조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34조 제8호	등록을 취소하거나 <u>6월</u> <u>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u> <u>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u> <u>정지를 명할 수 있다.</u>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33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2.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b></p> <p>제 4 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기준 및 생산체계평가기준 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 8 조 (승강기 안전인증)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p>	제7조 제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p><b>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b></p> <p>제2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제23조 제2호	<p>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필수적 청문 사항)</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b>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b></p> <p>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li> <li>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li> </ol> <p>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⑤ 제2항의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li> <li>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li> <li>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li> </ul> </li> </ol>	제24조 제1항 제5호	그 <u>지정을 취소</u> 하거나 <u>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u> 를 명할 수 있다.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받은 기관</p> <p>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p> <p>2.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것</p> <p>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p> <p>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p> <p>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p> <p>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p> <p>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춘 것</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4.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4조 제2항 제4호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 또는 실험을 한 경우  제22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3.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물류설비의 인증) ⑥물류설비의 인증 절차·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전자거래기본법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③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 실적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제30조의2 제3호	지정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제2항 제2호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43조 제3항 제2호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p><b>4.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b></p> <p>제 6 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는 것</p> <p>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p> <p>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p> <p>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p>	제43조 제3항 제4호	”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b>2.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b>  제10조 (인증로봇제품 등의 공고 등) 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이 계속하여 인증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의 생산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제2호	인증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b>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한 후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b>	제152조 제2호	등록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탁업법	<b>1의3.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때</b>	제29조의2 제1의3호	인가취소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제 9 조 (허가)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12조 제2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산책로·도로·공중변소 및 정자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보수·개축 4.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수도법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34조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35조 제1항 제2호	영업정지 3월 또는 사업장 폐쇄
소음·진동규제법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제34조 제1항 제2호	인증취소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제4호	허가나 변경허가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 6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4조 제4호	등록취소
야생동·식물 보호법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야생동·식물 보호법	2.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야생동·식물 보호법	2. 야생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야생동·식물 보호법	2.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2조 제2호	허가취소
토양환경보전법	<p>6. 제23조의2제1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통보한 때</p> <p>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4.1.2.31&gt;</p> <p>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의 검증  마.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p> <p>2. 누출검사기관 :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p>	제23조의6 제2항 제6호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폐기물관리법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제27조 제2항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12. 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제54조 제1항 제1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 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p> <p>제 5 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lt;개정 2006.4.28&gt;) ①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목적·제조시설·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4.28, 2008.2.29&gt;</p>	<p>제8조 제1항 제3호</p>	<p>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p>3. 측정기기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제 9 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 제3호</p>	<p>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lt;개정 2007.5.25&gt;</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p>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7조 제1항 제5호</p>	<p>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측정대행업)</p>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환경영향평가법	<p>1. 평가대행자가 제35조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3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기술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제34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 평가계획서,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또는 간이평가서(이하 “평가서등”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제39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p>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p> <p>2.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p>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p> <p>제 2 조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p> <p>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p> <p>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p> <p>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사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p> <p>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p> <p>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p> <p>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p> <p>사.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호	제31조 (가맹거래사의	취소



5. 지정허가 등록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li> <li>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li> <li>4.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li> <li>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li> </ol> <p>제27조 (가맹거래사 )</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ol>	<p>등록취소와 자격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제29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제2항	자격정지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소비자단체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제30조 (등록의 취소)	취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①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인가기준에	제17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미달하게 된 때  제6조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설립동의자의 수, 출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호	

##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9. 책임자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확인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 제1항제9호 업무 정지 3월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	2. 해당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 제1항제9호 업무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행의 절차 등) ⑤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p>	<p>법 제17조 제1항제9호</p>	<p>3월</p>			
<p>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p>	<p>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때</p> <p>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①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p>	<p>법 제19조제1항제8호</p>	<p>영업 정지 6개월</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p> <p>②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lt;개정 2004.12.31&gt;</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 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p> <p>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 여부</li> <li>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li> <li>3. 골재의 부존량</li> <li>4. 부존골재의 품질</li> </ol>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신청자의 골재채취 능력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31조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의2.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제26조 (골재채취등)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법 제19조제1항제10호의2	영업 정지 4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②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취구역·채취기간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2.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제26조 (골재채취등)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채취기간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제1항제2호	채취 중지 3개월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4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4호	경고	등록 취소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2. 법 제8조제1항·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한 때	법 제31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14조제 2항, 규칙 제5조·제16조·제19 조의2	업무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3. 무환(시험연구용 등을 포함한다)수입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용 도 외에 사용한 때	법 42조, 『의료기기법』 제14조, 규칙 제17조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6. 제조관리자가 당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법 제37조제2항	경 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1.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소·수입업소 ·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업소·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의료기기수리업소,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 그 밖에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때	법 제50조 『의료기기법』 제24조, 규칙 제22조제1항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2. 주의동물용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때	법 제85조, 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업무 정지	업무 정지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7일	1개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이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9.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종별 할당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때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漁獲量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水産資源의 動向, 大韓民國 漁業者의 漁獲實態, 外國人의 漁業狀況 및 周邊外國水域에서의 大韓民國 漁業者의 漁業狀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업법』 제56조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정지 30일	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이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0. 법 제6조·영 제4조 및 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규모 또는 어구규모를 초과하거나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 또는 사용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마.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때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肥料의 公定規格을 設定·변경 또는 廢止하거나 副産物肥料를 지정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30	법 제19조제2호 법 제20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당해 제품 회수 ·양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日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 또는 지정의 告示가 되지 아니한 肥料를 生産·輸入하여 農業用으로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公定規格의 設定이나 副産物肥料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公定規格이 設定되거나 副産物肥料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生産·輸入하여 販賣할 수 없다. 다만, 試驗用 또는 研究用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금 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8조	경고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경고	경고	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4. 수의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1호	면허 효력 정지 6월	면허 효력 정지 9월	면허 효력 정지 12월	
수의사법 시행규칙	7. 수의사가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법 제32조제2항제4호	면허	면허	면허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효력 정지 15일	효력 정지 1월	효력 정지 6월			
별표2	한 때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8.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9.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 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 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 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기선저 인망어업,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어업,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 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트롤어 업을 한 경우	취 소	-	-	취 소	-	-
		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 반업을 한 경우	정지 90일	취 소	-	정 지 90	취 소	-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정지	정지	취소	정지	정지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0.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3조 제49조	정지 60 일	정지 90 일	취소	정지 60 일	정지 90 일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1.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정지 30 일	정지 45 일	정지 60 일	정지 30 일	정지 45 일	정지 60 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경고	경고	취소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3.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 종묘시설을 한 경우	제43조	경고	취소	-	-	-	-
수산관계법령	14.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	제43조	경고	정지	정지	-	-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고	지 30 일	지 45 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구를 부설한 경우		고	지 30 일	지 45 일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5.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제43조	정 지 30 일	정 지 45 일	정 지 60 일	정 지 30 일	정 지 45 일	정 지 60 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칙 제5조	정 지 30 일	정 지 45 일	정 지 60 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법 제82조 제5항제4호	경고	등록 취소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2. 법 제8조제1항·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4호	등록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1.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업무	허가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취급규칙 별표3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제조(수입)한 때	제31조제2항·제4항 및 제4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14조제2항, 규칙 제5조·제16조·제19조의2	정지 3개월	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3. 무환(시험연구용 등을 포함한다)수입한 동물용의약품등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법 42조, 『의료기기법』 제14조, 규칙 제17조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6. 제조관리자가 당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법 제37조제2항	경고	제조 정지 7일	제조 정지 15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1.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소·수입업소·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업소·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 의료기기수리업소,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 그 밖에 판매업소 외의 장소에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때	법 제50조 『의료기기법』 제24조, 규칙 제22조제1항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2. 주의동물용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때	법 제85조, 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업무 정지 7일	업무 정지 1개월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이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9.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종별 할당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때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漁獲量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水産資源의 動向, 大韓民國 漁業者의 漁獲實態, 外國人의 漁業狀況 및 周邊外國水域에서의 大韓民國 漁業者의 漁業狀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업법』 제56조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정지 30일	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이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0. 법 제6조·영 제4조 및 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규모 또는 어구규모를 초과하거나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 또는 사용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마.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료의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때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肥料의 公定規格을 設定·변경 또는 廢止하거나 副産物肥料를 지정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30日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법 제19조제2호 법 제20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당해 제품 회수 ·양 도금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定 또는 지정의 告示가 되지 아니한 肥料를 生産·輸入하여 農業用으로 販賣하고자 하는 者는 公定 規格의 設定이나 副産物肥料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公定 規格이 設定되거나 副産物肥料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生産·輸入하여 販賣할 수 없다. 다만, 試驗用 또는 研究用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구역 밖에 어구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8조	경고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경고	경고	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4. 수의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1호	면허 효력 정지 6월	면허 효력 정지 9월	면허 효력 정지 1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면허 효력 정지 15일	면허 효력 정지 1월	면허 효력 정지 6월	해기사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7. 수의사가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4호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8.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9.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에 다음 각 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가.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또는 동해구트롤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제49조	취 소	-	-	취 소	-	-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나. 그 밖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정지 90일	취 소	-	정 지 90 일	취 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0.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제43조 제49조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정 지 90 일	정 지 60 일	정 지 90 일	취 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1.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해당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정 지 30 일	정 지 45 일	정 지 60 일	정 지 30 일	정 지 45 일	정 지 60 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2.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경 고	경 고	취 소	-	-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경고	취소	-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3.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 종묘시 설을 한 경우	제43조	경고	취소	-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4.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 구를 부설한 경우	제43조	경고	정지 30 일	정지 45 일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5.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 서 조업을 한 경우	제43조	정지 30 일	정지 45 일	정지 60 일	정지 30 일	정지 45 일	정지 60 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제1항제2호, 규칙 제5조	정지 30 일	정지 45 일	정지 60 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	법 제73조의6	업무	업무	등록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별표15의2	<p>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5.26, 2008.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li> <li>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li> </ol>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p>	제4호	일부 정지 3월	일부 정지 6월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7.1.3,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공사</li> <li>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li> <li>3.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li> </ol>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4.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도로주행교육 또는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5일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전문학원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 초과 ~ 1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1월 초과 ~ 2월 이하 운영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경고 또는 7일이 하 운영 정지	7일초 과 ~ 1월이 하 운영 정지	1월초 과 ~ 2월이 하 운영 정지	등록취 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11. 교육생 정원을 위반한 때 가.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한 때 나. 1일 최대 교육횟수를 초과한 때 다.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일시수용능력인원×1 일 최대 교육횟수)을 초과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이 하 운영 정지	7일초 과 ~ 1월이 하 운영 정지	1월초 과 ~ 2월이 하 운영 정지	등록취 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이 하 운영 정지	7일초 과 ~ 1월이 하 운영 정지	1월초 과 ~ 2월이 하 운영 정지	지정취 소· 등록취 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1. 자동차 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 사무소 등을 설치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15일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이 하 운영 정지	1월초 과 ~ 2월이 하 운영 정지	2월초 과 ~ 3월이 하 운영정 지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5일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이하 운영 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 정지	2월초과 ~ 3월이하 운영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15일 이하 운영 정지	15일 초과 ~ 1월이하 운영 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 정지	2월초과 ~ 3월이하 운영정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7) 허가받은 업종 외의 가축분뇨 관련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7) 등록된 범위 외의 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73조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8)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법 제73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제7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70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나)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 등록기준의 검사장비가 부족한 경우	법 제73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등록기준의 검사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55조 제2호	인증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7)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7호	지정 취소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7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제23조 (재활용의 제한) ①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용도로만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3항	사용 중지 30일	사용 중지 60일	폐쇄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p>9)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 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8.3&gt;</p> <p>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 하는 영업</p> <p>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 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p> <p>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p> <p>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 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p>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관세사법	<p>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p> <p>제19조 (통관취급법인등) ⑤통관취급법인등이 행할 수 있는 통 관업무는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p>		등록 취소 및 1년 영업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주세법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동일한 주류제조장안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산지관리법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개정 2007.1.26>)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제31조 제4호	허가취소,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산지관리법	<p>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p>	제36조 제1항 제2호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lt;개정 2007.1.26&gt;)</p> <p>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lt;개정 2007.1.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li> </ol> <p>가. 『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선박직원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면허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b>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b></p> <p>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li> <li>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li> <li>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li> </ol>	제38조 제3항 제3호	게임물·광고·선전물의 수거·폐기·삭제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p> <p>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관광진흥법	<p>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1.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p>	제35조 제1호	승인취소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4 조 (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제23조 제1항 제9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b>9. 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수리 업무를 행한 경우</b>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13. 수리업자가 등록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수리를 한 경우</b></p>	제28조 제1항 제13호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전파법	<p>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p> <p>제25조 (무선국의 운용 &lt;개정 2007.12.21&gt;) ② 무선국은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한 범위,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6.13&gt;</p> <p>1. 조난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2. 긴급통신(선박이나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p>	제72조 제1항 제9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급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3. 안전통신(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호를 먼저 보낸 후에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4.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할 때에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p>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lt;개정 2007.1.26&gt;)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p>	제31조 제4호	허가취소,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산지관리법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제36조 제1항 제2호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취소할 수 있다.</p> <p>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p> <p>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 &lt;개정 2007.1.26&gt;)          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lt;개정 2007.1.26&gt;</p> <p>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p> <p>가. 『도로법』·『철도건설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p> <p>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는 경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굴취·채취한 토석을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면허취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입주허가의 취소 등) ②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b>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은 사업외의 사업을 한 경우</b>  제11조 (입주허가) ①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허가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	제32조 제1항 제7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p>7.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lt;개정 2007.5.17&gt;) ①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42조 제1항 제7호	허가나 변경허가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 6월
야생동·식물 보호법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제15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4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 및 고사(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7.5.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li> <li>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li> </ol>		
야생동·식물 보호법	<p>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p> <p>제16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p>	제17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이 정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7.5.17&gt;</p> <p>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I,II,III)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p> <p>2. 동·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p> <p>3.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별 세부허가조건에 적합할 것</p> <p>②삭제 &lt;2007.5.17&gt;</p> <p>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야생동물·식물 보호법	<p>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p> <p>제19조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①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물·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중 환경부령이 정하</p>	제20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7.5.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li> <li>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li> </ol>		
야생동·식물 보호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li> </ol>	제22조 제3호	허가취소
폐기물관리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li> </ol> <p>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8.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li> <li>2. 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 할 수 있다고 인</li> </ol>	제27조 제2항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p> <p>3. 폐기물 최종처리업 :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p> <p>4. 폐기물 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p>		
하수도법	<p>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p> <p>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p> <p>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제30조 제3호	허가취소
하수도법	<p>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p> <p>제24조 (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제30조 제4호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하수도법	7. 처리시설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1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제1항 1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5조 (시정조치)	과징금

6. 허가·인가범위 초과영업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과징금)	과징금

###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영업 정지 6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2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110조제9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형식 승인 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46조 제4항제4호	경 고	정지 3월	정지 6월	인증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2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6조 제5항제3호	경고	정지 3월	정지 6월	승인 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1) 최근 1년동안 직업소개실적이 없는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 취소 무료: 사업 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5.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실적이 없는 때		허가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9. 유해·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 한 교육기관(법 제47조관련)	라. 1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온 때	지 정 취 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 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80일	업무 정지 1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나.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2호	경 고	등 록 취 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3호	영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9.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경고	경고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0.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2조	경고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1.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경고	경고	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10. 동물병원이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1호	경 고	업무 정지 6월	업무 정지 12월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제48조 제52조	경고	취소	-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2조 제48조 제52조	경고	취소	-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3.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48조 제52조	경고	경고	취소	-	-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1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나.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2호	경 고	등 록 취 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3호	영업 정지 1년	등 록 취 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9.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경고	경고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0.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 상 휴업한 경우	제32조	경고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1.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경고	경고	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10. 동물병원이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1호	경고	업무 정지 6월	업무 정지 12월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제48조 제52조	경고	취소	-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2조 제48조 제52조	경고	취소	-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3.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48조 제52조	경고	경고	취소	-	-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때 가. 설치목적의 달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제40조제1항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5호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때 12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2항제5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제3항제6호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7호	등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6.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업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제141 조제2 항에 따른 3월 이하 보완 명령	등록 취소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4호	제141 조제2 항에 따른 3월	지정 취소 · 등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하 보완 명령	취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사.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7호	경 고	등록 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9.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법 제45조	효력 정지 1달	효력 정지 6달	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10.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	법 제45조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 (허가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3호까지	허가 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6)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5호	등록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6) 등록 후 2년 이내에 검사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검사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4)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6조	지정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2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허가 ·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7) 등록 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7호·제36조 제7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1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법 제23조의6 제3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2)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	법 제23조의10 제3항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3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4)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7)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7호	영업 정지6개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10)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1호	등록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라. 지정 후 1년 이내에 관리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리대행실적이 없는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지정 취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10) 등록된 후 2년 이내에 영향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 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향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7호	경고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2) 등록후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호	지정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1) 지정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 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경고	경고	지정 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	1)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	경고	등록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사격및사격장단속법	2. 완성검사에 합격된 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완성검사 등) ②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된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제1항	허가취소
사격및사격장단속법	3. 영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제18조 제1항	허가취소
고등교육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제1항 제3호	학교 폐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원자력법	<p>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86.5.12, 1995.1.5, 1996.12.30, 1999.2.8, 2008.2.29&gt;</p> <p>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p>	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제1항 제2호	허가, 지정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1999.2.8, 2001.1.16, 2008.2.29&gt;</p> <p>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은 사용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p>	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개정 1999.2.8, 2001.1.16>) 제1항 제2호	허가 등록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사용금지 명령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99.2.8, 2008.2.29&gt;</p> <p>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받</p>	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2호	허가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원자력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독업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2.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등록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지한 때	제90조의7 (관독업무자 등록의 취소등<개정 1999.2.8>) 제1항 제2호	등록 취소, 1년 내의 업무 정지
초·중등교육법	①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65조 (학교등의 폐쇄) 제1항 제3호	학교 폐쇄 명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제17조 (행정처분) 제1항 제4호	등록 말소 1년 이내 교습 정지 명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 제2항 제2호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지하수법	5.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5호	허가취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항공법	제81조 (허가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설치계획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당해 시설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기간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1999.4.15, 2008.2.29>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사착수예정일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료예정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 제1호	설치허가 취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당해 시설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관세법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정부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7조 (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영업취소
관세법	3.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별보세구역의 설치목적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영업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관세법	①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4조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등)	지정취소
관세법	2.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의 감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4조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등)	6월의 영업정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4. 1년간 계속하여 제4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기타 재무건전성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제55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등록취소 및 6월 영업정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	<p>②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 당해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p>	<p>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p>	<p>영업정지 및 등록취소</p>
<p>부가가치세법</p>	<p>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 5 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lt;개정 2006.12.30&gt;</p>	<p>제5조 (등록)</p>	<p>등록 말소</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	<p>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p>	<p>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p>	<p>명령, 취소, 중지, 원상회복</p>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5.1.27&gt;</p> <p>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신용협동조합법</p>	<p>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6. 조합의 출자금합계액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4조제4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p> <p>제14조 (출자금등) ④출자금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lt;개정 2000.1.28&gt;</p> <p>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목의 금액</p> <p>가. 특별시·광역시 : 3억원</p> <p>나. 시 : 2억원</p> <p>다. 군(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천만원</p>	<p>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p>	<p>6월 이내의 업무정지 및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별시·광역시 : 1억원 나. 시 : 8천만원 다. 군 : 5천만원		
신용협동조합법	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6월 이내의 업무정지 및 취소
전자금융거래법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취소
전자금융거래법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을 폐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주세법	<p>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0.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취소
공인노무사법	<p>④ 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p> <p>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0조 (징계)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lt;개정 2007.12.21&gt;</p> <p>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p>	제5조 (등록 <개정 1990.4.7, 2007.8.3>) 제4항	등록 거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p> <p>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노무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p> <p>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업무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8.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기록·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p> <p>9.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p> <p>10. 제20조의2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11.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p> <p>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한다.</p> <p>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3년 이하의 자격정지</p>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등록취소                      3. 6개월 이하의 직무정지                      4. 견책(견책)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p>	<p>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1항 제4호</p>	<p>지정 취소                      1년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능력개발훈련</li> <li>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li> <li>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li> <li>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li> </ol>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2항	시정명령 설립 허가 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항	시정명령 승인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능대학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	설립인가 취소
무인도서의 보전및관리에 관한 법률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17조 제3호	허가취소
사료관리법	③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3항 제2호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lt;개정 2007.1.26&gt;)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p>	제31조 제2호	허가 취소, 굴취·채취의 중지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선박투자회사법	<p>5.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p> <p>6.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p>	제47조 제5호	시정조치 또는 허가 취소
선박평형수관리법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제18조 제3호	형식승인, 효력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p>		
선박평형수관리법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제19조 제3항 제2호	취소
선박평형수관리법	<p>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p>	제26조 제1항 제8호	등록 취소, 업무정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제17조 제1항 제2호	6월 기간 시정 요구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7.1.3&gt;</p> <p>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2조 (개원 및 휴원)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p>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p>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7.1.3&gt;</p> <p>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②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제17조 제1항 제3호	6월 기간 시정 요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b>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뉴스통신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b></p>	제9조의3 제5항 제1호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8 조 (등록 등) ①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호</li> <li>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li> <li>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li> <li>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li>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li> <li>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p>	<p>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b>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당해 뉴스통신사업을 중단한 때</b></p>	<p>제9조의3 제5항 제2호</p>	<p>등록취소</p>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8 조 (등록 등) ①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호</li> <li>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li> <li>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li> <li>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li>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li> <li>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p>	<p>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당해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b></li> </ol>	<p>제22조 제1호</p>	<p>등록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b>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계간·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당해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때</b>	제22조 제2호	등록취소
방송법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제18조 제5호	허가,승인,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제 4 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1년
전파법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제72조 제1항 제7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무인도서의 보전및관리에 관한 법률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17조 제3호	허가취소
사료관리법	③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	제12조 제3항 제2호	등록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p>		
산지관리법	<p>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석재의 굴취·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석의 굴취·채취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이를 중단한 경우</p> <p>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lt;개정 2007.1.26&gt;) ①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p>②산지에서 객토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p>	제31조 제2호	허가 취소, 굴취·채취의 중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선박투자회사법	<p>5.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2에 따른 최저 순자산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여야 한다.</p>	제47조 제5호	시정조치 또는 허가 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선박평형수관리법	<p>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지 아니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7조 (형식승인 및 검정) ①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p>	제18조 제3호	형식승인, 효력정지
선박평형수관리법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p>	제19조 제3항 제2호	취소
선박평형수관리법	<p>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p>	제26조 제1항 제8호	등록 취소, 업무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개원 및 휴원)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6월 기간 시정 요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3>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	6월 기간 시정 요구
광업법	35조 (광업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5조 제1호	광업권 취소 (취소할 수 있다.)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b>1.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b></p> <p>제40조 (사업을 시작할 의무 등) ①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탐광이나 채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작하여야 한다.</p> <p>②광업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개정 2008.2.29&gt;</p>		
광업법	<p><b>4.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b></p> <p>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lt;개정 2008.2.29&gt;</p>	제35조 제4호	광업권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광업법	<p><b>4.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b></p> <p>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④광업권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p>	제57조 제4호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p>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p>제40조 (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b>1. 입주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b></p>	제40조 제1항 제1호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p><b>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b></p>	제40조 제1항 제3호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산업발전법	<p>제22조의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하거나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b>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b></p>	제22조의3	지정취소 (취소할 수 있다.단, 필수적 청문 사항)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	<p>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7.4.11&gt;</p> <p><b>1.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b></p> <p>『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제13조의 5 제1호</p>	<p>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p> <p>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p> <p>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p> <p>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p> <p><b>『산지관리법』</b></p> <p>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p>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26&gt;</p> <p>②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이나 토석의 굴취·채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lt;신설 2007.1.26&gt;</p> <p>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중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6&gt;</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7.1.26, 2008.2.29&gt;</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7.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	제34조 제7호	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p> <p>제32조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등) ④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중 “제5조”를 “제32조”로 보고, 제12조중 “석유정제업자”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 본다.</p> <p>제33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③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p>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중 “제10조”를 “제33조”로 보고, 제12조중 “석유판매업자”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로 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b>4.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b>	제23조 제4호	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필수적 청문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b>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b>	제26조 제5호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염관리법	제10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b>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	제10조의2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염관리법	제23조 (허가취소 등) 시·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염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23조 제1호	허가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염관리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2 제3호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휴지)한 경우	제7조 제3호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3.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6 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무역조정지원대상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을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p>		<p>중단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p> <p>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을 한 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④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수입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p>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7 조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판로) 및 입지(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전문개정 2007.12.21]</p> <p>제 8 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부자재)의 구입 자금</li> <li>2.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p> <p>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기준·대상·규모·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p> <p>제 9 조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p> <p>제10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p>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전시산업발전법	제10조(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제 7 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제1·2호	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전자거래기본법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제30조의2 제2호	지정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	제37조 제1항 제1호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허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p> <p><b>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b></p>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p><b>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b></p> <p>제10조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2.29&gt;</p> <p>1. 창업자에 대한 투자</p>	제43조 제1항 제3·호	<p>등록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p>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p><b>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b></p>	제43조 제3항 제4호	<p>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사항)</p>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 8 조 (지정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당해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1. 특정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제8조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사항)
경비업법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제19조 제4호	허가취소
경비업법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제19조 제5호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3. 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13조 제2항 제3호	등록취소 (등록취소할 수 있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	2. 완성검사에 합격된 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완성검사 등) ②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된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제18조 제1호	허가취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건물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25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먹는물 관리법	<p>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제 9 조 (샘물 개발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08.3.21&gt;</p>	제12조의2 제2항	허가취소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먹는물 관리법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제17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 관리법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제43조 제6항 제4호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 관리법	③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 제3항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수도법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착수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인가취소
수도법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도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 제1항 제2호	인가취소
소음·진동규제법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제43조 제6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2.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	제42조 제1항 제2호	허가나 변경허가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3.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64조 제3호	등록취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34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토양환경법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때	제23조의6 제3항 제2호	영업정지 6월
토양환경보전법	③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0 제3항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49조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하수도법	3.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7. 등록 후 영업 미개시 또는 영업실적 없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17조 제1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측정대행업)
환경영향평가법	8.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제39조 제2항 제8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시·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때	제17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	취소

## 8. 명의대여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p>9. 법 제28조제7호에 해당된 때</p> <p>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p>	<p>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p>	취소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p>3. 법 제18조를 위반한 때</p> <p>제18조 (등록명의대여의 금지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법 제19조제1항제6호</p>	<p>영업 정지 6개월</p>			

8. 명의대여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2	3.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행사 금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면허 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부여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8	5.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사실상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 또는 이중취업한 경우 나. 1회 대여 또는 이중취업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3년			
			자격 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7)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소의 명칭을 표시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 정지1 0일	사업 정지1 월	사업 정지2 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등록 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0	(11)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		허가 취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2. 자신의 관리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2호	면허 정지 1년	면허 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1. 산림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0조제4항	자격 취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2.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면허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34조	경고	취소	-	
수산관계법령						



8. 명의대여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3.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5조	경고	취소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3. 수의사가 자신의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법 제32조제1항제4호	면허 효력 정지 12월	면허 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9조 (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1항제4호	국내: 영업 정지 1월 국제: 등록 취소	국내: 영업 정지 2월	국내: 영업 정지 3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10. 안마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5호	자격 취소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3.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거나 처분	가. 벌금 1천만원 이상 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	자격 정지 12개월	면허 취소		
			자격	면허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을 받은 경우	만원 미만		정지 11 개월	취소		
	다. 벌금 400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자격 정지 10 개월	면허 취소		
	라. 벌금 300만원 이상 400 만원 미만		자격 정지 9개월	면허 취소		
	마. 벌금 200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자격 정지 8개월	면허 취소		
	바. 벌금 100만원 이상 200 만원 미만		자격 정지 7개월	면허 취소		
	사. 벌금 100만원 미만		자격 정지 6개월	면허 취소		
	아. 기소유예, 선고유예		자격	면허		

8. 명의대여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지 5개월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1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경우	가. 2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5호	자격 취소			
		나. 1회 사용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6개월			
		다. 인증심사원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 취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3. 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73조의6 제3호	업무 일부 정지 6월	등록 취소		
제73조의5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나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2.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 제2호	등록 취소			
자연재해대책법	라.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법 제42조제1항제4호	업무	등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정지 6월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0)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 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0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7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0)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21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 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 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	지정			

8. 명의대여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36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5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나. 1회 대여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년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3)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제4호·제36조제4호	영업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취소		
토양환경보전법	(10) 법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법 제23조의6	업무	지정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12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2항제2호	정지 6개월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5) 법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법 제23조의10 제2항제2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1)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7) 법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 정지6 개월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영업 정지6 개월	등록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다.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 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법 제18조제5항	영업	등록		

8. 명의대여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하계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정지 6월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④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0조 제1항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건축사법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 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한 때  제10조 (자격증등의 부당행사금지<개정 2000.1.28>) 건축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대여하거 나 부당하게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2000.1.28>  제19조 (업무내용) ①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제11조 제3호	자격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lt;개정 1977.12.31, 1995.1.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li> <li>2.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li> <li>3.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기준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li> <li>4. 기타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li> </ol>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b>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b></p> <p>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제35조 제1항 제2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b>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b></p> <p>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p>	제38조 제1항 제6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통안전법	<b>4.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b>  제42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제4호	등록취소
물류정책기본법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	제39조 제4호	인증취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b>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b>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제4호	등록취소
주차장법	<b>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b>	제19조의8 제2호	인증취소
측량법	<b>3의2.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b>	제6조의 7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p> <p>제6조의5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의 대여금지 등) ①성능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1항 제3의 2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주세법	<p>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3.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주세법	<p>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4.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공인노무사법	<p>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lt;개정 2007.12.21&gt;</p>	제20조 (징계) 제1항 제10호, 제11호	징계처분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년 이하의 자격정지</li> <li>2. 등록취소</li> <li>3. 6개월 이하의 직무정지</li> <li>4. 견책(견책)</li> <li>10. 제20조의2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li> </ol> <p>제20조의2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07.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li> </ol>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p>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자격 취소 3년 이내 자격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1항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노동부장관은 과건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과건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과건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과건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허가 취소 6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문화재보호법	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제20조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③ 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23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p>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b></p> <p>제27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28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p>	제28조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b>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b>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 9 조 (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공중위생관리법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제7조 제3호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6월
식품위생법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제63조 제1항 제3호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위생사에 관한 법률	2. 면허증을 대여한 때	제7조 제2호	면허취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	제21조 제1항 제3호	면허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허증을 대여한 때 제 9 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③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의료법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제65조 제5호	면허취소
장애인 복지법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제72조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76조 제1호	자격취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지도사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53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도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제 9 조 (양도 등의 제한) 제작업자·수리업자·수입업자 및 계량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제3호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3.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4.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 증인(증인)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6. 변조된 것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b>5.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때</b> 제38조 (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안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제1항 제5호	6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 제1호	설정등록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단,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2007.4.27&gt;</p> <p><b>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b></p> <p>제 3 조 (외국인의 배치설계) ①외국인 및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p>		필수적 청문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p><b>3.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2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b></p> <p>제2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제23조 제3호	(취소할 수 있다. 단, 필수적 청문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b>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지식경제</b></p>	제26조 제4호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b>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b></p> <p>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li> <li>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li> </ol>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p><b>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b></p>	제37조 제1항 제2호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허가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10. 제2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p> <p>제28조 (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p>	제32조 제1항 제10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8. 명의대여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먹는물 관리법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수도법	<p>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p> <p>제2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④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25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소음·진동규제법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43조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제64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관한 법률			6월
토양환경보전법	2. 제2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6 제2항 제2호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토양환경보전법	2. 제23조의9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때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의10 제2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폐기물관리법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7조 제2항 제7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5조 (폐기물처리업)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하수도법	<p>7.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p> <p>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①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p>	제49조 제7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하수도법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13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⑤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제1항 제3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검사대행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④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측정대행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0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환경측정분석사)

9. 일괄 하도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④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6. 제3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제37조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제2항 제6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9. 일괄 하도급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5. 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가. 하도급기간이 1월이하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보완명령			
	第11條의5 (補修下都給의 제한) 補修業者는 그가 契約을 맺은 昇降機의 補修業務를 다른 補修業者들에게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의 서면동의(補修業者가 管理主體를 겸하는 경우에는 所有者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の 서면동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도급기간이 1월초과 6월미만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300만원			
		다. 하도급기간이 6월이상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라.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건설폐기물의	(12)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영업	영업	허가	



9. 일괄 하도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p>물의 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때</p> <p>제23조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①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p> <p>②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 취소·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p>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4) 법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을 한 경우	법 제19조	경고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1.3, 2008.3.21&gt;</p> <p>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을 한 경우</p>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p>					

9. 일괄 하도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으로 본다. &lt;개정 2007.5.17&gt;</p> <p>③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p>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p>(6) 법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p> <p>②토양정화업자는 도급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p>	법 제23조의10 제2항제3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6)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6 개월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5) 도급받은 방지시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7.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b></p> <p>제20조 (수리기술자자격증 등) ③ 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p>	제23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제28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p> <p>제27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 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문화재보호법	<p>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8.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자격증 또는 수리기능자자격증을 대여 받아서 사용한 경우</p>	제28조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먹는물 관리법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토양환경보전법	3. 제23조의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제23조의10 제2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②토양정화업자는 도급 받은 토양정화를 위한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수도법	5.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설계·시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환경영향평가법	6. 제3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제37조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② 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제2항 제6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0. 고의 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 한 사고를 일으킨 때	가. 인 명피해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중상· 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때	법 제28조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2) 과실로 3명 이상을 사망하 게 한 때 3) 과실로 7명 이상에게 중상 을 입힌 때 4) 과실로 19명 이상에게 경상 을 입힌 때	법 제28조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5) 기타 인명피해 를 입힌 때	법 제28조)	면허 효력 정지 45일			
			①사망 1명마다					
			②중상 1명마다		면허 효력 정지 15일			
			③경상 1명마다		면허 효력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5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나. 재산피해	1) 피해금액 10만원마다		법 제28조	면허 효력 정지 1일  (90일 을 넘지 못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다.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때				법 제28조	면허 효력 정지 180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영업 정지 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법 제82조제2항제5호	영업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 6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정지 1년 또는 과징 금 5억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	다.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54조 제1항제3호	자격 정지 (30일)	자격 정지 (60일)	자격 취소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별표6	다. 고의로 수로조사 또는 해도제작을 부정확하게 한 때	법 제30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마.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법 제13조 제1항제5호	면허 정지 6월	면허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사.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7호	면허정 지 6월	면허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다.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고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중과실로	법 제51 조	정지 1월	정지 2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람을 죽게 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제3호			
	중과실로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법 제51조 제3호	경고	정지 1월	정지 2월	등록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8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자격 취소			
		나. 손해를 가하여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정지 3년			
		다. 손해를 가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 정지 3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0.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49조관련)	마. 안전·보건진단 업무에 차질을 초래 한 때	(1)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자가 진단업 무를 수행한 때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4. 수의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1호	면허 효력 정지 6월	면허 효력 정지 9월	면허 효력 정지 12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다. 당해 양곡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 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 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 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법 제9조의2	3개월	6개월	1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1) 고의가 있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영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第12條 (米穀등의 輸入許可등) ①『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原料로 한 粉碎物·粉末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糧穀(이하 “許可對象米穀등”이라 한다)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사용용도 등을 명시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7.8.3>	(2) 과실인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경고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②양허세율로 許可對象米穀등이 아닌 糧穀을 輸入하거나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糧穀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6. 8.8, 2007.8.3, 2008.2.29&gt;</p> <p>③농림수산물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糧穀의 輸出 또는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推薦物量· 推薦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한다. &lt;개정 1996. 8.8, 2008.2.29&gt;</p> <p>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外國援助機關 또는 外國의 民間援助團體가 제공하는 許可 또는 推薦對象인 糧穀의 輸入을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물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하며, 그 協議를 거쳐 輸入認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나.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第13條 (輸入糧穀의 관리등) 농림수산식품 부 장관은 糧穀의 需給調節과 輸入糧穀의 관 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 한 許可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 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 적용을 받아 糧 穀을 輸入하는 者나 輸入된 당해 糧穀을 販 賣 또는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사항은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の 賦 課·徵收 對象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 996.8.8, 2000.12.29, 2008.2.29> 1. 輸入糧穀의 販賣價格·방법 및 시기 2. 輸入糧穀의 用途制限 3. 輸入糧穀의 使用量 및 在庫量에 관한 보고	(1) 고의가 있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영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2) 과실인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3. 허위 표시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인증 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법 제18조 제1항제1호	국내:	국내:	국내: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등록한 경우		영업 정지 3월 국제: 등록 취소	영업정 지 6월	영업정 지 1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6.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 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제16호	국내: 영업 정지 3월 국제: 등록 취소	국내: 영업정 지 6월	국내: 영업정 지 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8]	4.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제22조 (미수금의 대불)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법 제55조제2항제2호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2월	업무 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미치게 한 때	법 제9조제1항제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 취소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라.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법 제30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	마.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법 제30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p>라.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고의로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p> <p>제20조 (시판품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p>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p>④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2	<p>마.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품질 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한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4호</p>	<p>업무 정지 3개월</p>	<p>업무 정지 6개월</p>	<p>지정 취소</p>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1	<p>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제15조 (제품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p> <p>제16조 (서비스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p>	<p>법 제18조제3항제3호</p>	<p>자격 취소</p>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때 - 석유정제업자  제27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된 제품을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11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	등록 취소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11호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0)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11)에 해당한 때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법 제13조제2항제7호	해당 사업	해당 사업장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 석유수출입업자	행위를 한 때		장의 사업 정지 3월	의 사업 정지 6월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	법 제13조제2항제7호	경 고	해당 사업장 의 사업 정지 3월	해당 사업장 의 사업 정지 6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1)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11) 에 해당하는 때 - 석유판매업자	(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한 때	법 제13조제3항제8호	해당 사업 장의 사업 정지 3월	해당 사업장 의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때		경 고	해당 사업장 의	해당 사업장 의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9)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8호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지정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때	법 제28조제2항제2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승인 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가.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 (危害)를 끼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 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8호	사업 정지 또는	사업 정지 또는	사업정 지 또는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한 3일	제한 20일	제한 60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바. 방재안전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안전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2)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 가동 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측정항목별 상태표시(보수중, 동작불량 등) 또는 전송장비별 상태표시(전원단절, 비정상)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1주 동안 연속하여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제32조 ③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36조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3)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32조 ③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73조	업무 정지 6일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2호	지정 취소			
소음·진동규제법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	법 제45조	영업	영업	지정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1	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제5항제4호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취소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5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자격 취소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자격 정지 3년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자격 정지 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2)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3)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7)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허가 취소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25) 자동측정기기의 고장을 방치하거나 측정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법 제64조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9조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지정 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다.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면허 취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7조제6호·제36조 제6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때	법 제23조의6 제2항제4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때	법 제23조의6 제3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20일	업무 정지 3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13조 (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4.12.31&gt;</p> <p>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다수의 저장시설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법 제23조의6 제2항제3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바.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40조제3항 제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사.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관리대행하는 사업장이 20일 이상의 조업 정지처분을 받은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 제4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8)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영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6)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지정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정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0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측정대행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1항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고등교육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제1항 제1호	학교 폐쇄 명령
초·중등교육법	①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	제65조	학교 폐쇄 명령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등의 폐쇄) 제1항 제1호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 2 조 (최고가격의 지정등) ①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의2 (과징금)	과징금
외국환거래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취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⑥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	제60조 (감독)	면직·정직·감봉·견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계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60조 (감독)①금융위원회는 공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p> <p>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p>		
선박직원법	<p>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p>	제9조 집행 제3호	면허취소, 업무정지
관광진흥법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제35조 제1항	승인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b>20.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b>	제11호	전부·일부 정지 개선명령
노인복지법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제41조 (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제41조 (수탁의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	제43조 제2항 제2호	사업정지 또는 폐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제1항 제3호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거.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①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	제44조 제1항 제1호 거목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업무소소재지·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성명·성별·연령·병명 및 교부연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2.12.26&gt;</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장애인복지법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제77조 제1호	자격정지 6월
청소년활동진흥법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제36조의3 제1항 제3호	인증취소 또는 인증정지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b>5.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b>	제53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시설설치자가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	제18조 제1항 제4호	허가취소

10. 고의 중과실로 부실 업무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먹는물 관리법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6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 관리법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제43조 제6항 제2호	지정취소
수도법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잘못으로 수도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제25조 제1항 제3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년
소음·진동 규제법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제43조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소음·진동 규제법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제45조 제5항 제4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제64조 제2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야생동·식물보호법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9조 제1항 제3호	면허취소
토양환경보전법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제14조제	제23조의6 제2항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대상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때</p> <p>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lt;개정 2004.12.31&gt;)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p>	<p>제4호</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4.12.31&gt;</p> <p>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p> <p>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4.12.31&gt;</p> <p>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①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에 의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적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p>		
<p>토양환경보전법</p>	<p>1. 제15조의6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때</p> <p>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①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에 의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적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와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p> <p>②오염원인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p>	<p>제23조의6 제3항 제1호</p>	<p>업무정지 6월</p>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도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도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하는 경우 오염원인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14조 제1항 제4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검사대행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측정대행업)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 비고 제2호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단독 또는 다른 비파괴검사업자와 함께 비파괴검사의 계약과정에 참가하거나 자신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장비를 다른 비파괴검사업자에게 파견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개정 2007.4.6>)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법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p> <p>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p> <p>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p>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법 제9조제1항제8호	업무정지 6월	면허취소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5. 사업정지기간 중에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법 제16조제1항 제11호		사업정지 90일	허가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6	나. 조종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 조종을 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국가기술자격법	3.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	법	자격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18	기간 내에 동자격이 법령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에서 동 국가기술자격증을 사용함으로써 공익 또는 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5)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 취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3호	면허취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30.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자.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을 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12호	등록취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14. 영업의 전부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23조제5호	등록취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15. 영업의 일부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23조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2월	등록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을 한 경우	법 제16조제3항제2호	등록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3. 자격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제3호	자격취소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라.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	-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2. 수의사가 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수의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32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차. 영업을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0호	등록취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第16條 (營業閉鎖等) ①市長・郡守는 人蔘類製造와 관련하여 人蔘類製造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營業의 閉鎖를 命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營業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영업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007.7.13>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한 때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方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3.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基準을 위반한 때 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 6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4	5.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3제1항 제5호	지정 취소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2차	3차	1차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위반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8.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조제1항제4 호	경고	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9.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법 제11조제1항제4 호	경고	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3	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기간 만료 전 원양어업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때	법 제11조제1항제4 호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9. 영업정지 기간에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 및 법 제63조	폐쇄					
	12. 안마사 자격정지 기간에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2	자격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행한 때	법 제28조제1항제2 호	지정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p>7. 법 제12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때</p> <p>第12條 (補修業의 登錄의 取消등) ①시·도지사는 補修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2.5, 2002.2.4, 2004.12.31, 2007.1.3&gt;</p> <p>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4. 第11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第11條의2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任命한 경우를 제외한다.</p>	법 제12조제1항제8 호			등록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5.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 6. 第11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業務를 下都給한 경우 7. 補修의 欠으로 인하여 昇降機의 利用者를 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7의2. 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 보수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8.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2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보수업을 한 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의4	5.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업무 행한 때  제15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3, 2008.1.17, 2008.2.29>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의2.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법 제5조의 2제2호	지정취소			
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2호	허가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36. 법 제1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학원의 운영행위를 계속하는 때	법 제113조 제4항	등록 취소			
	제113조 (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4항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6.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8. 제10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p> <p>9.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p> <p>10.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11.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p> <p>12.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p> <p>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li> <li>2.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li> <li>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li> <li>4. 제10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li> <li>5. 제10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때</li> <li>6. 제10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li> </ol>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p> <p>7.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p> <p>8. 제10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p> <p>9. 제10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p> <p>10. 삭제 &lt;2006.4.28&gt;</p>						
<p>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p>	<p>다.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p> <p>제17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의 수행을 계속</p>	<p>법 제16조제1항제3호</p>	<p>등록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감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정보시스템 감리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리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감리법인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7. 행정 처분 기간중 계속 조업	법 제45조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영업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제32조제1항제 3호	허가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영업 정지 기간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 정지기 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 호	허가 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25조 (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24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p> <p>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p> <p>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p>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 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정지	폐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2조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 정지기간중에 조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정지	폐쇄 명령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법 제18조제6항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4)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 정지기간중에 조업을 한 경우  제18조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6항	조업 정지	폐쇄 명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6	11)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 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제34조 (조업 정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	법 제36조	경 고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부에 대하여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li> <li>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li> </ol>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 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6)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	법 제36조	허가 취소 또는 폐쇄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기를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p> <p>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p> <p>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p> <p>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9) 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9호	등록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업무 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3호	지정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20)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 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5)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 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제16조 (조업 정지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법 제17조	조업 정지(조업 정지기간 중 조업한 기간)	폐쇄, 허가 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구분하여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li> <li>2.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li> <li>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li> <li>5.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7.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마) 영업 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장 폐쇄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8)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조의6제4항,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 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 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조의6 제4항, 법 제42조제1항제12호	조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8) 법 제42조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 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 정지	허가 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20) 영업 정지처분기간 중에 폐수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 정지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정지	폐쇄명령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4) 영업 정지처분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마.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15) 업무 정지처분기간 중에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때	법 제23조의6 제2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5)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4)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8)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영업 정지기간 중에	법	등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15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제54조제1항제8호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마. 업무 정지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3항제4호	지정 취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11) 업무 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영향평가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8호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9) 영업 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5항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8)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7호	지정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제24조 (폐쇄조치등)	영업소 폐쇄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을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시물의 제거 삭제</li> <li>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li> <li>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li> </ol> <p>제 4 조 (허가등) ①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을 대상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 1997.12.13, 1999.3.31, 2008.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7 조 (허가의 유효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3조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등) ①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인력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 1999.3.31, 2008.2.29&gt;</p> <p>②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 1999.3.31, 2008.2.29&gt;</p> <p>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p>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가를 받아야 한다.</p>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p>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2호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b>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b></p> <p>제36조 (자격의 정지)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p> <p>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p> <p>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p>	제35조 제1항 제3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교통안전법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	제43조 제5호	등록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b>로이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b>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b>5.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b>	제25조 제5호	등록취소
측량법	<b>4. 업무정지기간중에 계속하여 업무를 한 때</b>	제6조의 7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관세사법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등록 취소
관세사법	20조 3.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등록취소
상호저축은행법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5.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제24조 (행정처분)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제24조 (행정처분)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취소
세무사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제16조의15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및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p>	(등록취소 등)	
신용협동조합법	<p>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p>	제85조 (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및 취소
외국환거래법	<p>①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기간 중에 그 업무를 한 경우</p> <p>제12조 (인가의 취소 등)②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p>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자금융거래법	<p>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p>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취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p>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3. 영업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경우</p> <p>제 3 조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①이 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9.5.24, 2008.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회사일 것</li> <li>2.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li> <li>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li> </ol>	제18조 (인가취소등)	6월 이내 영업정지 및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제19조 (폐쇄조치등) ①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과건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p>	<p>제19조 (폐쇄조치등) 제1항</p>	<p>폐쇄조치</p>
<p>농어촌정비법</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8.3, 2008.2.29&gt;</p> <p>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제47조 제1항 제2호</p>	<p>등록취소</p>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도선법	8. 업무정지 기간 중에 도선업무를 행한 때	제9조 제8호	면허 취소
선박선원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	제9조 제1항 제5호	면허취소, 업무정지
선박평형수관리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26조 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선주상호보험조합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3. 사업의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때	제54조 제1항 제3호	취소
모자보건법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 중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제15조의 9 제2항 제1호	사업장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p>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p> <p>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2002.8.26, 2005.1.27, 2005.12.23, 2006.9.27, 2007.12.21&gt;</p> <p>1.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p>	제58조 제2항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후단·제4항·제5항 후단 및 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29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p> <p>3.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p> <p>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때</p> <p>4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p> <p>4의3.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p> <p>5. 제55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6조의2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5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p> <p>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p>	<p>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p>	<p>제21조 제1항 제4호</p>	<p>면허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2조 (자격의 정지)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lt;개정 1997.12.13,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li> <li>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li> <li>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li> </ol>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li> </ol>	제24조 제4호	영업정지6월 또는 등록취소
인체조직안전및관리 등에관한법률	<p>조직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때</p> <p>제25조 (허가취소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직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인력·</li> </ol>	제25조 제2항	허가취소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제32조 제3항	영업장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70조 제2호	영업장 폐쇄
장애인복지법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7조 (자격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6조 제3호	자격취소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5조 (보수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보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청소년활동진흥법	<p>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때</p> <p>제36조의3 (인증의 취소 등) ①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li> <li>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li> </ol>	제36조의3 제2항	인증취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1조 제2항 제2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계량에 관한 법률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때	제22조 제1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자  제 6 조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8조 제2호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제24조 제1항 제2호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제24조 제2항 제2호	승인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염관리법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제10조의2 제2호	지정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염관리법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23조 제2호	허가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사항)
경비업법	<b>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b>	제19조 제11호	허가취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b>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b>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제13조 제2항 제4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할 수 있다.)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p> <p>2.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신탁업법	<p><b>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할 때</b></p> <p>제28조 (업무의 정지)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가 법령·정관 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지시등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 [전문개정 1999.5.24]</p>	제29조의2 제2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32조 제1항 제3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관리법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9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먹는물관리법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43조 제6항 제3호	지정취소
먹는물관리법	②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	제48조 제2항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쇄를 명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p>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제14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제21조 제2항	사업장 폐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4.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64조 제2항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34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토양환경보전법	5.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때	제23조의6 제2항 제5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폐기물관리법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제27조 제1항 제5호	허가취소
하수도법	1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49조 제14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8.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영업을 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9.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54조 제1항 제9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8. 제조정지기간 중에 제조행위를 한 때	제8조 제1항 제18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6. 제조정지기간 중에 제조행위를 한 때	제8조의 2 제1항 제16호	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
화학·생물무기의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8조의2 제1항	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 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다시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p> <p>제8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때</li> <li>2.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li> <li>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li> <li>4.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li> </ol>	<p>제17호</p>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를 하지 아니한 때</p> <p>5.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p> <p>6.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7. 제1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때</p> <p>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p> <p>9.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1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p> <p>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12.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p> <p>13.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제14조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검사대행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8. 업무정지기간 중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제14조 제1항 제8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검사대행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측정대행업)
환경영향평가법	3.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9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환경영향평가법	4. 업무정지 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제39조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	제24조 (폐쇄조치등) 제1항	영업소 폐쇄



1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삭제</li> <li>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li> <li>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li> </ol> <p>제 4 조 (허가등) ①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 1997.12.13, 1999.3.31, 2008.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 (허가의 유효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3조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등) ①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인력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 1999.3.31, 2008.2.29&gt;</p> <p>②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 1999.3.31, 2008.2.29&gt;</p> <p>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7.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11. 법 제21조제1항 위반 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기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1]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 정지 15일	사업폐지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 정지 15일	사업폐지
			경 고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폐지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 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 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 고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폐지	
	3.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 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8에 따른 노		경 고	경 고	사업	사업폐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지 7일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 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경 고	사업 정지 7일	사업폐지
	5.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 고	사업 정지 5일	사업 정지 10일	
	6. 감독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2조 (감독) ①복지시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법 제42조	경 고	사업 정지 10일	사업 정지 20일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9.2.8, 2007.8.3&gt;</p> <p>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1999.2.8, 2008.2.29&gt;</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7. 비용의 수납위반</p> <p>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p> <p>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p>	<p>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p>	경 고	사업 정지 5일	사업 정지 10일	사업폐지
			경 고	사업 정지	사업 정지	사업폐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5일	10일	
	8.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 제39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29조의3제3항)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고	지정취소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경고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	법 제37조제1항제5호	경 고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li> <li>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li> </ol> <p>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61조 (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요양보험가입자</li> <li>2. 피부양자</li> <li>3. 의료급여수급권자</li> </ol> <p>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p> <p>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p>	<p>법 제37조제1항제6 호</p>	<p>경 고</p>	<p>지정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방입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 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여수급권자</p> <p>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p> <p>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61조 (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장기요양보험가입자</p> <p>2. 피부양자</p> <p>3. 의료급여수급권자</p> <p>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장기요양기관</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고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폐쇄 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	법 제40조제1항제2	시설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립허가가 취소된 때	호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제1항제3호	시설폐쇄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 설 장 교 체	시 설 장 교 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개선명령	시 설 장 교 체	시 설 장 교 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 설 장 교 체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		개선명령	시 설 장 교 체	시 설 장 교 체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개선명령	시 설 장 교 체	시 설 장 교 체	
		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 설 장 교 체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4]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1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맞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는 위원이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5.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때		취 소			
	6.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킨 때		취 소			
	7.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취 소			
	8.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때		취 소			
	9.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때		취 소			
	10. 법 제13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취 소			
	1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13.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14.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5.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	
	16. 법 제17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난 이후에 잔여배아를 연구한 때 또는 법 제17조 각 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한 때		취 소			
	17. 법 제17조 단서 규정을 위반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계획서를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구한 때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19.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20.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취 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외에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한 때					
	2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2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23.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24.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기관등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 나. 법 제26조제5항의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경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 동의를 받기 전에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때			1월	3월	
	25.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검사 대상물을 제공한 때,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검사대상물을 제공받은 자가 검사대상물에 개인정보를 포함시킨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26.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27. 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기관등이 보존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 검사대상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나. 법 제28조제3항 및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대상물 보관 중 검사대상자로부터 검사대상물 폐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또는 이관하지 아니한 때		1월	3월	6월	
	28.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서 등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동의서등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요구를 응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29.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30.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의 제공 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32. 법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용한 때					
	3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를 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3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자·난자·배아 또는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35. 법 제3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36.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환자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7. 법 제21조, 제30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제1항 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38. 법 제38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제1항 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39.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에 불응한 때	법 제41조제1항제4 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취 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4. 제6조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 6 조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 법 제63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6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1~3개월	영업정지 4~6개월	폐쇄
	13.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시술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자격정지 3~4개월	자격정지 5~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66조제1항제2호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2.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5조 및 법 제79조제1항	면허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8]	1.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8]	2.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하여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8]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을 거부한 때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1.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 5 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5.3.31&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2.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성명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p> <p>제 6 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 ①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p> <p>②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 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3.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 7 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p> <p>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p> <p>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p> <p>5. 재화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p> <p>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p> <p>7. 재화등의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p> <p>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등의 설치·전송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p> <p>9. 소비자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p> <p>10. 거래에 관한 약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②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4.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 9 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②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③방문판매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자등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방문판매자등은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⑥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p> <p>⑦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⑧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⑨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방문판매자등,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7.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등) ①방문판매자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8.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p> <p>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p> <p>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p> <p>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p> <p>5. 채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p> <p>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을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10.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다단계판매의 상대방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소비자를 말한다.</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②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이 신용카드등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어 상대방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p> <p>⑤결제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자와 결제업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상대방을 약정한</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처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5.1.27&gt;</p> <p>⑥다단계판매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⑦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재화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당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⑧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p> <p>⑨다단계판매자,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1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지급기준과 달리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후원수당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자</p> <p>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지급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p> <p>③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p> <p>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p> <p>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p> <p>④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p> <p>⑤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후원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7.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약철회등과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처리를 계속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25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p> <p>②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 당시 판매하지 못한 재화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의 철회등에 따라 반환되는 재화등을 반환 받고,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19.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환급을 거부한 자</p> <p>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래업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p> <p>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위약금의 청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2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인증업무를 수행한 자</p> <p>제3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①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에 관한 기준·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제79조 (비용의 분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법 제82조제1항제2 호	영업정지 4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법 제82조제1항제3 호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법 제82조제1항제5	영업정지 1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호나목	또는 과징금 1,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	법 제82조제1항제5 호 다목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lt;개정 2001.1.16, 2004.12.31&gt;</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p>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p> <p>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p>	<p>법 제82조제1항제5 호 라목</p>	<p>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 호	영업정지 5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 호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4,000만원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 호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 호	영업정지 8월 또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과징금 3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 호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2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 호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 제5호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	영 또는 업 과징	30%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금 5000 만원 까지	24%			
		정 지 8 월	또는 과징 금 1억 원				
			또는 과징 금 5억 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	법	영 또는	24%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6	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제82조제2항제2호	업 정 지 6 월	과징 금 5000 만원 까지	18%		
				또는 과징 금 1억 원			
				또는 과징 금 5억 원			
				또는 과징 금 30억 원이	6%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 다)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 호	영 업 정 지 6 월	상 또는 과징 금 5000 만원 까지	24%			
				또는 과징 금 1억 원				18%
				또는 과징 금 5억 원				
				또는 과징 금 30억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원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까지	16%		
				또는 과징금 1억원			
				또는 과징금 5억원	8%		
				또는 과징금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0억 원이 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 호	영 업 정 지 4월	또는 과징 금 5000 만원 까지	16%		
				또는 과징 금 1억 원	12%		
				또는 과징 금 5억 원	8%		
				또는 과징	4%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금 30억 원이 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3 호	영 업 정 지 2월	또는 과징 금 5000 만원 까지	8%		
				또는 과징 금 1억 원	6%		
				또는 과징 금 5억 원	4%		
				또는	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과징 금 30억 원이 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4 호	영 업 정 지 6월	또는 과징 금 5000 만원 까지	24%			
				또는 과징 금 1억 원				18%
				또는 과징 금 5억 원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과징 금 30억 원이 상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①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법 제99조제7호	과징금 300만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6조 (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①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5 호	영업정지 2개월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4.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21조 (지도·감독)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	법 제19조제1항제7 호	영업정지 2개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	6.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등)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2개월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5. 법 제18조제2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제18조 (도선)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5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6. 법 제18조의2에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제18조의2 (차별도선금지) 도선사는 도선의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출항순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차별도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때  제 4 조 (사업면허등)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 제19조제1항제2 호	사업정지 60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4.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하거나 휴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제 4 조 (사업면허등) ④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4 호	사업정지 60일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때  제15조 (건설과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7 호	사업정지 60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8.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5조의2 (운임의 신고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8 호	사업정지 30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10	사업정지 6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8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등 협의)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때  제15조 (사업의 휴업·폐업)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취소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1. 허가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한이 경과된 때	법 제16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2	3. 기준에 미달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를 판매한 때	법 제110조제9항제3	형식승인 취소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38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바. 수상레저기구를 부실하게 제조 또는 정비한 때	법 제46조 제4항제6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인증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경 고	시정명령	훈련정지1개월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나.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대표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을 변경한 때				훈련정지2개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2월	등록취소		
			사업정지1월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조합원외의 자를 공급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 가 취 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5.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 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제1항제2 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 정 취 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6. 건강진단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제24조제1항제3 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 정 취 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7. 제21조에 따른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 결과 불합격한 경우	제24조제1항제4 호	정도관리 합격 때까지 업무정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때		경 고	영업정지 3월	허 가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0					취소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8)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건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21)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7.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42조관련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행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7.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42조관련)	사.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측정할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 (법 제43조관련)	(1)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 무 정 지 6월		
		라.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 무 정 지 6월	
		(3)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 무 정 지 6월		
	마. 건강진단 비용기준을 준수하지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지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니한 때				6월	정 취 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기상법	<p>②기상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 (기상사업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li> </ol>	<p>제27조 (기상사업의 결격사유) 제2항</p>	기상사업자 등록 효력 상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5.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4.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지산자·한정치산자</li> <li>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li> </ol>	<p>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4호</p>	<p>등록 취소</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과과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p>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1.1.16, 2008.2.29&gt;</p> <p>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제1항 제4호	운영 허가 취소, 1년 이내 운영 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 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1986.5.12, 2005.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원자력법	<p>①핵연료주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허가를, 주무부장관은 그 지정을 각각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86.5.12, 1995.1.5, 1996.12.30, 1999.2.8, 2008.2.29&gt;</p> <p>4.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46조 (허가등의 취소등) 제1항 제4호	허가, 지정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 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1986.5.12, 2005.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원자력법	<p>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86.5.12, 1995.1.5, 1999.2.8,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p>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p>	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개정 1995.1.5>) 제3호	허가 취소, 1년 이내 업무 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1986.5.12, 2005.3.31&gt;</p> <p>1. 금지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하거나 사용금지(신고사용자에 한한다)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1999.2.8, 2001.1.16, 2008.2.29&gt;</p> <p>4. 제65조제6항 및 제6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8조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lt;개정 1999.2.8, 2001.1.16&gt; 제1항 제4호</p>	<p>허가 등록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사용금지 명령</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 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1986.5.12, 2005.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99.2.8,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ol> <p>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p>	<p>제79조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의 취소등) 제1항 제4호</p>	<p>허가 취소, 1년 이내 사업 정지 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1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1986.5.12, 2005.3.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지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원자력법	<p>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2. 제92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제9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1986.5.12, 1995.1.5, 2005.3.31&gt;</p>	제93조(면허의 취소등) 제1항 제2호	면허 취소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5.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노인복지법	1. 제33조제3항· 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제1항 제1호	사업정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노인복지법	<p>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p>	제43조 제2항 제1호	사업정지 또는 폐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p>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p>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p> <p>제42조 (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응급처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2.3.25, 2008.2.29&gt;</p> <p>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에</p>	제55조 제1항 제5호	면허 또는 자격 취소 면허 또는 자격 정지 6월 (응급의료종사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lt;개정 2007.4.11, 2008.2.29&gt;</p>		
<p>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p>	<p>2.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장기등이 아닌 장기등에 대한 등록업무를 한 때</p> <p>제12조 (장기이식등록기관) ①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 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기관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등의 종류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제30조 제1항 제2호</p>	<p>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1년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2항</p>	<p>과징금</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p> <p>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호</p>	<p>과징금</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p>	<p>제10조 (가맹금의 반환) 제1호</p>	<p>과징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경우</p> <p>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1. 가맹계약의 체결일</p> <p>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p> <p>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호</p>	<p>과징금</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li> <li>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li> <li>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li> <li>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li> <li>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li> <li>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li> <li>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li> <li>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li> <li>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li> <li>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li> <li>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③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제5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과징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③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제2항 제7호	등록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8.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8조 제2항 제8호	등록취소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p>		
<p>교통안전법</p>	<p><b>7.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b></p>	<p>제43조 제7호</p>	<p>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의 정지</p>
<p>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p> <p>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실시계획대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p> <p>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p> <p>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p> <p>② 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p>	<p>제1항 제1호</p>	<p>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일부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도청이 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계획의 명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li> <li>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li> <li>3.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li> <li>4.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li> <li>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li> <li>6.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복지 및 가족친화시</li> </ol>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설의 설치계획</p> <p>7.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p> <p>8.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p> <p>9.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③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7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p>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li> <li>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li> <li>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li> <li>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li> <li>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체결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li> <li>6.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li> <li>7.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p> <p>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b>나.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b></p> <p>제20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b>다. 제22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b>                      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할 경우 공급절차 및 공급기준 등은『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 당해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른다.</p> <p><b>라. 제23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b>                      제23조 (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마. 제24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b>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p>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b>바.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b></p> <p>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보존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b>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b></p> <p>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자동차관리법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제21조 제2항 제1호	지정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사업정지
전파법	<p>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 및 전파형식 등의 무선국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p> <p>제28조 (조난통신 등) 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에 따라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p>	제72조 제1항 제10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전파법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제72조 제1항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호	
전파법	1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한 경우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제1항 제12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전파법	1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제1항 제13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전파법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 (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공중선	제72조 제1항 제14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전파법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제72조 제1항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호	
전파법	16.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개정 2008.6.13>) ① 시설자는 무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 제1항 제16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전파법	1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6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	제72조 제1항 제17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12. 업무처리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 제22조제1항 또는 제26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24조 및 제26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4.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에 따른 전자과적합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는 자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		
전파법	18.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제1항 제18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전파법	19. 제70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72조 제1항 제19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파법	<p>20. 제71조를 위반하여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선국에 배치한 경우</p> <p>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ol>	제72조 제1항 제20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13. 허가·지정·등록 결격사유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4.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1. 개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3조제3항	폐쇄			
	2. 폐업·휴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5호	경고 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 5 조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		법 제5조 및 법 제79조제1항	면허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16.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법 제31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경우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위탁제조판매업소 또는 제조소(제조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제6항	영업허가 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9.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의무를 위반한 자  제15조 (다단계판매원) ①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p> <p>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p> <p>1의2. 미성년자.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p> <p>2. 법인</p> <p>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p> <p>4.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p> <p>③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고, 소비자피해의 방지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여야 한다.</p> <p>⑤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li> <li>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li> <li>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li> <li>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li> <li>5.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p>	<p>6.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된 때</p> <p>제28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때</p> <p>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p> <p>3.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p> <p>5.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p>	<p>법 제28조</p>	<p>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p>	<p>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p> <p>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p> <p>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8. 법 제28조제6호에 해당된 때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 때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취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p>	<p>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p> <p>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3.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영업정지 6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법 제54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자	행유에 신고를 받고 그 유효기간 중에 있는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법 제54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법 제9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2	4. 법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제 6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선사가 될 수 없다.		법 제9조제1항 제4호	면허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자 또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바. 수로사업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법	등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6	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를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나.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	법 제46조 제4항제2호	인증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다.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	법 제46조 제4항제3호	인증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마. 당해 사업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때	법 제46조 제4항제5호	정지1월	정지3월	정지6월	인증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3	<p>나.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제40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p> <p>2. 금고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p>	법 제51조 제2호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나. 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라.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폐쇄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4호	인증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법 제28조제1항 각호(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법 제28조제1항제1	법 제31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6개월	
			경고	시정명령	훈련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3.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4)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36조 제1항	경 고	유료:등록 취소 무료:사업 정지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4.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가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관련)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산업안전보건법	7.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42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 정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0	조관련)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3월	6월	취 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나.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9. 유해·위험작업 자격취득 등 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관련)	나. 『유해·위험작업의 취 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0.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 49조관련)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개별소비세법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납부) ⑤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 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1999.12.3, 2007.12.31>		
관세법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3.24>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6월의 업무정지
관세법	3. 당해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 달성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6월의 업무정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지정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lt;개정 2005.1.27&gt;</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	<p>①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2.12.11&gt;</p> <p>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p> <p>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④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p>	<p>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p>	<p>지정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p>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1.3.28, 2008.2.29&gt;</p> <p>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제10조 (인가사항) ①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0.1.28, 2001.3.28, 2008.2.29&gt;</p> <p>1. 해산·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양도 또는 양수 6. 자본금의 감소</p>	제24조 (행정처분)	6월이내 영업정지 및 취소
세무사법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제6조 (등록)	등록거부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008.2.29&gt;</p> <p>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p> <p>제 4 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lt;개정 1978.12.5, 1989.12.30, 1995.12.6, 1999.12.31, 2002.12.30, 2003.12.31, 2005.3.31&gt;</p> <p>1. 미성년자</p> <p>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p> <p>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p> <p>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중에 있는 자</p> <p>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8.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세무사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6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세무법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6 (자본금 등) ①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의5 (사원 등) ①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	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	1년 이내 업무 정미 및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p> <p>②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원이 아닌 자</li> <li>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li> <li>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li> </ol> <p>③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p>		
외국환거래법	<p>①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li> </ol>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취소
전자금융거래법	<p>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li> </ol>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2조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li>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li> <li>4.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li> <li>5.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li> </ol>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p>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p> <p>금융위원회는 채권유동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제 3 조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 ①이 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9.5.24, 2008.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주식회사일 것</p> <p>2.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일 것</p> <p>3.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제18조 (인가취소등)	6월 이내 영업정지 및 취소
주세법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면허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중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6.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제자로서 무능력자인 경우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건축사법	<b>2. 제9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b> 제 9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1984.12.31, 1995.1.5, 2000.1.28, 2001.8.14, 2007.12.21>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 제2호	자격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b>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b>	제35조 제1항 제4호	자격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b>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제11호·제12호의</b>	제38조 제1항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p> <p>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제3호	다만, 사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 등록취소 해당 안 됨
교통안전법	3.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제43조 제3호	등록취소 다만, 임원이 이에 해당하여 개입한 경우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5.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li> </ol>		<p>해당 안 됨.</p>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4항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	제31조 제2호	지정취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	제25조 제2호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유예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6 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5.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p> <p>7.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p>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p><b>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b></p> <p>제 4 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 2008.3.21&gt;</p>	제25조 제2항 제1호	등록취소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시적 등록미달 적용제외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국가·지방자치단체</p> <p>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p> <p>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p> <p>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자동차관리법	<p>제21조 (등록번호관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lt;개정 1999.4.15&gt;) ②시·도지사는 등록번호관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b>3. 자산상태불량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b></p>	제21조 제2항 제3호	지정취소 또는 6월이내의 사업정지
주차장법	<p><b>3.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b></p> <p>제19조의7 (안전도인증서의 교부 &lt;개정 2003.12.31&gt;)</p> <p>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p>	제19조의8 제2호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2.8, 2003.12.31, 2008.2.29&gt; ② 삭제 &lt;2003.12.31&gt; [본조신설 1995.12.29]</p>		
주차장법	<p><b>1. 제1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b>                      제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p> <p><b>2. 제1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b>                      제19조의16 (보험가입) ①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제19조의18 제1호	시정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측량법	<p><b>3. 제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b>                      제6조의4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lt;개정 2006.12.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5. 제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0.1.28]</li> </ol>	제6조의 7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측량법	<p><b>4.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b></p>	제6조의 7 제4항 제4호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6조의3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기술능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2.20, 2008.2.29&gt;</p>		
<p>공인노무사법</p>	<p>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ol> <p>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li> <li>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li> <li>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li> </ol>	<p>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1호</p>	<p>등록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5. 금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07.8.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를 제외한다. 제29조 (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26>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항 제3호	지정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li> <li>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li> <li>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li> <li>7. 『평생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li> <li>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간 중에 있는 자</p> <p>9.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p> <p>10.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p>	<p>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제3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lt;개정 2005.3.31&gt;</p> <p>1. 금치산자·한정치산자</p> <p>2. 삭제 &lt;2007.12.27&gt;</p> <p>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p>	<p>자격 취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p>		
<p>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p>	<p>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2.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를 제외한다.</p> <p>제29조 (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p>	<p>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항</p>	<p>시정명령 승인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정을 받을 수 없다. &lt;개정 2005.3.31, 2007.1.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li> <li>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li> <li>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li> <li>7. 『평생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li> <li>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li> </ol>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p> <p>9.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p> <p>10.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직업안정법	<p>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12.29, 1999.2.8, 2007.1.19&gt;</p> <p>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38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1995.12.29, 1997.1.2.24, 1999.2.8, 2004.3.22, 2007.1.19&gt;</p>	<p>제36조 (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lt;개정 2007.1.19&gt;) 제1항</p>	<p>등록 허가 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허가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3.21&gt;</p> <p>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lt;개정 2007.4.11, 2008.3.21&gt;</p> <p>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p>		
방송법	<p>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p> <p>제13조 (결격사유)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li> <li>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li> </ol>	제18조 제1항 제3호	허가,승인,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lt;개정 2005.8.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li> <li>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li> <li>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li>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과법	1. 시설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개정 2005.12.30, 2007.12.2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2007.12.21, 2008.6.13>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제72조 제1항 제1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6.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7.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나 개설신고된 무선국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자</p>		
정보화촉진기본법	<p>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제22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기술의 사업화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지원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22조의2 제2호	지정취소

###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3	6. 훈련생의 모 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	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경우		경 고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등록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때	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5)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을 위반한 때	(가)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월	유료:등록 취소		
		(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		유료:등록 취소	무료:사업 정지6월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때 (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때		무료:사업 정지 6월 유료:등록 취소 무료:사업 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8)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허위구인광고등을 행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유료:등록 취소 무료:사업 정지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5)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7조(타목적 이용금지)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조직확대·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9)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 취소 무료:사업 정지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유료:등록 취소 무료:사업 정지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4)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 등 금품을 징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때				허가취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2월	허가취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7)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 관(법 제43조 관련)	아.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 업무	(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자가 진 찰·판정 업무를 행	지 정 취 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한 때 (2) 별표 14제2호가목 (1)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행한 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진찰·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3월	6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법 제12조제4호	경 고	업무 정지 1월	상담소· 교육훈련 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 시설의 인가 취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3.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3	경고	업무 정지 1월	시설 또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제18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호			상담소 폐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4.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법 제2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때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20조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때 나.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제13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9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법 제20조제1항제6호	경고	업무 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 때	법 제9조제1항제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2)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때 - 석유정제업자	법 제13조제1항 제12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2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4월	등록 취소	
	제29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나)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	법 제13조제1항제12	경 고	해당 사업장의	해당 사업장의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2007.12.21, 2008.2.29>	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정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2의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3. 시험·연구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목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경주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	(다) 그 밖의 유사 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2 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3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 - 석유정유업자	제39조 (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법 제13조제1항제14호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p> <p>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p> <p>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p> <p>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p> <p>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p> <p>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②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를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7.12.21, 2008.2.29&gt;</p> <p>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p> <p>2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석유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3)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4)에 해당한 때 - 석유수출입업자	법 제13조제2항제7호	사업 정지 1월	사업 정지 3월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4)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4)에 해당한 때 - 석유판매업자	법 제13조제3항제8	사업 정지	사업 정지	등록 취소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1월	3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1)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 분기준 (12)에 해당한 때 - 석유수출입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 용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 유제품의 경우와 경유 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 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제7 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2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4월	등록 취소	
		(나)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 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제7 호	경 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3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6월	
		(다) 그 밖의 유사석유 제품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제7 호	해당사업 장의 사업정지 3월	해당사업 장의 사업정지 6월	등록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2)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 분기준 (12)에 해당한 때 - 석유판매업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 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 용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	법 제13조제3항제8 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2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4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나)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3조제3항제8호	경 고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	
	(다)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3조제3항제8호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	등록 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자.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9호	업무 정지 6개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5	<p>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호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p> <p>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p> <p>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7)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가)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라) 방지시설에 딸린	법 제36조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법 제36조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법 제36조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법 제36조	경 고	조업	조업	조업	조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p> <p>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p> <p>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p>		정지 1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p>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법 제36조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p>	<p>3)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50조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p>	법 제55조 제3호	경 고	경 고	인증취소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 판매 또는 출고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1)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p> <p>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lt;개정 2008.3.21&gt;</p> <p>1.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容器)에 넣은 것</p>	법 제48조제1항제1호	허가 또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2) 법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수입한 먹는샘물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제19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은 제외한다.	법 제48조제1항제2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39조 (광고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법 제48조제1항제9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p>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p> <p>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라.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마.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법	면허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령 별표2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제49조제1항제5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바.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사.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면허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	차.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제55조 (수렵의 제한) 수렵장안에서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4.11, 2007.5.17> 1.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3. 운행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안 4.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법 제49조제1항제10호	면허취소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1)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제 8 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	법 제27조제8호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5)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②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함부로 버린 경우  나) 그 밖의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법 제49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5) 법 제2조제5호 마목의 경우 다. 法律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地域에 設置된 排出施設 또는 營業이 금지된 地域에서 營業을 영위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		폐쇄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철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6.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11조 (금지행위)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p> <p>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p> <p>3.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 판매액·교육비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p> <p>4.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p> <p>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p> <p>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p> <p>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p> <p>9.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p> <p>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p> <p>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15.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p> <p>제23조 (금지행위) ①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p> <p>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p> <p>4.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p> <p>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p> <p>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p> <p>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p> <p>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p> <p>9.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p> <p>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11.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p> <p>1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p> <p>13.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p> <p>14.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p> <p>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경우</p> <p>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p> <p>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16.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p> <p>제23조 (금지행위)②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우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20. 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p> <p>제32조 (금지행위 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p> <p>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3.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p> <p>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p> <p>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p> <p>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p> <p>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p> <p>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과학관육성법	①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28조 (등록의 취소) 제1항 제6호	등록 취소
사립학교법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제6조 (사업)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수익사업 정지 명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b>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b>	제38조 제2항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p>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li> <li>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li> <li>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li> <li>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li> <li>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li> <li>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li> <li>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li> </ol>	제9호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개별소비세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해당 과세장소 및 과세유홍장소의 영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를 그 영업의 허가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1999.12.3, 2005.7.8, 2007.12.31> 1. 과세장소 및 과세유홍장소의 영업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때	제27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요구)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개별소비세법	2.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과세유홍장소에서의 유희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나 일부를 3회 이상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공사채등록법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등록업무정지 또는 다른 등록기관에 의한 업무승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정지·등록취소)	등록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
관세법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특허의 취소)	
관세법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가산세부과
관세법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가산세부과
관세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밀수관련 혐의선박에 대하여 추적감시 또는 진행정지 명령을 하거나 세관공무원과 협조하여 당해 선박에 대하여 검문·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로 그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①세관공무원은 해상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1. 육군·해군·공군의 각 부대장 2. 국가경찰관서의 장 3. 해양경찰관서의 장	제267조의2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요구)	정지 및 검문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국가채권관리법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해행위의 취소)	취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주무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 7 조 (매점매석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시정명령등)	시정명령 및 중지
세무사법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8.2.29>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①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제6조 (등록)	등록거부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세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p> <p>1.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를 제외한다)</p> <p>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세무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전자금융거래법	<p>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1.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p>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6 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li> <li>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li> </ol> <p>제 8 조 (오류의 정정 등)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6조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①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p> <p>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p> <p>제35조 (겸업제한)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li> <li>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p> <p>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못한다.</p> <p>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맹점수수료</li> <li>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li> <li>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li> </ol> <p>④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p>		
전자금융거래법	<p>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제46조 (과징금)	과징금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금융위원회는 채권유통화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인가취소등)	6월 이내 영업정지 및 취소
통계법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시정요구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1조 (과태료) ②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의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li> <li>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li> <li>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li> <li>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li> <li>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p>		
한국주택금융공사법	<p>③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p>	제23조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등록 거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p>④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60조 (감독)①금융위원회는 공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제60조 (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li> <li>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li> <li>3.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li> </ol>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주세법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9. 탁주에 있어서는 50만원 이상,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에 있어서는 200만원이상, 주정 및 증류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주세법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1주조연도중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공인노무사법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07.12.21>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	제20조 (징계) 제1항	징계처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년 이하의 자격정지</li> <li>2. 등록취소</li> <li>3. 6개월 이하의 직무정지</li> <li>4. 견책(견책)</li> </ol> <p>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p> <p>제 6 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2007.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li> </ol> <p>제 7 조의3 (노무법인의 사원) ②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이나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li> </ol>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1조 (직무보조원)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lt;신설 2007.1 2.21&gt;</p> <p>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p> <p>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노무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2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p> <p>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p> <p>제13조 (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p> <p>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p> <p>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p> <p>4. 사건의 알선을 업(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8.3]</p> <p>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업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4조 (비밀 업무)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p> <p>8.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기록·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7조 (장부의 비치 등)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성실하게 기록·</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관리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9.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p> <p>제18조 (감독상의 명령 등)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10. 제20조의2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제20조의2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07.8.3]</p> <p>11.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근로자복지기본법	<p>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제 6 조 (목적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용자받은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제56조 (반환명령)	반환명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p>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p>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2항	시정명령 설립 허가 취소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능력개발훈련</li> <li>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li> <li>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급사업</li> <li>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li> </ol>		
<p>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10조 (조사·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p> <p>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p> <p>③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2조 (시정명령 등) 제1항</p>	<p>시정명령</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수·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4조 (구제명령) 제1항	구제명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제14조 (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허가 취소 6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계량에 관한 법률	<p><b>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b></p> <p>제10조 (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li> <li>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li> <li>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것</li> </ol>	제38조 제4호	<p>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u>1년 이내의 기간</u>을 정하여 그 <b>사업의 정지</b>를 명할 수 있다.</p>
광업법	<p><b>5.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b></p>	제35조 제5호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42조 (채광계획의 인가)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광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b>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경우</b>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①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28>	제24조 제3호	등록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b>1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b> 제39조 (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제11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p> <p>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p> <p>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p> <p>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p> <p>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p> <p>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p> <p>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p>②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를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7.12.21, 2008.2.29&gt;</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p> <p>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상호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p> <p>2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석유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그 밖에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p>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	제17조 제1항 제1호	승인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청문 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	제 43조 제1항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b>한 때</b></p> <p>『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제9호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사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p><b>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p>	제152조 제5호	<p>등록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농어촌도로정비법	<p><b>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b></p> <p>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군수는 도로의 정비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1999.1.21&gt;</p> <p>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당해 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제25조 제2호	<p>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농어촌도로정비법	<p><b>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b></p> <p>제17조 (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p>	제25조 제3항	<p>''</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농어촌도로정비법	<p><b>4. 제18조에 따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b></p> <p>제18조 (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9.1.21&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25조 제4호	"
먹는물관리법	<p>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p>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lt;개정 2008.3.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용기)에 넣은 것</li> <li>2.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li> <li>3.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li> </ol>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p>	<p>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17조 (과징금) 제2항</p>	<p>과징금</p>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p>	<p>제21조 (시정조치)</p>	<p>시정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li> <li>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li> <li>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li> <li>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li> <li>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li> <li>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li> <li>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li> <li>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경락자),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li> <li>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li> </ol>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li> <li>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li> <li>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li> <li>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li> </ol>	<p>제22조 (과징금)</p>	<p>과징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경락자),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제24조 (시정조치)	시정조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li> <li>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li> <li>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li> <li>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li> <li>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li> <li>6. 삭제&lt;1999.2.5&gt;</li> <li>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li> <li>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li> <li>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li> <li>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li> </ol>	<p>제24조의2 (과징금)</p>	<p>과징금</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p> <p>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p> <p>6. 삭제&lt;1999.2.5&gt;</p> <p>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p> <p>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p>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p>	<p>제27조 (시정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li> <li>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li> <li>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li> <li>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li> </ol>		
<p>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p>	<p>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li> </ol>	<p>제28조 (과징금) 제1항</p>	<p>과징금</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p> <p>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p> <p>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p> <p>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p> <p>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p> <p>3. 정정광고</p> <p>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제 3 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p>	<p>제7조 (시정조치) 제1항</p>	<p>시정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li> <li>2. 기만적인 표시·광고</li> <li>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li> <li>4. 비방적인 표시·광고</li> </ol>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제 9 조 (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9조 (과징금)</p>	<p>과징금</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 3 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li> <li>2. 기만적인 표시·광고</li> <li>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li> <li>4. 비방적인 표시·광고</li> </ol>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p>	<p>제25조의3 (과징금)</p>	<p>과징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 지급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p> <p>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p> <p>4의2.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p> <p>5.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p> <p>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li> <li>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li> </ol>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p> <p>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등을 자기</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p> <p>③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⑦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p>		

14. 금지행위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보증금액 = _____ × 4</p> <p>공사기간(월수)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보증금액 = _____ × 대가의 지급주기 × 2</p> <p>공사기간(월수) (월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p> <p>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p> <p>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p> <p>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p> <p>③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것외에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직접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li> <li>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li> <li>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li> <li>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증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2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7.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42조관련) 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7)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제25조 (품질검사)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법 제28조제1항제7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5)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제25조 (품질검사)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법 제28조제2항제5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승인 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5) 법 제4조제4항(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기적으로 작성·보관한 때	법 제7조제5호	안전인증 표시 사용	안전인증 표시 사용	안전인증 표시 사용	안전인증 취소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④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금지 1월	금지 3월	금지 6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마.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5호	개선 명령	안전 검사 표시 사용 금지 2개월	안전 인증 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자.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7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차.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7호	인증 취소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바.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인증 업무 일부	인증 업무 일부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4조 ⑤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정지 3월	정지 6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제14조⑦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6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19.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이하 운영정지	7일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7호	7일이하 운영정지	7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정지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사.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제13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②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5)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5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제18조 ③배출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제32조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제1호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p> <p>2. 건설폐기물처리업자</p> <p>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p>	<p>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p>제31조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법 제36조</p>	<p>경 고</p>	<p>경 고</p>	<p>조업 정지 10일</p>	<p>조업 정지 20일</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p>	<p>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p> <p>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p>	<p>법 제36조</p>	<p>경 고</p>	<p>경 고</p>	<p>조업 정지 5일</p>	<p>조업 정지 10일</p>
	<p>제39조 (자가측정) ①사업자가</p>	<p>법 제36조</p>	<p>경 고</p>	<p>경 고</p>	<p>조업 정지</p>	<p>조업 정지</p>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p>록부 및 자가측정 시험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5일	10일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p>	<p>2) 법 제6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p> <p>제68조 ③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p>	<p>법 제69조 제2호</p>	<p>업무 정지 1개월</p>	<p>업무 정지 3개월</p>	<p>업무 정지 6개월</p>	
<p>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p>		<p>법</p>	<p>경고</p>	<p>영업</p>	<p>영업</p>	<p>영업</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9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정지 15일	정지 1개월	정지 2개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라) 저수조의 청소 또는 위생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7)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2호	경고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6)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2항제2호	경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조업 정지 30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2	바. 박제업자가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	법 제40조제5항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등록 취소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니한 경우		15일	1월	3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8호·제36조제 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22)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가) 장부를 거짓으로 적거나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장부의 보존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2)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 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4)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과학관육성법	②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제18조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수익사업) 제2항	
학교보건법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14&gt;</p> <p>제 6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lt;개정 2007.12.14&gt;)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lt;개정 2007.12.14&gt;</p>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개정 2007.12.14>) 제3항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 시설 철거 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li> <li>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li> <li>3. 삭제 &lt;2008.3.21&gt;</li> <li>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li> <li>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li> <li>6. 폐기물수집장소</li> <li>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li> <li>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li> <li>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격리소)</li> <li>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li> <li>11. 가축시장</li> <li>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p> <p>13. 호텔, 여관, 여인숙</p> <p>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p> <p>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p> <p>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p> <p>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p> <p>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p> <p>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p>		

15. 기록 보존의무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p> <p>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p>		
<p>개별소비세법</p>	<p>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25조 (명령사항 등)</p>	
<p>관세법</p>	<p>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구분·적재·보관·과세자료의 제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시정명령</p>
<p>법인세법</p>	<p>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p>	<p>제76조 (가산세)</p>	<p>가산세</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p> <p>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p> <p>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lt;개정 2003.12.30&gt;</p> <p>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먹는물 관리법	<p>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p>	제48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7조 (품질관리인)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8조 (품질관리교육 &lt;개정 2008.3.21&gt;)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9조 (건강진단)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8.3.21&gt;</p> <p>제30조 (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③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계측기)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p>		
<p>수도법</p>	<p>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63조 제2항 제9조</p>	<p>인가를 취소 또는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 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1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제68조 (장부의 기록·보존)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49조 제12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6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장부의 비치등) ①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 및 제13조·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8조 제1항 제16조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장부의 비치등) ①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 및 제13조·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의 2 제1항 제14조	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7.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제7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검사대행자)
환경영향평가법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이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제2항 제3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p>	<p>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lt;개정 1999.2.5, 2004.1.20, 2005.3.31&gt;</p> <p>1.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p> <p>2.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p> <p>제 3 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p>	<p>제25조의3 (과징금)</p>	<p>과징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1999.2.5, 2004.1.20, 2005.3.31&gt;</p> <p>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04.1.20&gt;</p> <p>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16. 포괄 금지 조항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낙시어선업법 시행규칙 별표2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영업폐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29조	시정명령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목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과징금 150만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4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p> <p>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p>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p> <p>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p>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p>	<p>법 제82조제1항제5 호 다목·라목</p>	<p>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1.16, 2004.12.31&gt;</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⑥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p>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2</p>	<p>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p> <p>제31조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6.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위반한 경우</p>	<p>법 제19조제1항제10 호의2</p>	<p>영업정지 4개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의3	<p>3.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p> <p>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법 제31조제1항제6 호</p>	채취중지 2개월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⑤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완료일부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법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제22조의2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 ①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	사업정지 120일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2. 안전운행	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90일	허가취소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7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90일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라. 검사최고료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8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90일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6호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바.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중(公衆)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6호	인증취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사.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7호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8.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 1조에 따른 근로자공급 및 관리를 하지 아니 한 때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공급하거나 공급계약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근로자에 대하여 공급계약기간을 초과 하여 체류하게 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한 후 동조제1항 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 안전관리 대행기관	라.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서류를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 정 취 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 제15조의2관련)	허위로 작성한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바.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		(1)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업무를 게을리 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2)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 취소		
				(3)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말의 재해율 (전국 사업장 전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그 직전 연	(가) 30% 이상 50% 미만 증가한 때	업무정지 1월			
				(나) 50% 이상 70% 미만 증가한 때	업무정지 2월				
(다) 70% 이상 증가	업무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말의 재해 을보다 한 때					
		(4) 위탁받은 사업장 중 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 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 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 해가 발생한 때(다만, 사 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 생한 재해 또는 재해발 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 내에 그 작업이 없 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 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 한 재해를 제외한다)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서류를 보존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기 제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2) 관계공무원의 지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 정 취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3월	6월	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이외의 금품을 받은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4) 최근 1년간 일반기준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2.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 바목(3)을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4. 지정교육기관(법 제31조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 바목(3), (4)를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5. 지정검사 기관(법 제3 6조관련)	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중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및 가목을 준용한다					
		나. 자체검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 (1) 주요 검사항목을 빠 뜨린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방법을 달리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검사결과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검사결과 조치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바.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검사의 업무정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4.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법 제29조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 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농수산물유통 및	4.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		법 제82조	경고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제5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9.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	법 82조 제5항제7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때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 나.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약 다.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농약 라.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마.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고	당해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3월	당해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법 제7조제1항제6호, 제2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한 농약			1월	1년	
		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당해 품목등록 취소			
		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경고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9.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신약 등의 재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시판 후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32조·제42조, 『의료기기법』 제8조·제14조 제5항, 규칙 제7조의2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나.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다. 재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해당품목 허가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등이 위탁제조 또는	위탁자	법 제31조, 『의료기기법』	해당품목 제조정지	해당품목 제조정지	해당품목 제조정지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탁시험을 하는 경우 위 · 수탁의 범위,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6조, 시설기준령 제13조	1개월	3개월	6개월	
		수탁자		당해제형 제조(시험 )정지 15일	당해제형 제조(시험 )정지 1개월	(당해제형 제조(시험 )정지 3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49. 동물용의약품등의 제 조업자 또는 동물용의약 품등의 취급자가 국가검 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국가검정에 합격하지 아 니한 국가검정 동물용의 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 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 열, 보관 또는 저장한 때	제조업소	법 제53조	제조정지 1개월	제조정지 6개월	허가취소	
		판매업소(동물용의약품도매 상·동물약국 등)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5. 동물용의약품의 취급자의 유통관리 소홀로 인하 여 약효에 이상이 발생된 경우		법 제47조, 규칙 제22조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13.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의 합의사항을 준 수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 등을 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第10條 (許可등의 제한 또는 조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다.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법 제19조제1호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영업정지 1월, 당해 제품회수 · 양도 금지	영업정지 2월, 당해 제품회수 · 양도 금지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 양도 금지	
		(2) 10퍼센트 이상	법 제19조제1호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 폐기	등록취소, 당해 제품회수 · 폐기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라.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4호	경고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1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2월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4호	당해 명칭의	당해 명칭의	당해 명칭의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비료영업 정지 1월, 당해 제품회수	비료영업 정지 2월, 당해 제품회수	비료영업 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3) 30퍼센트 이상	법 제20조제1항 제4호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등록취소, 당해 제품회수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사. 법 제1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보증성분량(증 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 진 기타 규격을 포함한 다)과 실제 함유량의 차 이가 다음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유통 또는 공급한 때 第14條 (보증표시 및 販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7 호	경고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1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2월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7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賣管理) ①비료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普通肥料 및 副産物肥料의 容器나 포장의 외부에 肥料의 명칭, 保證分量 등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호	정지 1월, 당해 제품회수	정지 2월, 당해 제품회수	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3) 30퍼센트 이상	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7호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등록취소, 당해 제품회수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아. 법 제14조제2항의 규	(1)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법	당해	당해	등록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2	정에 위반한 때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제20조제1항제8호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1월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3월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8호	경고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1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3월		
		(3)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폐기	등록취소, 당해 제품회수·폐기			
		(5)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를 양도·진	법 제20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1월, 당해 제품회수	영업정지 2월, 당해 제품회수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나.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법 제19조제1호 법 제20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1월, 당해 제품회수 · 양도 금지	영업정지 2월, 당해 제품회수 · 양도 금지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 양도 금지	
		(2) 10퍼센트 이상	법 제19조제1호 법 제20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 폐기	영업소폐쇄, 당해 제품회수 · 폐기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다.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다음 기준에 미달한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법 제20조제2항제3호	경고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정지 1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정지 2월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법 제20조제2항제3호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정지 1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정지 2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정지 3월,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당해 제품회수	당해 제품회수	당해 제품회수	
		(3) 30퍼센트 이상	법 제20조제2항제3 호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영업소폐 쇄, 당해 제품회수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마. 법 제1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보증성분량(중 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 진 기타 규격을 포함한다) 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다음 기준에 미달한 비료 를 수입하여 판매한 때	(1)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제2항제5 호	경고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1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2월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법 제19조제3호 법 제20조제2항제5 호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1월, 당해 제품회수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2월, 당해 제품회수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3) 30퍼센트 이상	법 제19조제3호 법	당해 명칭의	영업소폐 쇄, 당해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0조제2항제5호	비료영업 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	제품회수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사료공정이 정하지 아니 한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때	법 제23조제3호 및 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회수·양 도금지	영업의 전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회수·양 도금지	영업의 전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 회수·양 도금지	
		나. 제조방법 또는 보존방법 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의 일부정지 1월	영업의 전부정지 1월	영업의 전부정지 3월	
		다. 성분규격 함량에 부족하 거나 순도시험중 중금속기 준에 위반한 때		영업의 전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 회수	영업의 전부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회수	영업의 전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 회수	
사료관리법시행규칙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23조제5호	영업의	등록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10	제17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사료공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사료를 수입한 때		전부정지 2월			
		나.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영업의 전부정지 1월	영업의 전부정지 2월	영업의 전부정지 6월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때		영업의 전부정지 1월	영업의 전부정지 2월	영업의 전부정지 6월	
		라. 검정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한 때		영업의 전부정지 2월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산물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15. 어촌계 등의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39조	경고	경고	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 품질인증제품을 검사·조사한 결과 인증기준에 맞 지 아니한 경우		판매정지 45일	판매정지 60일	인증취소	
약사법시행규칙[별표8]	2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제조소 또는 영업소에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를 종사시키지 아니하거나, 그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 리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수입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6조, 법 제37조제2항, 법 제42조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22의2.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제조 소 또는 영업소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종사시키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7조의2, 법 제42조제4항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영업허가 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개월	6개월		
	2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제조관리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24.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 의무 또는 생산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43조(제3호·제7호·제9호·제14호·제19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 법 제38조제1항, 법 제42조(시행규칙 제43조)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또는 해당 품목허가 취소	
나. 제43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다. 제43조제7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허가취소					
라. 제43조제9호 및 제14호 - 제 품 표 준서, 제		전제조 업무정지		전제조 업무정지	영업허가 또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를 위반한 경우	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또는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	또는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허가 취소	
			-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		전제조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또는 해당 품목허가 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또는 해당품목 허가취소
		- 그 밖의 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		전제조업 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우					
		마. 제5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품목 수입금지 1개월	전품목 수입금지 3개월	전품목 수입금지 6개월	전품목 수입금지 1년 또는 해당 품목수입 허가취소
		바. 제43조제19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허가 취소
	24의2.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의2, 법 제42조제4항	해당 품목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취소
	24의3.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완체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5.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신약의 부작용 보고	법 제38조제2항, 법 제42조	전제조 업무정지 15일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나. 임상시험 중의 부작용 보고 등		전제조 업무정지 15일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26.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의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법 제40조·제42조,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3항·제4항)	경고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27.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는 조제실의 시설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정지 15일 또는 약국제제 제조업무 정지 15일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정지 1개월 또는 약국제제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또는 약국제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8.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시행규칙 제20조)	경고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정지 3일 또는 약국제제 제조업무 정지 3일	3개월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정지 7일 또는 약국제제 제조업무 정지 7일	조제실 제제 제조업무 정지 15일 또는 약국제제 제조업무 정지 15일	
	29.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허가 없이 반입한 가공품을 제조·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43조	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면허취소	
나. 한약업사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다. 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영업허가 취소		
라. 한약 도매상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영업허가 취소		
마. 의약품등의 수입자 또는 제조업자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12개월	영업허가 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0.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 및 법 제47조(시행규칙 제62조)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제조업 허가취소
	31.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가. 영업소 또는 창고의 소재지 이전	법 제45조제1항(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88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도매상의 종류 변경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월	허가취소		
다. 영업소의 명칭, 도매업자(대표자) 및 관리자 변경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2. 의약품 도매상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3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의약품 도매상의 업	법 제45조제5항	업무정지	업무정지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에 해당하는 도매상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	무를 관리하는 약사가 없는 경우	및 제46조	15일	1개월		
		나. 한약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약사·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리자가 없는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34.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판명된 경우		법 제46조	영업허가 취소			
35.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법 제47조(시행규칙 제62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품목허가 취소
		· 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약국등의 개설자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나.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1개월 업무정지
		다.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0호·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라.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마.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바.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사. 시행규칙 제6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경우	· 의약품 · 도매상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약국등 · 의 개설자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6. 약국등의 개설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37. 약국개설자가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봉판매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38.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39. 매약상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것 외의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49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40.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등록또는 허가취소		
	41.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42. 의약품제조업자가 국가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가검정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43.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국가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국가검정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저장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등록 또는 허가취소	
	44.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6조 각 호 또는 법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문표시 기재사항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58조제1호,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 중 일부항목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나목의 일부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예, 용법, 용량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시행규칙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제83조, 제85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해당 품목 허가취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지시에 따라 변경한 경우 나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위 가목 및 나목 외에 법 제56조, 법 제58조, 시행규칙 제75조(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76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사항 중 일부를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마. 시행규칙 제78조를 위반한 경우	· 약국등의 개설자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 의약품 의 도매상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58 조제1호, 시행규칙 제7 5조제1항제1호부터 제6 호까지 및 제10호 중 일부를 허가받은 사항 과 다르게 기재·표시 하거나 거짓 또는 과대 기재·표시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사. 시행규칙 제77조제5 호 또는 제6호를 위반 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아. 제75조제6항 또는 제76조제2항을 위반하 여 표기한 경우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임상시험 업무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회수·폐 기 및 임상시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승인취소
	자. 제 77조(제3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기재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차. 그 밖에 법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77조, 제83조, 제85조를 위반하여 기재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45.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가. 법 제56조부터 법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	법 제61조, 법 제62조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나.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제조되거나 수입된 것으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폐기명령된 의약품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 위조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판매품 또는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라. 위조의약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판매품 또는 적발품 가액으로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46.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한 의약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기준치보다 5% 미만 부족한 경우 ② 유효성분의 함량(역가 및 소화력을 포함한	법 제62조, 법 제66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만, 내용량 또는 실용량은 의약품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이 기준치보다 5% 미만 과부족한 경우. 다만, 비타민류는 유효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15% 미만 과부족한 경우		제조업무 정지 15일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허가취소
③ 살충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과량인 경우로서 기준치보다 10%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④ 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 미만 과부족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⑤ 생물학적제제시험에 있어 균농도·균량측정·분자량측정·감마글로불린함량·면역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로블린·지함량·알부민 함량·단백질함량(유효 성분)·말토스함량·바이러스함량·히스타민 확인 또는 안정성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5% 미만 과부족한 경우, 응집소시험결과가 기준치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 및 응집력시험결과가 기준치의 5초 미만인 경우, 피부반응시험 또는 코호현상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p> <p>⑥ 생약제시험에 있어 회분·산불용성회분·증발잔류물 또는 엑스 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20% 미만 부족하거나 40% 미만 과량인 경우</p>		15일	3개월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⑦ 정상시험·용접시험·비중시험·PH시험, 알코올수시험 또는 용해성시험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⑧ 보존제·방향제·감미제 및 색소 등 첨가체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생물학적제제에 있어 불활화제합량·첨가제합량 또는 보존제합량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⑨ 건조함량·수분(치약류는 제외한다)·함습도·강열감량·강열잔분·분말용적·증발잔류물 또는 열작잔류물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⑩ 의약외품에 있어 형상(안대와 마스크의 겹의 형상은 제외한다), 사수, 그 밖의 섬유, 랩, 혼재물, 이물, 강열잔분, 강도, 유거상태, 순도(생리처리용 위생대만 해당한다), 회분, 포름알데히드, 페놀, 색소 또는 산 및 알칼리 시험(생리처리용 위생대, 안대 및 마스크류만 해당한다)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⑪ 의약외품에 있어 외관(형상)·구조(내부도면 및 회로도)를 포함한다)·부품·성능·눈금 및 표시·길이측정·고무질·두께·신장도·내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외면·중량측정 또는 인장강도측정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⑫ 수액용 고무마개에 있어 용출물시험 중 성장·거품·pH 또는 증발잔류물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⑬ 플라스틱제 의약품 용기시험에 있어 투명성 및 외관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용출물시험 중 거품·PH 또는 증발잔류물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⑭ 주사제용 유리용기 시험에 있어 기포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⑮ 정맥용 인면역글로불린제제시험에 있어 항보체성부정시험이 기준치의 5unit 미만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⑯ 혈액응고인자제제시험에 있어 활성인자부정시험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⑰ 그 밖에 위 괄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이 기준치에 대하여 5% 이상 6% 미만 부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는 경우	족한 경우	정지 1개월	정지 4개월	정지 7개월	
			② 유효성분의 함량(역가 및 소화력을 포함한다)이 기준치에 대하여 5% 이상 6% 미만 과부족한 경우. 다만, 비타민류는 유효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기준치에 대하여 15% 이상 20% 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7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③ 살충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과량인 경우로서 기준치에 대하여 10% 이상 14%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7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④ 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10% 이상 12%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미만 과부족한 경우			4개월	7개월	
		⑤ 생약제시험에 있어 회분·산불용성회분·증발잔류물 또는 엑스 시험결과가 기준치에 대하여 20% 이상 27% 미만 부족하거나 40% 이상 58%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7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⑥ 생물학적제제시험에 있어 균농도·균량측정·분자량측정·감마글로불린함량·면역글로불린·지함량·알부민함량·단백질함량(유효성분)·말토스함량·바이러스함량·히스타민확인 또는 안전성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5% 이상 6% 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7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⑦ 의약품등이 변질·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변패되었거나 형태 및 색상 변경으로 규정된 성상과 달라 전혀 다른 의약품등으로 오인될 경우(가목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품목 제조업무 정지 7개월	품목 허가취소
		⑧ 의약외품시험에 있어 경도·입도·수분 또는 염모력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7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⑨ 의약외품(생리처리용 위생대, 안대 및 마스크류는 제외한다)에 있어 수용성물질 또는 색소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7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⑩ 의약품등의 용량편차시험결과 개개의 중량이 기준치보다 90%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이나 전체 중량이 100% 미만인 경우		정지 1개월	정지 4개월	정지 7개월	
		① 그 밖에 위 팔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7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기준치보다 6% 이상 7% 미만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유효성분의 함량(역가 및 소화력을 포함한 다)이 기준치보다 6% 이상 7% 미만 과부족한 경우. 다만, 비타민류는 유효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20% 이상 25%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③ 살충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과량인 경우로서 기준치보다 14% 이상 17%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④ 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2% 이상 14% 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⑤ 생약제시험에 있어 회분·산불용회분·증발잔류물 또는 엑스 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27% 이상 35% 미만 부족하거나 58% 이상 77%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⑥ 생물학적제제시험에 있어 균농도·균량측정·분자량측정·감마글로불린함량·면역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로블린·지함량·알부민 함량·단백질함량(유효 성분)·말토스함량·바이러스함량·히스타민 확인 또는 안전성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6% 이상 7% 미만 과부족한 경우</p> <p>⑦ 봉해·입도(과립제·주사제 또는 점안제만 해당한다)·분말도·정유·안정도·광유(주사제 및 점안제만 해당한다) 또는 생약 시험 중 이물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p> <p>⑧ 의약외품(생리처리용 위생대·안대 및 마스크류는 제외한다)시험에 있어 텍스트린 또는 전</p>		2개월	5개월	8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분·산 및 알칼리 또는 탄력도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5개월	8개월	
		⑨ 의약품 등의 용량편차시험결과 개개의 중량이 기준치보다 90% 미만인 것이 1개 이상 있고 전체중량이 100% 이상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제조업무 정지 5개월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허가취소
		⑩ 의약품등의 중량편차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⑪ 그 밖에 위 괄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기준치보다 7% 이상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8% 미만 부족한 경우		제조업무 정지 2개월	제조업무 정지 5개월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허가취소
		② 유효성분의 함량(역가 및 소화력을 포함한다)이 기준치보다 6% 이상 7% 미만 과부족한 경우. 다만, 비타민류는 유효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20% 이상 25%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③ 살충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과량인 경우로서 기준치보다 14% 이상 17%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④ 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2% 이상 14% 미만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과부족한 경우		2개월	5개월	8개월	
		⑤ 생약제시험에 있어 회분·산불용회분·증발잔류물 또는 엑스 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27% 이상 35% 미만 부족하거나 58% 이상 77%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⑥ 생물학적제제시험에 있어 균농도·균량측정·분자량측정·감마글로불린함량·면역글로불린-지함량·알부민함량·단백질함량(유효성분)·말토스함량·바이러스함량·히스타민 확인 또는 안전성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6% 이상 7% 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⑦ 봉해·입도(과립제·주사제 또는 점안제만 해당한다)·분말도·정유·안정도·광유(주사제 및 점안제만 해당한다) 또는 생약 시험 중 이물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⑧ 의약외품(생리처리용 위생대·안대 및 마스크류는 제외한다)시험에 있어 텍스트린 또는 전분·산 및 알칼리 또는 탄력도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⑨ 의약품등의 용량편차시험결과 개개의 중량이 기준치보다 90% 미만인 것이 1개 이상 있고 전체중량이 100%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인 경우					
		⑩ 의약품등의 중량편차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⑪ 그 밖에 위 관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기준치보다 7% 이상 8% 미만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허가취소
		② 유효성분의 함량(역가 및 소화력)을 포함한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이 기준치보다 7% 이상 8% 미만 과부족한 경우. 다만, 비타민류는 유효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25% 이상 30% 미만 과부족한 경우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제조업무 정지 9개월	
		③ 살충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과량인 경우로서 기준치보다 17% 이상 20%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허가취소
		④ 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4% 이상 16% 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⑤ 생약제시험에 있어 회분 · 산불용성회분 · 증발잔류물 또는 엑스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35% 이상 40% 미만 부족하거나 77% 이상 95% 미만 과량인 경우</p> <p>⑥ 생물학적제제시험에 있어 역가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균농도·균량측정·분자량측정·감마글로불린함량·단백질함량(유효성분)·말토스함량·면역글로불린-지함량·알부민함량·바이러스함량·히스타민확인 또는 안전성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7% 이상 8% 미만 과부족한 경우, 응집시험결과가 기준치의 4배수에 미달한 경우와 응집력시험결과가</p>		<p>정지 3개월</p>	<p>정지 6개월</p>	<p>정지 9개월</p>	
				<p>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p>	<p>허가취소</p>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준치의 5초 이상 10초 미만인 경우 및 항보 체부정 · 중합물부정 · 활성인자부정 · A · B혈액형물질부정 · 팽윤도 · 피브리노겐부정 · 활성인자부정 · 특이성 · 단백질함량(비유효성분) · 난알부민함량 · 열안정성 또는 진탕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⑦ 미생물시험 중 총호기성생균(세균, 진균)시험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월	허가취소
		⑧ 용출시험 및 함량균일성시험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개월	6개월	9개월	
		⑨ 정맥용 인면역글로불린제제에 있어 항보체성부정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5unit 이상 10unit 미만인 경우, 중합물부정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허가취소
		⑩ 생리처리용 위생대·안대·마스크 및 탈지면에 있어 침강속도, 형상중 겹의 형상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허가취소
		⑪ 한약재 또는 한약제제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허가취소
		⑫ 의약품등의 용량편차시험결과 개개의 중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90%미만인 것이 1개 이상이고 전체중량이 100% 미만인 경우		정지 3개월	정지 6개	정지 9개월	
		⑬ 외용제성분검사결과 허가받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성분이 검출된 경우(유효성분은 제외한다)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허가취소
		⑭ 팽윤도시험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허가취소
		⑮ 그 밖에 위 괄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허가취소
	마. 다음의 어느 하나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기준치에 대하여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조업무 정지 4개월	제조업무 정지 8개월		
		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허가취소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허가취소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만 과부족한 경우		4개월	8개월		
		⑤ 생약제에 있어 회분, 산불용성회분, 증발잔류물 또는 엑스 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40% 이상 70% 미만 부족하거나 95% 이상 120%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허가취소	
		⑥ 소화력(역가표시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제산도·효능 또는 효력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허가취소	
		⑦ 내용고형제성분검사 결과 허가받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성분이 검출된 경우(유효성분은 제외한다)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허가취소	
		⑧ 점착성시험(반창고 및 경고제류만 해당한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다)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업무 정지 4개월	제조업무 정지 8개월		
		⑨ 그 밖에 위 괄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8개월	허가취소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기준치보다 9% 이상 10% 미만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0개월	허가취소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유효성분의 함량(역가 및 소화력을 포함한다)이 기준치보다 9% 이상 10% 미만 과부족한 경우. 다만, 비타민류는 유효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37% 이상 45% 미만 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0개월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부족한 경우					
		③ 살충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과량인 경우로서 기준치보다 25% 이상 30%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0개월	허가취소	
		④ 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8% 이상 20% 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0개월	허가취소	
		⑤ 생약제시험에 있어 회분, 산불용성회분, 증발잔류물 또는 엑스 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70% 이상 100% 미만 부족하거나 120% 이상 150% 미만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0개월	허가취소	
		⑥ 의약품에 있어 살균력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지 5개월	정지 10개월			
		⑦ 생리처리용 위생대·안대·마스크 및 탈지면에 있어 생균수·흡수량 또는 침출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0개월	허가취소		
		⑧ 그 밖에 위 관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0개월	허가취소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기준치보다 10% 이상 11% 미만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허가취소	
				② 비타민류의 유효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기준치보다 45% 이상 5	해당 품목 제조업무	해당 품목 제조업무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0% 미만 과부족한 경우		정지 6개월	정지 12개월		
		③ 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20% 이상 22% 미만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④ 생약제시험에 있어 회분·산불용성회분·증진잔류물 또는 엑스 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10% 이상 부족하거나 15% 이상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⑤ 생물학적제제시험에 있어 균농도·균량측정·분자량측정·감마글로불린함량·면역글로불린-지함량·알부민함량·단백질함량(유효성분)·말토스함량·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러스함량 · 히스타민 확인 또는 안정성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8% 이상 10% 미만 과부족한 경우, 응집소시험결과가 기준치의 8배수에 미달한 경우 및 응집력 시험결과가 기준치의 10초 이상인 경우					
		⑥ 불용성미립자시험 또는 불용성이물시험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⑦ 정맥용 인면역글로불린제제시험에 있어 항보체성부정시험결과가 기준치보다 10unit 이상인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⑧ 원료의약품시험에 있어 무균·발열성물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질 · 안전성 · 히스타민 · 비선광도 · 흡광도 또는 함량(역가시험 및 소화력시험을 제외한다) · 결정성 및 산과 염기의 일치도 · 요오드흡수물질 · 유연물질 · 불순물 · 잔류용매 · 열안정성 · 유리암피실린 · 유리글리실 또는 용액의 색도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p> <p>⑨ 순도시험(주성분 · 부형제 · 결합제 · 붕해제 · 용제 · 용해보조제 또는 현탁화제 등)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항생물질 및 그 제제에 있어 기타 펩타이드 · 총불순물 함량 ·</p>		<p>제조업무 정지 6개월</p>	<p>제조업무 정지 12개월</p>		
				<p>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p>	<p>허가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철·염화물·인산염·지방분·자외부흡수스펙트럼·열안전성손실역가·용해상태 또는 유연물질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⑩ 외용제 또는 내용고형체를 제외한 제제의 성분시험결과 허가받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성분이 검출된 경우(유효성분은 제외한다)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⑪ 수액용 고무마개에 있어 카드뮴·납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용출물시험 중 아연·납·과망간산칼륨·환원성물질 또는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합한 경우					
		⑫ 플라스틱제 의약품 용기시험에 있어 수증기투과성·회화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용출물시험 중 과망간산칼륨 환원성물질 또는 자외가시흡수스펙트럼 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⑬ 주사제용 유리용기 시험 있어 알칼리용출, 착색용기의 철용출 또는 차광성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⑭ 그 밖에 위 괄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내용량 또는 실용량이 기준치보다 11% 이상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② 유효성분의 함량(역가 및 소화력을 포함한다)이 기준치에 대하여 10% 이상 과부족한 경우. 다만, 비타민류는 유효성분 중 하나의 성분이 기준치에 대하여 50% 이상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③ 살충제의 유효성분 함량이 과량인 경우로서 기준치보다 30% 이상 과량인 경우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④ 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효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22% 이상 과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⑤ 생물학적적제제시험에		해당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있어 균농도·균량측정·분자량측정·감마글로불린함량·면역글로불린·지함량·알부민함량·단백질함량(유효성분)·말토스함량·바이러스함량·히스타민 확인 또는 안정성시험 결과가 기준치에 대하여 10% 이상 과부족한 경우 및 응집소시험결과가 기준치의 16배수 이상 미달한 경우		품목 허가취소			
		⑥ 병원성미생물(대장균군·녹농균·병원성포도상구균·살모넬라균 또는 병원성세균 등)이 검출된 경우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⑦ 주사제시험에 있어 무균·발열성물질·안		해당 품목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성 또는 히스타민과 유사한 물질, 항원성·아나필락시쇼크·마우스체중감소·마우스히스타민증감·마우스백혈구증가·이상독성부정 또는 세균성내독소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허가취소			
		⑧ 메탄올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에탄올 중 휘발성 혼재물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품목 허가취소			
		⑨ 확인시험에서 유효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경우와 유독성분 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검출된 경우 및 생물학적제제시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험에 있어 동정·면역화학·염색·무독화·불활화·총균수·응고·유해결핵균부정·대장균부정·용혈성연쇄구균부정·포도구균부정·탄저균부정·병원성클로스트리듐부정·이종단백질부정 또는 세균부정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p> <p>⑩ 생리처리용 위생대·탈지면·거즈 및 붕대시험에 있어 형광증백제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p> <p>⑪ 수액용 고무마개시험에 있어 발열성물질, 용혈성 또는 급성독성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p> <p>⑫ 플라스틱제 의약품</p>					
				해당 품목 허가취소			
				해당 품목 허가취소			
				해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용기시험에 있어 세포 독성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품목 허가취소			
		⑬ 그 밖에 위 괄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허가취소			
	47.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봉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시행규칙 제80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48.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안전용기·포장의 기준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시행규칙 제81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제조업무 정지 6개월		
	49.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5조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문표시	법 제76조	해당 품목 판매업무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재사항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정지 6개월			
	나. 법 제65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일부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표시하거나 허위·과대 기재·표시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업무 허가취	
	다. 법 제65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시행규칙 제8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라. 제79조를 위반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마. 위 나목 및 다목 외 에 법 제65조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재·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대 기재·표시 한 경우 또는 그 밖의 금지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50.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	법 제68조, 법 제68조의2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나. 시행규칙 제84조의2 또는 제84조의4를 위반 하여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다. 별표 7 제2호나목 또는 러목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라. 별표 7 제2호머목 또는 제3호다목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4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마. 별표 7 중 위 다목과 라목 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경우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
	5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출입·검사·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 의약품제조업자	법 제69조제1항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제조소 폐쇄
다. 약국 및 의약품의 판매업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5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약	가. 의약품제조업자	법 제71조부터	전제조	전제조	전제조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국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 상이 법 제71조부터 법 제75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명 령·검사명령·개수명령 또는 관리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나. 의약품제조업자	제75조까지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제조소 폐쇄
		다. 약국 및 의약품 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매업자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허가취소
	53. 약국시설이 시설기준령 제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54.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 경우	가. 작업소 또는 시험실 이 없거나 제조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기구가 전부 없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법 제76조제2항(시 설기준령 제3조 및 시설기준령시행 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해당 품목허가 취소	
나. 분리 또는 구획 대 상제제나 제형별 작업 소가 각각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제 또는 제형제조 업무정지 3개월		해당 제제 또는 제형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제제 또는 제형 허가취소		
다. 해당 품목의 제조		해당		해당	해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품목 제조업무 정지 5개월	품목 제조업무 정지 10개월	품목 허가취소	
	라. 의약품의 종류,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에 따라 필요한 작업실이 없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마. 작업소의 환경관리를 위한 공기조화장치가 없거나 가동되지 아니한 경우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9개월	영업허가 취소
	바. 원료의 칭량, 의약품의 조제, 충전 및 마개를 막거나 밀봉하는 작업실(무균제제 및 생물학적제제는 제외한다)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사. 무균제제 또는 생물		무균제제	무균제제	무균제제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학적제제의 조제·충전 및 밀봉작업실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또는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무 정지 6개월	또는 생물학적 제제 허가취소	
	아.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3조, 제4조 및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자. 의약품제조업자가 위탁제조 또는 위탁시험을 하는 경우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자)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수탁자) 해당	(위탁자)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수탁자) 해당	(위탁자)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개월 (수탁자) 해당	(위탁자) 해당 품목 허가취소 (수탁자) 해당 제형 제조업무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형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제형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제형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정지 9개월
	55. 의약품제조업소의 시설이 시설기준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4항(시 설기준령시행규 칙 제8조)	의약품 시설기준 처벌기준	제조소의 령시행규 을 준용	시설기준 칙 위반에 함	
	56.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시 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 경우	가. 영업소·창고 또는 시험실이 없는 경우	법 제42조제2항(시 설기준령 제6조 및 시설기준령시행 규칙 제9조)	전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전품목 수입허가 취소		
나. 창고에 해당 의약품 등의 취급에 필요한 보 관시설이 없는 경우		전품목 수입업무 정지 1개월		전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전품목 수입허가 정지 6개월	전품목 수입허가 취소	
다. 해당 품목의 시험시 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년	전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
57.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6조 및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시설기준령 제7조,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0조)	영업허가 취소			
	가. 영업소 또는 창고가 없는 경우(위탁한 경우는 제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나. 창고에 의약품의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영업허가 취소		
	다. 보유자산이 자산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라. 그 밖에 시설기준령 제7조 및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영업허가 취소
58. 약업사·한약업사 또는	가. 영업소를 갖추지 아	시설기준령	허가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매약상의 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니한 경우	제8조 및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1조				
		나. 보관시설 등 영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다. 그 밖에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59.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법 제76조 또는 시행규칙 제43조제17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	전제조 업무정지 15일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6개월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해당 품목 허가취소
	60. 약국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	경고	업무정지 3일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호				
	61.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9조제2항제1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62. 약사 또는 한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63. 약사 또는 한약사가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법 제79조제2항제2호	부표와 같음			
	64.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79조	경고	자격정지 3일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65.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6조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나. 의약품 도매상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	4.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법 제29조제4항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1	<p>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결과 또는 법 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p> <p>제19조 (정기심사)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③ 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정기심사의 주기·방법·절차 등에</p>	<p>가. 공장심사·사업장심사·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80% 미만 60% 이</p>	개선 명령	표시 정지 1개월	표시 정지 3개월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제20조 (시판품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p>	<p>상인 경우</p> <p>나. 공장심사 · 사업장심사 · 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60% 미만 40% 이상인 경우</p> <p>다. 공장심사 · 사업장심사 ·</p>		<p>표시 정지 1개월</p>	<p>표시 정지 3개월</p>	<p>표시 정지 6개월</p>	
			<p>표시 정지 3개월</p>	<p>표시 정지 6개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p>④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p>	<p>서비스심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총평점이 40% 미만인 경우</p> <p>라. 제품심사 또는 시판품조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p>				
			개선 명령	표시 정지 3개월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p>이하는 정 도가 법 제 17조 제1항 에 따른 인 증심사기준 에서 정한 경미한 결 함(표시 위 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p> <p>다. 제품심 사 또는 시판 품 조 사 결과 법 제12조 제 1 항 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 에 맞지</p>				
			표시 정지 3개월 및 판매 정지 3개월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아니 하는 정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에 해당되는 경우					
	마.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서비스)을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p> <p>사.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자체 제공한 서비스)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서비스)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p>					
			표시 정지 6개월 및 판매 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우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때  第25條 (品質維持 및 檢査) ① 石炭鑛業者 또는 石炭加工 業者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 는 石炭 또는 石炭加工製品 의 品質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基準에 맞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改正 1993.3. 6, 1997.12.13, 1999.2.8, 200 8.2.29>  ②石炭鑛業者 또는 石炭加工 業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品質分析試驗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 正 1993.3.6, 1997.12.13, 1999. 2.8,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가. 월별 검사평균열량 하한치에 미달되는 때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경 고	과징금부 과 또는 광업 정지 10일	과징금부 과 또는 광업 정지 1월
		나. 로트별 검사열량이 3,000kcal/kg에 미달되는 때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경 고	과징금부 과 또는 광업 정지 10일	과징금부 과 또는 광업 정지 1월
		다. 로트별 휘발분이 7%이상일 때(국내에서 생산된 석탄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경 고	과징금부 과 또는 광업 정지 10일	과징금부 과 또는 광업 정지 1월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規定에 의한 石炭 및 石炭加工 製品의 品質維持를 위하여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品質을 檢査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때		가. 누계벌점 21점이상 50점이하 또는 발열량 위반횟수 3회초과후 다시 벌점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때	경 고	-	-	-
			나. 누계벌점 50점초과 또는 발열량 위반횟수 5회초과후 다시 벌점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때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 정지 5일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 정지 7일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액화석유가스 사업 자등(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		법 제9조 제1항제15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된 때	법 제9조 제1항제2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다.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된 때	법 제9조 제1항제2호	인증표시 사용금지 2월	인증표시 사용금지 4월	인증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라.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로서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된 때	법 제9조 제1항제2호	인증 취소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마.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3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인증 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용 금지 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나.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③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행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제2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④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 제18조제1항제3 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⑦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법 제18조제1항제5 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③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6)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의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법 제25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9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6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8조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6항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조업 정지 60일	폐쇄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6) 법 제30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第22條 (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環境毀損 또는 自然生態系의 變化가 現存하거나 現存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16조 (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p>	<p>을 자주 초과하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lt;개정 1997.12.13, 1999.12.31&gt;</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23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5)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제 6 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	법 제32조 제5항·제6항	경 고	조치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p>	<p>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lt;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li> <li>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li> <li>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li> <li>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li> <li>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li> <li>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li> <li>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li> </ol>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p> <p>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p> <p>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 <p>나) 영 제19조에 따른 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9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p>	<p>법 제32조 제5항·제6항</p>	<p>경 고</p>	<p>조치명령</p>	<p>조업 정지 10일</p>	<p>조업 정지 30일</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3) 법 제34조제2항, 규칙 제28조제8항 및 별표 5에 따른 규격·표시방법,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규칙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반출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제34조 ②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병마개를 반출하고도 병마개반출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규칙 제28조 ⑧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 규칙 제28조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 고	지정 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개월	등록 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개월	등록 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	
	소음·진동규제법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법 제15조,	개선	개선	개선	조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1	<p>초과한 경우</p> <p>제 7 조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법 제16조	명령	명령	명령	정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p>2) 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p> <p>②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p>	법 제34조제2호	인증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선 또는 판매증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증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법 제36조제1항	개선 명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1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결과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법 제38조	개선 명령		
		나) 법 제36조제1항에	법 제38조	개선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p> <p>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p> <p>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p> <p>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p>	<p>다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및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p>		명령 및 사용 정지 2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p>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p>	<p>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p>	<p>법 제39조, 법 제40조</p>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조업 정지 10일
	<p>결합·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p>	<p>나)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p>	<p>법 제39조, 법 제40조</p>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2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p>5)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p>	<p>가) 측정기기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p>	<p>법 제38조의3제2항</p>	경 고	조치명령	조업 정지	조업 정지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2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경우			10일	30일
			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 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의3제2항	경 고	조치명령	조업 정지 1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4)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 정지 3개월	허가 취소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42조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	법 제42조	조업	허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정지 3개월	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5) 위 4)의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소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법 제42조	허가 취소			
영산강·섬진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5	(1)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결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5)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5항 또는 제7항	조업 정지10일	조업 정지30일	조업 정지60일	폐쇄명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개선	개선	영업	영업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제8호 · 제36조제8호	명령	명령	정지 1월	정지 6월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 제36조제8호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4조 (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6조제1항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개선 명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2)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처리기준 및 방법 중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나) 그 밖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다) 보관기준 및 ( 1 ) 방법을 위반한 폐 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허가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 호 나 간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 2 ) 그 밖 의 경 미 한 사 항 을 위 반 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 고	영업 정지 1개월
		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3)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 니한 경우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운반 또는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1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12)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구조·규격·재질·성능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가) 우수처리시설의 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우수처리시설을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3호	영업 정지3개월	영업 정지6개월	등록 취소	
		나)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3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다) 재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3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라) 기계·장비 등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	법 제54조제1항제13호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3호	1개월	3개월	6개월	
		마)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등록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p>3. 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p> <p>제24조 (영업정지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1.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p> <p>2.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p>	제25조 제2항 제3호	등록취소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항공법	4.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 제4호	설치허가 취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당해 시설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기간 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시·도지사는 대부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
도선법	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6.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별도선을 한 때 제18조 (도선)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5, 2005.12.29>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제9조 제5호	면허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도선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2 (차별도선금지) 도선사는 도선의 요청을 받은 선박의 입·출항순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차별도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파견검역·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지체 없이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	제36조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입국하는 즉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수산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p> <p>③ 수산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28조 (과건검역)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수입 수산동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과건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1.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국내에 수입하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자가 그 수산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p> <p>2.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동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p> <p>②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산업표준화법	<p><b>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b></p> <p>제19조 (정기심사)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p>	제22조 제2호	인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p><b>3.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b></p>	제34조 제3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⑤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b>4.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b></p> <p>제 4 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④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제 8 조 (승강기 안전인증)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p>	<p>제7조 제4호</p>	<p>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p>	<p>7. 제26조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p> <p>제26조 (관리·운영기록의 보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와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제17조 제1항 제7호</p>	<p>승인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p>
<p>폐기물관리법</p>	<p>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관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p> <p>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p>	<p>제27조 제2항 제11호</p>	<p>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p>



17. 관리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폐기물관리법</p>	<p>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p> <p>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제27조 제2항 제12호</p>	<p>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p>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p>	<p>제32조 (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5.3.31&gt;</p> <p>1.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p>	<p>제32조 (시정조치 등) 제1항 제1호</p>	<p>시정조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내지 제9항, 제24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p> <p>제 5 조 (전자문서의 활용)②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자문서의 효력 및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③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강요(특수한 표준 등의 이용으로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제 7 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 8 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9 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p> <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과정의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 및 대표자 성명</li> <li>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li> </ol>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p> <p>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p> <p>4. 사업자등록번호</p> <p>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p> <p>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당해 사이버몰에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p> <p>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p> <p>②사업자는 재화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li> <li>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li> <li>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 및 대표자 성명</li> <li>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li> <li>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번호·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li> </ol> <p>③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⑤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4조 (청약확인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p> <p>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④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p> <p>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p> <p>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 틀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p> <p>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p> <p>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③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중 환</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⑥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p> <p>⑦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⑧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p> <p>⑩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p> <p>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p> <p>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1.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p> <p>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p> <p>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p> <p>2. 공급받은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p> <p>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①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 내지 제18조의 규</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책임을 진다.</p> <p>③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p> <p>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p> <p>①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중에도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 철회등의 업무와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p> <p>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②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li> <li>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li> </ol>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p> <p>②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⑤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이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전단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⑨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제대금예</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치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②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②사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검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정보의 효율적인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p>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의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9조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①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한 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p>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농수산물유통 및	16.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2조	경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제2항제13호		10일	1개월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가.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5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당해품목 제조·수 입 및 판매정지 6월	당해 품목제조 ·수입 및 판매정지 1년
	나. 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허위로 표시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당해품목 등록취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48.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또는 “주의동물용의약품”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56조부터 제58조, 법 제65조, 『의료기기법』 제19조부터 제21조, 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 2항	경 고	해당품목 제조정지 7일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3. 국가검정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때	법 제53조, 규칙 제34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6.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56조 각 호·제58조 각 호 및 제65조 각 호, 『의료기기법』 제19조 각 호 및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문표시기재사항을 붙이지 아니한 때 나.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제조외자 및 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제품의 명칭,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 유효성분의 명칭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중량 또는 용량, 저장방법, 주의사항(휴약기간, 금기사항, 부작용) 중 일부를 기재 또는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	해당품목 제조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표시하지 아니한 때					
	다. 위 가목 및 나목 외에 법 제56조·제58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21조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	
	라.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제품의 명칭, 유효성분의 명칭 및 분량, 효능·효과 또는 제조업소의 상호 및 주소를 허위·과대 기재 또는 표시한 때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	해당품목 제조정지 6개월	
	마.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용법·용량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한 때		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	
	바. 위 각 목 외에 법 제57조·제59조·제65조, 『의료기기법』 제20조·제22조 및 규칙 제43조에 위반하		경고	해당품목 제조정지 15일	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여 기재한 때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제2항 제6호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1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3월	영업소폐쇄	
	第14條 (보증표시 및 販賣管理)					
	②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肥料를 讓渡·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3.31, 2003.3.19, 2003.12.11, 2007.8.3>	법 제20조제2항제6호	경고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1월	당해 명칭의 비료영업 정지 3월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肥料	(가) 1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영업정지 1월, 당해 제품회수·양도금지	영업정지 2월, 당해 제품회수·양도금지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양도금지	
2. 肥料의 容器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肥料	(나) 10퍼센트 이상	법 제20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폐기	영업소폐쇄, 당해 제품회수·폐기		
3. 公定規格에 정하여진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	법 제20조제2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有害成分 最大含有量을 초과한 肥料 4. 肥料의 容器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誤認하기 쉬운 표시를 한 肥料 5. 公定規格에서 정하는 原料외의 物質을 사용하여 製造한 肥料 6.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외의 者가 生産 또는 輸入한 肥料 7.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호				
		(5)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수입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법 제20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 3월, 당해 제품회수·폐기 영업소폐쇄, 당해 제품회수·폐기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8.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	가.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전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의 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된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23조제4호	시정명령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다. 인체 또는 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된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전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라. 동물 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영업의 전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마.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료를 사용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일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등록취소		
		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영업의	영업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한 사료를 사용한 때		일부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	일부정지 3월과 당해 제품폐기	일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사.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4호	영업의 일부정지 6월과 당해 제품폐기	등록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마. 종·묘생산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 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 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 (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	(1) 10퍼센트 미만을 표시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 호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등록 취소	
		(2) 10퍼센트 이상 30퍼센 트 미만을 표시하지 아니 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 호	영업정지 2년	등록 취소		
		(3) 30퍼센트 이상 표시하 지 아니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 호	등록 취소			
		(4) 품질표시를 허위로한 때	법 제16조제3항제5 호	등록 취소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p>다. 당해 양곡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p> <p>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p>	법 제9조의2	3개월	6개월	1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표시·광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라.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4 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마.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20조의3 (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법 제21조제1항제5 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사.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7 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p>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第16條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 &lt;개정 2001.1.29&gt;)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消費者에게 올바른 購買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lt;改正 2000.1.21, 2001.1.29, 2008.2.29&gt;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임을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법 제21조제1항제8 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p>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第17條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第15條第1項 및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하도록 한 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p>	법 제21조제1항제9 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하여서는 아니된다. &lt;개정 2001.1.29, 2008.6.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原產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混同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li> <li>2. 原產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混同하게 할 目的으로 그 표시를 損傷·변경하는 행위</li> <li>3. 原産地를 偽裝하여 販賣하거나, 原産地의 표시를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에 다른 農産物 또는 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li> <li>4. 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를 한 農産物에 다른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li> </ol>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3	<p>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p> <p>第15條 (人蔘類의 製造基準등&lt;개정 2001.1.26&gt;)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p>	법 제16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1. 표시의 내용이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 변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10. 법 제18조제1항 위반 제18조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 ①영업자는 건강 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 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 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3.21>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 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 용의 표시·광고	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때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제조업> 품목류 제조정지 2월	<제조업> 영업정지 2월	<제조업> 영업정지 3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1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2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3월	
	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때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제조업> 품목제조 정지 2월	<제조업> 영업정지 2월	<제조업> 영업정지 3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1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2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3월		
	다. 소비자를 기만하	법 제32조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때	및 법 제33조	품목제조 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1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2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3월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의 표시·광고를 한 때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제조업> 품목제조 정지 2월	<제조업> 영업정지 2월	<제조업> 영업정지 3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1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2월	<수입업· 판매업> 영업정지 3월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마.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때. 다만, 같은 위반사항으로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처분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12.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한 때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32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0.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제12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11.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법 제18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국내: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련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12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② 결 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제11호	1월	3월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6) 법 제6조제1항(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제 6 조 (안전인증의 표시) ①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4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 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6호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1월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3월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6월	안전 인증 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 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3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 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표시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6호	개선 명령	안전 검사 표시 사용 금지	안전 인증 취소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개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p>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p> <p>제 6 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p> <p>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시</p> <p>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p>	법 제9조 제1항제8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금지 2월	인증 취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p>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p>	법 제18조제1항제7 호	개선 명령	인증 표시 사용	인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1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금지 2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19.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법 제63조 영 제81조	효력 정지 15일	효력 정지 3월	효력 정지 6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제조업자) 20. 간판 그 밖의 표지 미게시	법 제64조	경고	효력 정지 15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품질인증을 영위한 때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법 제25조제1항제6 호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허가 취소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폐쇄된 경우 5.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6.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중(公衆)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7.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8.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10) 법 제40조	가) 먹는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	법	영업	영업	영업	허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9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등록된 사항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제48조제1항제5호	정지 15일	정지 1개월	정지 3개월	또는 등록 취소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4)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거나 의약 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나) 정수 기의 경 우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 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 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4)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 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 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 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일반세균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4개월
			(5) 먹는샘물의 제조방법·보존방법·유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일	1개월	3개월	취소
			(6)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주성분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 취소	
			(2) 주성분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 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 4. 관계 공무원이 영업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 제 5 조 (먹는물의 수질 관리) ③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기준과 규격)		(3)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4)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5)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2)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①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p>	<p>(3)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법 제48조제1항제11호</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영업 정지 3개월</p>	<p>영업 정지 6개월</p>
		<p>(4) 그 밖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48조제1항제11호</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영업 정지 3개월</p>	<p>영업 정지 6개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법 제53조제3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제4항	저감시설 설치 명령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 제53조제4항	저감시설 개선 명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8)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3.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관련 표시·광고 등을 한 자  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2월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②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전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등 후원수당의 지급현황에 관한 정보를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p> <p>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2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내용을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자</p> <p>제33조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②특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주세법	<p>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p> <p>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때</p> <p>제44조 (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p>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p> <p>제12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p>	제18조 제1항 제10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p>	<p>자.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p> <p>제14조 (광고) ①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는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의한 광고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2.29&gt;</p>	<p>제44조 제1항 제1호 자목</p>	<p>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p>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p>	<p>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p> <p>제14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p>	<p>제24조 제1항 제2호</p>	<p>영업정지6월 또는 등록 취소</p>
<p>의료법</p>	<p>7.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p> <p>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의료법인·의료기관</p>	<p>제66조 제1항 제7호</p>	<p>자격정지 1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li> <li>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li> <li>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li> <li>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li> <li>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li> <li>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li> <li>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li> <li>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li> <li>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li> </ol>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p> <p>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p> <p>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li> <li>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li> </ol> <p>제57조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p>	<p><b>3.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b></p> <p>제28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의 표시가 된 제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p>	<p>제29조 제1항 제3호</p>	<p>인증취소 (취소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시정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p>	<p><b>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한 경우</b></p> <p>제24조 (표시)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 제1항 제5호</p>	<p>승인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p>
<p>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p>	<p><b>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b></p>	<p>제13조 제3호</p>	<p>인증취소 (취소할 수 있다.)</p>

18. 표시기준 위반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12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인증기관은 인증의 표시가 된 지능형 로봇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 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 생산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인증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먹는물관리법</p>	<p>2.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판매한 경우</p> <p>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lt;개정 2008.3.21&gt;</p> <p>4.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은 제외한다.</p>	<p>제48조 제1항 제2호</p>	<p>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p>
<p>먹는물 관리법</p>	<p>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p>	<p>제48조 제1항 제5호</p>	<p>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7조 (품질관리인)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8조 (품질관리교육 &lt;개정 2008.3.21&gt;)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9조 (건강진단)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8.3.21&gt;</p> <p>제30조 (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③ 제9조에 따라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계측기)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먹는물 관리법	8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를 먹는샘물의 용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부담금 증명표지)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출고하는 먹는샘물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나 면제 대상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제1항 제8의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제 9 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제10조 제2호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7.5.25&gt;</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p>		



###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제82조 (영업정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제1항제1호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000만원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의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p>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p> <p>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p> <p>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⑤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p> <p>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p> <p>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p> <p>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p>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p> <p>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p> <p>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p> <p>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p> <p>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p> <p>1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때</p> <p>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에 위반한 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삭제 <2004.12.31>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	법 제82조제1항 제4호	영업정지 3개월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p>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p> <p>제81조 (시정명령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6.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p>	또는 과징금 3000만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8.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p> <p>나. 가목 외의 경우</p> <p>제81조 (시정명령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1. 삭제 &lt;1999.4.15&gt;</p> <p>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p>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아니한 때</p> <p>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4. 삭제 &lt;2004.12.31&gt;</p> <p>5. 제22조제5항·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p> <p>7.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p>	<p>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① 국토해양부장</p>	<p>법 제82조제1항제5 호 가목</p>	<p>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p> <p>②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p>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36조의17 (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법 제82조제1항제5 호 마목</p>	<p>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p>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아.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8호	인증 사용중지 1개월	인증 사용중지 3개월	인증 사용중지 6개월	인증취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8	6.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자격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4. 2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28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2. 수의사가 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수의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32조제1항제3 호	면허취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표시변경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표시변경의 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표시정지 45일	표시정지 60일	표시정지 90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5.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판매정 지의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인증취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자격정지처분기간 내에 자 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취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종자관리사자격과 관련하여 1회 이중취업을 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1	종자관리사자격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이중취업을 한 경우		자격취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20. 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때	법 제32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영업소 폐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9]	2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32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11.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4조제1항제6 호	영업정지 1~3개월	영업정지 4~6개월	영업정지 7~12개 월	폐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8.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28조제1항제8 호	등록취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2	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 호	등록 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 5. 제조총포·분사기·전자충 격기·석궁을 검사받지 아니 하고 판매한 때	법 제45조 (법 제42조)	1회위반	효력 정지 6월			
	2회위반		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 6.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품양도	법 제45조 (법 제21조)	1회 위반	효력 정지 3월			
			2회 위반	효력 정지 6월			
			3회 위반	취소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표17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 8.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법 제45조	1회위반	경고			
			2회위반	효력 정지 1달			
			3회위반	효력 정지 6달			
			4회위반	취소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2. 1년에 3회 이상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때	법 제28조	등록 취소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3. 법 제2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	가. 3회 거 부 한 때	법 제28조	경 고		
		나. 4회 거 부 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다. 5회 이 상 거 부 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2월		
	제26조 (기상사업의 등록)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5.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가. 3회 거부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나. 4회 거부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2월			
		다. 5회 이상 거부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3월			
	제29조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 ①기상청장은 감독 또는 지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그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기상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5) 1년에 3회 이상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5호·제36조제5호	영업 정지 1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3. 법 제42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는 행위를 한 자	을 한 경우					
	제42조 (시정조치) ④공정거래위원회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가 반복되거나 시 정조치에 따른 이 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 라 1년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영 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 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 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 서류</p> <p>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p> <p>5. 재고관리·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p> <p>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할 수 없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p> <p>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p> <p>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p> <p>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2.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p>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p> <p>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이었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p>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3. 제34조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p> <p>제3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p> <p>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고등교육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제62조 (학교등의 폐쇄) 제1항	학교 폐쇄 명령
기상법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1년에 3회 이상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1년에 3회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28조 (등록의 취소 등) 제2호, 제3호, 제5호	등록 취소, 3월 이내 사업 정지 명령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5.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기상법	<p>③기상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31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3인 이상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상근자 1인 이상을 확보할 것</li> <li>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배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li> <li>3. 비영리법인일 것</li> <li>4.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li> </ol>	제31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제3항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취소
기상법	④기상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5조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6월 이내 업무 정지 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2. 교육·훈련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및 기상사업자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4항 제2호</p>	
<p>초·중등교육법</p>	<p>①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p>	<p>제65조 (학교등의 폐쇄) 제1항 제2호</p>	<p>학교 폐쇄 명령</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건축사법</p>	<p>5. 당해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3회받은 때                      제28조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lt;개정 2000.1.28&gt;)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1996.12.30, 2000.1.28, 2001.8.14,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li> <li>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li> <li>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li> <li>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li> <li>5. 년 2회 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된 때</li> </ol>	<p>제11조 제5호</p>	<p>자격취소</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삭제 <1999.2.5>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삭제 <2000.1.28>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 제1항 제8호	등록취소
교통안전법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3조 제2호	등록취소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	제39조 제3호	인증취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6.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제20조 (금지행위) ① 부동산개발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7.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25조 제6·7호	등록취소
자동차관리법	4. 등록번호판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5.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하여 이를 제작·교부한 때	제21조 제2항 제4·5호	지정취소 또는 6월 이내이 사업정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제1항 제4호	지정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활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세법	2. 1년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특허 취소
주세법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면허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주류를 제조한 때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을 위반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의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7. 주세를 포탈한 때 8. 주류의 규격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 9.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쇄조치등) ①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폐쇄조치등) 제1항	폐쇄조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다. 제1호 가목·카목·버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카.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합하지 아니하거나 봉합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제 9 조 (수수 등의 제한)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제1항 제2호 다목	허가 또는 지정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품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라. 제1호 사목·아목·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사.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제 9 조 (수수 등의 제한) ③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다른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 라목	허가 또는 지정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상 손실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제44조 제1항 제2호 마목	허가 또는 지정취소
의료법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제65조 제2호	면허취소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장애인 복지법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70조 제2호	영업장 폐쇄
장애인 복지법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제77조 (자격정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제76조 제3호	자격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	<p>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p> <p>제72조 (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개정 2007.7.27&gt;</p> <p>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제20조 (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7.7.27&gt;</p>	제22조 제2호	허가 또는 등록취소
먹는물 관리법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17조 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소음·진동 규제법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43조 제4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64조 제2항 제2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제8조 제1항 제19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해당하게 된 때</p> <p>제 8 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때</li> <li>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또는 동항 본문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li> <li>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li> </ol>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 7.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8. 제1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때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0.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		

19. 위반행위 반복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4.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7.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 (시정조치 등) 제4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34조 (과징금) 제1호	과징금부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32조 (시정조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 20. 출입·조사 방해 및 거부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삭도·퀘도법 시행규칙 별표1	4. 보고	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10 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사업정지 90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	라.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 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 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 한규칙 별표	나. 공무원의 장부 또는 서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랑의 심사나 검사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법 제72조제 2항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3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60일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90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 건강진단 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제24조제1항제5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차.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기피한 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9. 유해·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관련)	다. 특정인에 대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 를 거부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2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 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2항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 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법 82조 제5항제9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9.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동물약국, 동물병원의 개설자·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 기기 판매(임대)업자·수리업자가 법 제69조제1항 「 의료기기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69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28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16.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정선·승선·서류조사 등에		법 제13조	정지 60일	취소	-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협조하지 아니한 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	4.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 9 조(제조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  나.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법 제23조제5호	영업의 전부정지 1월	영업의 전부정지 3월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없이 업무 수행상 필요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1월	3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1.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3조	경고	경고	취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p>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第27條 (監督)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糧穀의 所有者·糧穀賣買業者·糧穀加工業者, 糧穀을 輸出·輸入·보관 또는 輸送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서류, 시설 및 양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법 제9조의2	3개월	6개월	1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바.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 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3.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6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8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안마사에 관한 규칙[별표2]	8.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9조 및 법 제64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이하	영업정지 1~2개월	영업정지 2~3개월	폐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11조 (감독)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3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상담소·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 취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장부등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29조제2호	경고	경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제28조 (감독)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폐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1항제13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2)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3)에 해당한 때	법 제13조제2항제7 호	사업 정지 3월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9)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석유정제업자  제25조 (품질검사)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 및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	법 제13조제1항제9 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3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8)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9)에 해당하는 때 - 석유수출입업자	법 제13조제2항제7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3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9)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9)에 해당하는 때 - 석유판매업자	법 제13조제3항제8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3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第25條 (品質維持 및 檢査) ①石炭鑛業者 또는 石炭加工業者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石炭 또는 石炭加工製品의 品質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基準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고	과징금부과 또는 광업 정지 10일	과징금부과 또는 광업 정지 1월	광업 정지 3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③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品質維持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品質을 檢査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시행규칙 별표1	5.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第25條 (品質維持 및 檢査) ①石炭鑛業者 또는 石炭加工業者는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石炭 또는 石炭加工製品의 品質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基準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石炭 및 石炭加工製品의 品質維持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品質을 檢査할 수 있다.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 고	과징금부 과 또는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5일	등록 취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5	(3)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제3항(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제 4 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	법 제7조제3호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1월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3월	안전 인증 표시 사용 금지 6월	안전 인증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의4</p>	<p>4.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p> <p>第13條 (昇降機의 檢査)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昇降機의 管理主體에 대하여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檢査有效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lt;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1.3, 2008.2.29&gt;</p> <p>1. 完成檢査: 建築物 기타 工作物에 昇降機의 設置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p> <p>2.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p>	<p>법 제15조의2제1항 제4호</p>	<p>검사업 무 일부정지 1월</p>	<p>검사업 무 일부정지 3월</p>	<p>지정취소</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3. 隨時檢査:사용중인 昇降機의 용도·制御方式·定格速度·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는 이를 運行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運行하기 위하여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아야 한다. &lt;신설 1999.2.5&gt;</p> <p>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檢査를 延期할 수 있다. &lt;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8.2.29&gt;</p> <p>④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項目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법 제5조의 2제3호	인증 업무 일부 정지 1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3월	인증 업무 일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3호	안전 검사 표시 사용 금지 6개월	안전 인증 취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1월	업무 일부 정지 3월	업무 일부 정지 6월	지정 취소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9조 제1항제4호	인증취소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라.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제14조 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 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 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8조제1항제4 호	인증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5	24.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 때	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10호	7일이하 운영정지	7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3월이하 운영정지	등록취소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10호	7일이하 운영정지	7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3월이하 운영정지	지정취소 · 등록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p> <p>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p>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4. 정당한 사유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 7조 제 3항 제 4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6)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1)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0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기상법 시행규칙 별표1	5.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때  제29조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 ①기상청장은 감독 또는 지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그 업무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기상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있다.	가. 3회 거부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1월		
		나. 4회 거부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2월		
		다. 5회 이상 거부한 때	법 제28조	사업 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4) 1년에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	등록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9) 1년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가) 3회	법 제73조	업무 정지 1개월			
		나) 4회	법 제73조	업무 정지 3개월			
		다) 5회 이상	법 제73조	업무 정지 6개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5) 1년에 2회 이상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7)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0호	영업 정지 3개월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42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샘플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8.3.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li> <li>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li> <li>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收去)하는 것</li> <li>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li> </ol> <p>②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당해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6조제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12)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5호	경고	영업 정지1개월	영업 정지3개월	영업 정지6개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5)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 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	(1) 1년에 2회 이상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가) 2회	법 제18조제5항	영업 정지 1월			
		(나) 3회이상	법 제18조제5항	영업 정지 3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p>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28조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①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 (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사업권유거래에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1. 계속거래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계속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다른 재화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포함한다)이나 사업권유거래를</p>	법 제42조제4항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p>통하여 판매하는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p> <p>3.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p> <p>4. 재화등의 거래 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p> <p>5.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사업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6.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p> <p>7. 소비자 피해보상·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p> <p>8. 거래에 관한 약관</p> <p>9. 그 밖에 거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p> <p>②제7조제3항의 규정은 계속거래업자등이 미성년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③계속거래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관세법	<p>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p>	<p>재심사</p>
<p>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p>	<p>①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3.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gt;</p> <p>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p>	<p>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p>	<p>시정명령 및 징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대행회사 3. 삭제 <2007.8.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외국환거래법</p>	<p>②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6. 제20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제20조 (보고·검사)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⑥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제12조 (인가의 취소 등)</p>	<p>6개월 업무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도선법	<p>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요청을 거절한 때 제18조 (도선) ②도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lt;개정 199 5.1.5, 2005.1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li> <li>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li> <li>3. 당해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li> </ol>	제9조 제5호	취소
선박평형수관리법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5.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신청을 거부한 경우</p>	제19조 제3항 제5호	취소, 업무정지
전파법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33조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제72조 제1항 제5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거나 방해한 경우</p> <p>제24조 (검사 &lt;개정 2007.12.21&gt;)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6.13&gt;</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lt;개정 2008.6.13&gt;</p>		
전파법	<p>6.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p> <p>제25조 (무선국의 운용 &lt;개정 2007.12.21&gt;) ①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6.13&gt;</p>	제72조 제1항 제6호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4.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제14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민건강보험법	2. 제8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85조 제2호	업무정지1년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84조 (보고와 검사)</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p>	<p>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p> <p>제12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lt;개정 2008.3.28&gt;)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로 인한 상실</li> <li>2. 분실 또는 도난</li> </ol>	<p>제44조 제1항 제1호 아목</p>	<p>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3. 변질·부패 또는 파손</p> <p>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lt;신설 2008.3.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li> <li>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li> <li>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li> </ol>		
<p>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p>	<p>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p> <p>제41조 (출입·검사와 수거)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p>	<p>제44조 제1항 제1호 버목</p>	<p>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 설비·업무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2.12.26, 2008.2.29&gt;</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사회복지사업법</p>	<p>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p> <p>제51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제40조 제1항 제7호</p>	<p>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p>
<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p>	<p>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질문·수거에 불응한 때</p>	<p>제40조 제1항 제4호</p>	<p>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38조 (보고와 조사 등)</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감독기관 또는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의료급여법</p>	<p>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p> <p>제32조 (보고 및 검사)</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p>	<p>제28조 제1항 제3호</p>	<p>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기관)</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의료급여법	<p>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제32조 (보고 및 검사)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제28조 제2항 제3호	지정취소 (제3차의료급여기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p>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경우</p> <p>제23조 (보고·조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p>	제25조 제1항 제2호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은 행 등의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p>	<p>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p> <p>제18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제19조 제1항 제3호</p>	<p>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6월</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1.2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때</p> <p>제28조 (보고·조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6.9.27, 2008.2.29&gt;</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등의 관계서류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제30조 제1항 제3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1년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업무의 정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한 때	제30조 제2항 제4호	업무정지 3년 (뇌사판정업무의 정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28조 (보고·조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6.9.27, 2008.2.29&gt;</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등의 관계서류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p>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한 경우</p> <p>제28조 (보고·조사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또는</p>	제30조 제3항 제2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뇌사판정대상자관리업무의 정지)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6.9.27, 2008.2.29&gt;</p> <p>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등의 관계서류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장애인 복지법</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p> <p>제61조 (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제62조 제2호</p>	<p>사업의 정지, 폐쇄 등</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재해구호법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제22조 (검사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제6호	허가취소
전업병예방법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40조의5 (서류의 제출·검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	제40조의 8 제3호	영업정지6월 영업장 폐쇄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 2.29&gt;</p> <p>②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p>		
<p>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b>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b></p> <p>제28조 (감독)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29조 제2호</p>	<p>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시설 폐쇄</p>
<p>한부모가족지원법</p>	<p><b>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b></p> <p>제23조 (감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p>	<p>제3호</p>	<p>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 폐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4. <b>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b>	제21조 제2항 제3호	그 <b>지정을 취소</b>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b>업무의 정지</b> 또는 <b>제한</b> 을 명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5. <b>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b>	제22조 제5호	그 <b>지정을 취소</b> 하거나 1년 이내의 <u>기간</u> 을 정하여 <b>해당 업무의 전부</b> 또는 <b>일부의 정지</b> 를 명할 수 있다.
산업표준화법	4. <b>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b>  제20조 (시판품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 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	제22조 제4호	인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사항)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8.2.29&gt;</p> <p>④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p><b>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b></p> <p>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③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④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제34조 제2호	<p><b>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b></p>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p><b>1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b></p> <p>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p>	제34조 제10호	<p><b>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b></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b>3.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제3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b></p> <p>제 4 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③제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부품제조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제 8 조 (승강기 안전인증)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p>	<p>제7조 제3호</p>	<p>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 6 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b>4.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b></p> <p>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제33조 제4호	<p>그 <u>지정을 취소</u>하거나 <u>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제3호	그 <b>지정을 취소</b> 하거나 <u>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u> 를 명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제26조 제5호	그 <b>등록을 취소</b> 하거나 이 법에 따른 <b>지원을 중단</b> 할 수 있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염관리법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제10조의2 제6호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u>6개월 이내의 기간</u> 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6조 (보고 및 검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	제17조 제1항 제9호	승인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 또는 생산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 위해성평가기관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 5.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제25조에 따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		
유통산업발전법	2. <b>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b>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그 <b>지정</b> 을 취소하거나 <u>1년 이내의 기간</u> 을 정하여 <b>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b>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5. <b>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b>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제79조 제5호	지정취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li> <li>2. 학원등 설립·운영자</li> <li>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li> </ol>		
<p>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10.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제41조 (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농림수산물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li> <li>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li> <li>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li> <li>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li> <li>5.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li> </ol>	<p>제32조 제1항 제10호</p>	<p>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환경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먹는물 관리법</p>	<p>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p>	<p>제48조 제1항 제5호</p>	<p>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또한 같다.</p> <p>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7조 (품질관리인) ①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인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또는 정수기 제조업자가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28조 (품질관리교육 &lt;개정 2008.3.21&gt;)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에게도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9조 (건강진단)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08.3.21&gt;</p> <p>제30조 (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③ 제9조에 따</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라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계측기)를 설치·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①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p>		
먹는물 관리법	<p>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p> <p>제42조 (출입·검사·수거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p>	제48조 제1항 제10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시·도지사는 샘플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08.3.2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제 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는 것</li> <li>2.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하는 것</li> <li>3. 제2호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수거)하는 것</li> <li>4. 관계 공무원이 영업 관계의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것</li> </ol> <p>②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폐기물관리법	<p>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p> <p>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1.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p> <p>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를 말한다)</p>	제27조 제2항 제4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하수도법	<p>13.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제69조 (보고·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p>	제49조 제13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li> <li>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li> <li>3. 분뇨수집·운반업자</li> <li>4.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li> <li>5. 처리시설제조업자</li> <li>6. 처리시설관리업자</li> </ol>		
하수도법	<p>15.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제69조 (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p>	제54조 제1항 제15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li> <li>2.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li> <li>3. 분뇨수집·운반업자</li> <li>4.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li> <li>5. 처리시설제조업자</li> <li>6. 처리시설관리업자</li> </ol>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14.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제17조 (주무관청의 권한 및 사찰대상자의 권리등) ④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제8조 제1항 제14호</p>	<p>허가취소 제조정지 3월</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p>	<p>1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제8조 제1항 제15호</p>	<p>허가취소 제조정지 3월</p>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제18조 (행정감독) ①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기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 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6.4.28&gt;</p> <p>②사찰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13.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제18조의2 (정기 및 수시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현황</p> <p>2.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현황</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 안에</p>	<p>제8조의 2 제1항 제13호</p>	<p>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li> <li>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li> </ol>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대상·기준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p>		

##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4월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별표1	4. 보고	가.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법 제16조제1항제10호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산업안전보건법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제34조 (안전인증)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		제34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	안전인증 취소 6개월 이내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명령 개선명령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부장관은 측정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한 경우	제7조의2 (측정대행자의 지정 취소)	지정 취소 6월 이내 업무 정지 명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3.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제38조 (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자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허가 취소 6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등을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경 고	사업정지 1월	등록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2)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1조(보고 및 검사)를 위반한 때	법 제36조 제1항	(가)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인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월	사업정지 3월	
			(다)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6.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등을 허위로 기재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2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7. 법 제41조 (보고 및 검사) 위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이 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10.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2를 위반한 때	○근로자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 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누락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국외공급근로자에게 동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때		경 고	사업정지 1월	허가취소	
		○국외공급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등 국외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 킨 때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허가취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24조제1항제1 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8. 건강진단 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제2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적지 아니하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의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1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0	(23) 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산업안전보건법	7. 작업환경측	마. 작업환경측정관(1) 수치를 조작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 정 취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20	정기관(법 제42조관련)	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한 때 (2)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		3월 업무정지 1월	6월 업무정지 3월	소 업무정지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8.건강진단기관 (법 제43조관련)	사.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1)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2)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	10.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관련)	마. 안전·보건진단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2)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0	14.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10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10.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재평가대상 동물용 의약품등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역원장이 지시한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42조, 『의료기기법』 제9조·제14조제5항	해당품목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표시, 기재 및 수거·폐기조치는 제외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3	58. 동물용 의약품등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 실적의 보고와 그 밖에 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38조, 『의료기기법』 제12조·제14조, 규칙 제26조제1항	경 고	제조정지 7일	제조정지 1개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14.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획일자별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종별 어획실적을 기록·유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허위로 한 때	법 13조제	정지30일	정지60일	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4.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제4 호	자격정지 3년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2	5. 수의사가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법 제32조제2항제2 호	면허효력 정지 6월	면허효력 정지 9월	면허효력 정지 12월	
			허가 또는		해기사면허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신고어업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0	26. 어업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75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11조 (감독) ①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3호	경 고	업무 정지 3월		상담소·교육훈련 시설의 폐지 또는 보호 시설의 인가 취소			
성매매방지 및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경고	업무	업무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16조 (지도·감독) ①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2호		정지 15일	정지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장부등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제28조 (감독)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2호	경 고	경 고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 폐쇄	
도시가스사업법	6.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사업	사업	사업	허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1의2		제41조제1항·제2항	정지 또는 제한 (3일)	정지 또는 제한 (10일)	정지 또는 제한 (30일)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8)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25조 (품질검사)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법 제28조제1항제7호	업무 정지 3월	업무 정지 6월	지정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6)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25조 (품질검사)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	법 제28조제2항제5호	업무 정지 1월	업무 정지 3월	승인 취소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1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0	며.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2호	사업 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 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	학원	법 제113조	7일	7일초과	15일초과	1월초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별표35	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제1항제9호	이하 운영 정지	~ 15일이하 운영정지	~ 1월이하 운영정지	~ 2월이하 운영정지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학원	법 제113조 제1항제9호	7일 이하 운영 정지	7일초과 ~ 15일이하 운영정지	15일초과 ~ 1월이하 운영정지	1월초과 ~ 2월이하 운영정지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5. 허위로 검사하거나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 7조 제 3항 제 4호	등록 취소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1의2	6.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 7 조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전문검사 실적 및 검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 7조 제 3항 제 5호	영업 정지 6월	등록 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16)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6호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0	경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행규칙 별표5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p>(6)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에 자료나 정보를 전송한 때</p> <p>제19조 ②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p>	법 제25조제1항제6호	경 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3월	영업 정지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p>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p> <p>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p>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4)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가)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나)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다)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36조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야 한다.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경 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14)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7호	경 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제22조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 수량,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샘물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정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4)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 등을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경 고	조업 정지 10일	조업 정지 3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나)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다)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1호	경 고	경 고	조업 정지 5일	조업 정지 1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2	13)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법 제64조	경고	경고	영업 정지 10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7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9조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5일	1월	3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8)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법 제27조제8호·제3 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2)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법 제27조제8호·제3 6조제8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월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2) 법 제11조제4항,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3조의6 제3항제3호	경고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20일	업무 정지 30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3조의6 제3항제5호	경고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20일	업무 정지 30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2	(14)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법 제23조의6 제3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20일	업무 정지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3) 법 제18조제3항·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 고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0	13)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허가 취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5	12)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법 제54조제1항제15	경고	영업 정지1개	영업 정지3개	영업 정지6개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호		월	월	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	(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6월	등록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p>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p> <p>제 6 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lt;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gt;</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p>	법 제20조 제1항	경고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취소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2.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사립학교법 제48조 (보고징수등)</p>	<p>제48조 (보고징수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lt;개정 1964.11.10, 1990.4.7&gt;</p>		<p>보고서 제출 명령</p>
<p>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p>	<p>①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2. 이 법에 의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p> <p>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gt;</p> <p>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p> <p>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p>	<p>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p>	<p>시정명령 및 징계</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3. 삭제 <2007.8.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물품관리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	제46조 (손망실처리)	변상명령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p> <p>제19조 (재물조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lt;개정 1995.12.29, 1999.12.31&gt;</p> <p>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감사원의 판정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당해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의 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당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6.10.4&gt;</p>		
부가가치세법	<p>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p> <p>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p>	제21조 (결정 및 경정)	경정
부가가치세법	<p>④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p>	제22조 (가산세)	1000분의 5에 가산세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신설 1993.12.31,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6.12.30&gt;</p> <p>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p> <p>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3.12.31, 1</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994.12.22, 2007.12.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li> <li>2. 거래기간</li> <li>3. 작성일자</li> <li>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②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lt;개정 1993.12.31, 1994.12.22&gt;</p>		
상속세 및 증여세법	<p>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p>	<p>시정명령</p>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차대조표</li> <li>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li> <li>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li> <li>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제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li> <li>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③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	제78조 (가산세등)	가산세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p> <p>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금액 불산입등) ⑤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여신전문금융업법	<p>②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p> <p>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①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등록취소
외국환거래법	<p>②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p>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6개월 업무정지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5.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p> <p>제20조 (보고·검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외국환거래법	<p>②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p> <p>제20조 (보고·검사) ④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6개월 업무정지
외국환거래법	<p>②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8.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p>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6개월 업무정지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우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활용 또는 제공한 경우</p> <p>제21조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은행총재·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호간에 교환·활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05.12.14, 2008.2.29&gt;</p> <p>1.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 또는 수입에</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관한 사항 2.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4.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소득세법	①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 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 한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 2007.12.31>) ①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81조 (가산세)	가산세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gt;</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4의2. 연금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제 <2000.12.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제1항 각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다. &lt;개정 2003.12.30, 2005.12.31, 2007.12.31&gt;</p> <p>④국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3.12.30, 2007.12.31&gt;</p> <p>⑤삭제 &lt;1995.12.29&gt;</p> <p>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7.12.31&gt;</p> <p>⑦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06.12.30, 2007.12.31&gt;</p> <p>⑧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지급명</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lt;개정 2007.12.31&gt;</p> <p>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⑩국세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금액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lt;신설 2006.12.30, 2007.12.31&gt;</p> <p>⑪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6.12.30, 2007.12.31&gt;</p> <p>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lt;개정 2007.12.31&gt;)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p>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1.12.31, 2003.12.30, 2007.12.31&gt;</p> <p>②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7.12.31&gt;</p>		
수산업법	<p>①행정관청은 제36조제1항제7호·제8호(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3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07.7.27, 2008.2.29&gt;</p> <p>7.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을 위반하거</p>	제89조 제1항	과징금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p> <p>8.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p> <p>제50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lt;개정 2007.7.27&gt;</p> <p>3. 제49조를 위반하거나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제37조제1호, 제47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p> <p>4.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p> <p>5.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p>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p>13.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제18조 제1항 제13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노인복지법	<p>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p> <p>제42조 (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9.2.8, 2007.8.3&gt;</p>	제43조 제1항 제3호	<p>사업정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1999.2.8, 2008.2.29&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노인복지법	<p>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p> <p>제42조 (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1999.2.8, 2007.8.3&gt;</p>	제43조 제2항 제3호	사업정지 또는 폐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1999.2.8, 2008.2.29&gt;</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p>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p> <p>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li> <li>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li> </ol>	37조 제1항 제5호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61조 (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요양보험가입자</li> <li>2. 피부양자</li> <li>3. 의료급여수급권자</li> </ol> <p>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요양기관</li> <li>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li> </ol>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p>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p>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p> <p>제51조 (지도·감독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제40조 제1항 제6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p>2.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p> <p>제28조 (감독)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제29조 제2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시설 폐쇄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p><b>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b></p> <p>제23조 (감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제23조 제3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 폐쇄
산업발전법	<p><b>4.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또는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b></p>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록취소 (취소할 수 있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b>5.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b></p> <p>제 4 조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및 검사) ④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제7조 제5호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8조 (승강기 안전인증)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p> <p><b>6. 제6조제1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b></p> <p>제 6 조 (안전인증의 표시) ①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제 8 조 (승강기 안전인증) ③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p>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b>4.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b></p> <p>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제33조 제4호	<p>그 <u>지정을 취소</u>하거나 <u>2년 이내의 기간</u>을 정하여 그 <u>업무의 정지</u>를 명할 수 있다.</p>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p><b>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b></p>	제26조 제6호	<p>그 <u>등록을 취소</u>하거나 이 법에 따른 <u>지원을 중단</u>할 수 있다.</p>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p><b>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b></p> <p>제36조 (보고 및 검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p>	제17조 제1항 제9호	승인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사업장·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 또는 생산신고를 한 자</li> <li>2.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li> <li>3. 위해성평가기관</li> <li>4. 위해성심사대행기관</li> <li>5.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li> <li>6. 제25조에 따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li> </ol>		
<p>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p>	<p><b>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b></p> <p>제19조 (보고)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무역조정계획의</p>	<p>제17조 제1항 제5호</p>	<p>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취소시 필수적 청문 사항)*관련법조항 7-15참조</p>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도로교통법	<p>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때</p> <p>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li> <li>2. 학원등 설립·운영자</li> <li>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li> </ol>	제79조 제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10.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제32조 제1항 제10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제41조 (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자</li> <li>2.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li> <li>3.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li> <li>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li> <li>5.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시공업자</li> </ol> <p>②환경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먹는물관리법	<p>7.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p> <p>제22조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위, 수량,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라 받은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p> <p>③시·도지사는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먹는샘물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p>	제48조 제1항 제7호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6월
수도법	<p>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도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p> <p>제31조 (수도물품질보고서)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도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p>	제63조 제2항 제10호	인가를 취소 또는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구역에서 수도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악취방지법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19조 제3호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제23조의6 제2항 제3호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6월
토양환경보전법	7.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23조의6 제3항 제7호	영업정지 6월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자	17.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제8조 제1항 제17호	허가취소 또는 제조정지 3월



21.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법률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p>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제21조 (장부의 비치등)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lt;신설 2006.4.28, 2008.2.29&gt;</p>		
<p>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p>1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p> <p>제21조 (장부의 비치등)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lt;신설 2006.4.28, 2008.2.29&gt;</p>	<p>제8조의 2 제1항 제15호</p>	<p>제조폐쇄 또는 제조정지</p>